





| SRI-정책-2017-06 |

#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The Study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riendly Policy  
in Suwon

이영안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영안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안국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연주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승 (수원시정연구원 과제연구원)
	강연주 (수원시정연구원 과제연구원)

연구 자문위원

김현덕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
최종현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
하경희 (수원시인권위원회 위원)
박동일 (수원시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이윤하 (생태건축사사무소 노뚝돌 대표)

© 2017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이재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더함파크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a href="http://www.suwon.re.kr">http://www.suwon.re.kr</a>
인쇄	2017년 9월 25일
발행	2017년 9월 30일
디자인	경기첨단인쇄디자인센터 Tel.031-8007-6000
I S B N	979-11-87778-49-3 (93340)

---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이영안. 2017.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비매품

## 국문 요약

인권은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차별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인권 확립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으나 정부의 노력에도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문제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은 조성되었으나 그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인권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행정의 실현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수행하는 행정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므로, 인권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인권행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인권영향평가이다.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제도로 인권행정의 필수조건이다.

수원시는 2013년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 조례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실현을 위해 인권행정 및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수원시의 인권영향평가 제도 개발 및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기 위해 첫째, 인권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문헌분석과 타분야 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였다. 둘째,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추진방향 및 전략 개발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한다. 특히 FGI 대상 전문가는 수원시인권위원회위원과 건축가들로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 점검 및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전문가의견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평가대상 정책과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시기를 개발하였고,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통해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시기, 인권영향평가의 주체와 절차,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는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법을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하였다.

둘째,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계획의 경우는 해당 계획의 확정 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으로 하였다.

셋째,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은 조례·규칙과 계획 및 사업별 진행하였다. 점검 양식에는 담당부서의 자체점검표, 기초자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가 있고, 그와 함께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서가 있다.

넷째, 공공기관에서 건립·운영하는 공공건축물도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권과 공공건축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함으로써 법적기반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다. 인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와 함께 토론과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실시할 조직은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역할은 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각 단계마다 1인 이상의 협의회 소속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인권센터 관계자와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건축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발생의 우려가 높은 담당부서부터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진행한 후, 수원시의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해 전 부서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

주제어: 인권, 인권행정,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 차례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2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1. 연구범위 .....	3
2. 연구방법 .....	3
제2장 이론적·제도적 논의 .....	5
제1절 인권 .....	5
1. 인권의 개념 및 특성 .....	5
2. 인권의 법적 근거 .....	7
제2절 영향평가 .....	14
1. 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성 .....	14
2. 영향평가의 절차 .....	15
제3절 인권영향평가 .....	16
1.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	16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 .....	19
3. 인권영향평가의 내용 및 요소 .....	21
4.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	23
5. 인권영향평가의 단계 .....	23
제4절 우리나라 인권영향평가 사례 .....	26
1.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	26
2.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 .....	34
제3장 유사 영향평가 분석 .....	41
제1절 국내 유사 영향평가 사례 .....	41
1. 환경영향평가 .....	41
2. 성별영향분석평가 .....	53

3. 문화영향평가 .....	61
4. 부패영향평가 .....	65
5. 아동영향평가 .....	70
제2절 국외 유사 영향평가 사례 .....	74
1.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 .....	74
2. 가난과 사회영향분석(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 PSIA) .....	81
3. 가난영향평가(Poverty Impact Assessment) .....	85
제3절 시사점 .....	90
1. 평가 관련 법적 근거 .....	90
2. 평가대상 .....	90
3. 평가시기 .....	91
4. 평가내용 .....	91
5. 평가방법 .....	92
6. 평가에의 시민 참여 확대 .....	92
7. 평가 실효성 .....	93
제4장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	95
제1절 인권영향평가 프레임 .....	95
제2절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	97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개요 .....	97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현황 .....	97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	99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	102
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담당부서 .....	103
제3절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	105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절차(조례·규칙·계획) .....	105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설명 .....	108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조례·규칙 .....	111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계획 .....	117
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사업 .....	123



제5장 수원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	129
제1절 공공건축의 적용범위 .....	129
1. 공공건축의 정의와 용도 .....	129
2. 수원시의 공공건축 .....	132
3.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공공건축의 적용범위 .....	134
제2절 인권과 공공건축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제반 규정 .....	135
1.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	135
2. 인권과 공공건축에 관한 법령 .....	135
3. 인권과 공공건축에 관한 자치법규 .....	139
제3절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수원시 현황과 서울시 성북구 사례 .....	144
1.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현황 .....	144
2. 서울시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사례 .....	148
3. 서울시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	154
제4절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 .....	157
1.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내용 .....	157
2.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 .....	161
3. 용도별·단계적 접근 .....	161
제6장 결론 .....	163
1. 연구요약 .....	163
2. 정책제언 .....	164
참고문헌 .....	167
부록 .....	173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	173
2.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안)과 시행절차(안) ·	190

## | 표 차례 |

<표 2-1> 인권의 개념 정의 .....	6
<표 2-2> 세계인권선언문 .....	8
<표 2-3> 「대한민국헌법」 중 인권 관련 법조항 .....	11
<표 2-4> 학자별 영향평가의 개념 정의 .....	14
<표 2-5> 잠재적 권리 종류 .....	21
<표 2-6> 인권영향평가 단계 .....	26
<표 2-7>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기 .....	28
<표 2-8> 서울시 성북구 규칙 제·개정용 인권영향평가 내용(해당부서) .....	29
<표 2-9> 서울시 성북구 규칙 제·개정용 인권영향평가 내용(인권센터) .....	30
<표 2-10> 서울시 성북구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 내용 .....	31
<표 2-11>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방법 .....	33
<표 2-12>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기준 .....	37
<표 2-13> 광주광역시 조례·규칙 신규 제정 평가 추진체계 .....	38
<표 2-14> 광주광역시 시행중 조례·규칙 평가 추진체계 .....	39
<표 2-15>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사업 평가 추진체계 .....	39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계획 대상사업 .....	43
<표 3-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계획 대상사업 .....	44
<표 3-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	45
<표 3-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	47
<표 3-5>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48
<표 3-6>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	49
<표 3-7>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평가방법 .....	50
<표 3-8>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방법 .....	51
<표 3-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방법 .....	52
<표 3-10>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개정 법령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55
<표 3-11>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57
<표 3-1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58
<표 3-13>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 .....	60
<표 3-1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 .....	60

<표 3-15>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63
<표 3-16> 문화영향평가의 자체평가 방법 .....	64
<표 3-17> 문화영향평가의 전문평가 방법 .....	65
<표 3-18>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67
<표 3-19>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방법 .....	69
<표 3-20>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	72
<표 3-21>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	73
<표 3-22> 사회영향평가의 유형 .....	75
<표 3-23> 사회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	76
<표 3-24> 사회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인·가구 수준 .....	78
<표 3-25> 사회영향평가 평가지표: 커뮤니티와 제도적 수준 .....	79
<표 3-26> 가난영향평가와 가난과 사회영향분석 비교 .....	86
<표 3-27> OECD/DAC 역량 프레임워크 .....	88
<표 4-1> ARIAM의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표 .....	96
<표 4-2> 수원시 자치법규 대상 인권영향평가 현황 .....	98
<표 4-3> 수원시 공공건축물 대상 인권영향평가 현황 .....	98
<표 4-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 .....	99
<표 4-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 현황 .....	101
<표 4-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	102
<표 4-7>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	103
<표 4-8> 수원시 인권 관련 조직 및 인력 .....	104
<표 4-9>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순서도 .....	106
<표 4-10>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	112
<표 4-1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	113
<표 4-1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	114
<표 4-1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	115
<표 4-1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	116
<표 4-1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	117
<표 4-1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	118
<표 4-17>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	119
<표 4-18>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	120

<표 4-19>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121
<표 4-20>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122
<표 4-2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123
<표 4-2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124
<표 4-2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125
<표 4-2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126
<표 4-2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127
<표 4-2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128
<표 5-1>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131
<표 5-2> 공공건축물의 분류와 세부시설	133
<표 5-3> 수원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적용범위	135
<표 5-4> 공간환경 및 인권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136
<표 5-5> 공공건축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기타 지침	139
<표 5-6> 공간환경 및 인권 관련 자치법규	140
<표 5-7> 공공건축 관련 자치법규 및 기타 지침	142
<표 5-8> 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146
<표 5-9> 안암동 주민센터 건축현황	148
<표 5-10> 안암동 주민센터 건립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150
<표 5-11> 안암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경기 지침의 작성 방향	151
<표 5-12> 기본설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	151
<표 5-13>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절차	152
<표 5-14> 정릉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 개요	153
<표 5-1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사업 개요	154
<표 5-16>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안)	157

## | 그림 차례 |

<그림 2-1>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평가체계 .....	32
<그림 3-1> 사회영향평가의 평가방법 단계 .....	81
<그림 3-2> 사전적 가난영향평가 프레임워크 .....	89
<그림 4-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절차도 .....	107
<그림 5-1> 수원시 공공건축물 건립절차 .....	134
<그림 5-2> 수원화성 인권영향평가 .....	145
<그림 5-3>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영향평가 .....	145
<그림 5-4> 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147
<그림 5-5> 일본 벤치마킹 .....	147
<그림 5-6> 안암동 주민센터(좌)와 성북구 공정무역 전시판매장(우) ...	148
<그림 5-7>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	156
<그림 5-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안) .....	160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그 자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다른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특정 대상이나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인권은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인 동시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에서 인권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한국 정부도 인권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는 등 인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이성훈 외, 2016, pp. 3-4).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인권침해 문제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와 법률적 기반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인식 부족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정책의 불완전성 등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인권의 중요성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 및 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이발래, 2013, p. 158; 김재철 외, 2011). UN에서도 인권범위를 기존의 시민적·정치적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 환경권, 연대권 등 생활 속의 인권으로 영역을 확대시켰다는 점도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인권이 지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 하에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김재철 외,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human rights-based administration)인 인권행정 실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정영선 외, 2014). 인권행정은 지역차원에서 인권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행정은 인권실현에 기초한 분석, 인권에 기초한 목표 설정, 각 단계에서 유의미한 참여 보장, 인권적 관점의 성과평가와 책임소재 설정 등을 포함한다(정영선 외, 2014, p. 51). 인권행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인권영향

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긍정적 효과가 유발될 수 있도록 평가하는 제도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지역의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의 계획 및 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효과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인권행정 실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수원시도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권팀과 인권센터 설립, 인권보호관 채용,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2013년) 제정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시행이 시민들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효과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과 내용, 방법, 그리고 시기 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 체계와 평가내용, 그리고 평가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개발에 관한 논의는 매우 적실성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의 인권행정 및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는데 있다.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영향평가와 유사영향평가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한다. 인권영향평가 제도는 평가대상 정책,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시기 등을 포함한다. 셋째, 수원시 공공건축물 대상 인권영향평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수원시의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1. 연구범위

수원시의 인권행정 및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적 범위는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와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한다.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타분야 영향평가 등에 관한 분석도 포함하여 검토하며,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사례를 검토한다.

둘째,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4년으로 설정한다. 수원시가 인권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이다.

### 2. 연구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병행하며, 연구방법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를 활용한다. 문헌연구는 인권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문헌분석과 타분야 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한다. 문헌연구의 목적은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이론적 기반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국내·외 보고서 및 학술논문, 그리고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한다.

둘째,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한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목적은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추진방향 및 전략 개발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FGI 대상 전문가는 수원시인권위원회위원과 건축가들로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 점검 및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고자 한다.



## 제2장 이론적 · 제도적 논의

### 제1절 인권

#### 1. 인권의 개념 및 특성

#####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이 상이하다(허은실, 2010, p. 4; 김홍완, 2009, p. 9).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인권은 특정 지역과 대상에만 한정되어 논의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인권은 특정 지역이나 대상이 아닌 ‘모든 개인’을 위한 개념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이육, 2009, p. 8).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에 관한 개념은 법률적 정의와 학술적 정의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인권의 법률적 개념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인권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2011a)에서는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인권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1a, p. 13).

학술적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2015)는 인권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적 보장”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Abrahams and Wyss(2010)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로 정의하였다. 국내 문헌에서는 허은실(2010)의 경우 인권을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강성권 외(2013)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김재철 외(2011)는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인권을 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의한 정명진(2012)은 인권을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천부적인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에

상관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 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해정(2009)은 인권을 “모든 개인이 양도 할 수 없는 존엄성과 고유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를 존중받아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보장받을 권리” 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자유와 권리” 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 인권의 개념 정의

구분	인 권 의 개 념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국가인권위원회 (2004)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인간으로 대접받는 권리
유해정 (2009)	모든 개인이 양도 할 수 없는 존엄성과 고유성을 가진 존재이며 이를 존중받아 존엄한 존재로서 삶을 보장받을 권리
허은실 (2010)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요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광주광역시 (2011)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로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모든 권리
정명진 (2012)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천부적인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인종,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에 상관없이 오직 인간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권리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지 않으며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권리
강성권 외 (2013)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2015)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으로부터 개인과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인 법적 보장
Abrahams and Wyss (2010)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 2) 인권의 특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의 특성은 무엇인가? Abrahams and Wyss(2010)는 인권의 특성을 ① 보편성, ② 양도 불가능성, ③ 불가분성, ④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김홍완

(2009)은 ① 보편성, ② 기본적·필수적인 권리, ③ 국가권력의 정당성 판단, ④ 상호의존성, ⑤ 자유와 평등의 불가분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11b)는 인권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① 인간의 존엄(자율, 자유, 민주주의), ② 평등한 대우, ③ 차이의 존중, ④ 소수자 보호, ⑤ 보편성, ⑥ 불가분성, ⑦ 상호의존성, ⑧ 법적 보호, ⑨ 자유와 권리의 한계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인권의 특성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제시한 인권의 특성 중 공통으로 제시된 ① 보편성, ② 상호의존성, ③ 불가분성, ④ 양도 불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보편성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떠한 종류의 구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p. 18). 인권은 국적과 거주지, 사상, 재산, 정치적 의견, 성, 종교, 인종, 장애, 피부색, 문화유산 등에 의한 차별없이 누구에나 보편적으로 향유되어야 한다(김홍완, 2009, p. 10).

둘째, 인권의 불가분성이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인권의 기반과 강조점이 동일하고 평등하며,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의 인권이 다른 인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을 뜻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p. 18). 자유와 평등 역시 불가분성을 가지며(김홍완, 2009, p. 11),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다(국민권익위원회, 2011a, p. 13).

셋째, 인권의 상호의존성이다. 모든 인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특정 인권의 향유는 다른 인권의 향유를 전제로 하며, 한 인권의 실현은 다른 인권의 실현에 기여함을 의미한다(국가인권위원회, 2011b, p. 18). 한 개인이 인권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개인도 인권을 가진다는 것이며 한 인권이 존중받으려면 다른 인권 역시 존중해야 한다(김홍완, 2009, p. 11).

넷째, 인권의 양도불가능성이다. 이는 인권이 특수한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탈되거나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을 의미하는 특성이다(Abrahams and Wyss, 2010).

## 2. 인권의 법적 근거

인권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기에 앞서 인권의 보편적 기준으로 알려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표 2-2> 참조).

세계인권선언문은 제1조부터 제30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피부색, 인종, 성, 종교, 언어,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영토 또는 국가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에 대한 의미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세계인권선언문

구 분	내 용
제1조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 또는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자국내에서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를 떠날 권리와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거나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러한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가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기간중 그리고 혼인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2.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하에서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한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3.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에 의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li> <li>2.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li> </ol>
제26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li> <li>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간에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며, 평화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li> <li>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li> </ol>
제27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li> <li>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li> </ol>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이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가진다.</li> <li>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의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적 복리에 대한 정당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법에 따라 정하여진 제한을 받는다.</li> <li>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li> </ol>
제30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의 인권에 관한 법적 규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중요성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내용은 <표 2-3>과 같다.



〈표 2-3〉 「대한민국헌법」 중 인권 관련 법조항

구 분	내 용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li> <li>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li> <li>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li> </ul>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li> <li>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li> <li>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li> <li>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li> <li>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li> <li>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li> <li>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li> </ul>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li> <li>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li> <li>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li> </ul>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li> <li>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li> </ul>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li> <li>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li> <li>③ 근로조건에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li> <li>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li> <li>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li> <li>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li> </ul>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li> <li>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li> <li>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li> </ul>
제3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li> <li>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li> <li>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li> <li>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li> <li>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ul>
제3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li> <li>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li> </ul>
제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li> <li>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li> <li>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li> </ul>
제3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li> <li>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li> </ul>
제38조	<p>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p>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li> <li>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li> </ul>

## 제2절 영향평가

### 1. 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성

#### 1) 영향평가의 개념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논의에 앞서 영향평가에 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는 의사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Bonwitt, 2001). 영향평가는 현재 또는 제안된 활동의 미래결과를 식별(identifying)하는 과정을 의미한다(IAIA, 2015, p. 85).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강현수 외(2012)는 영향평가를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화하는 모든 평가”로 정의하였다(강현수 외, 2012, p. 8). 이준일 외(2015)는 영향평가를 “일정한 국가작용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그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김기곤(2013)은 “정책형성 및 집행상의 한 전략으로,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김기곤, 2013, p. 54). 여성부(2003)는 영향평가를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다양한 결과들을 추정하여 효과를 비교하여, 최선의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평가”로 정의하였다(여성부, 2003, p. 33).

영향평가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를 종합할 때, 본 연구에서 영향평가란 사전적 측면에서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사업, 프로그램 등)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식별하여 분석·평가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4〉 학자별 영향평가의 개념 정의

구 분	영향평가의 개념
IAIA(2015)	현재 또는 제안된 활동의 미래결과를 식별하는 과정
여성부(2003)	정책이나 사업,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다양한 결과들을 추정하여 효과를 비교하여, 최선의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식별하는 평가
Bonwitt(2001)	의사결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강현수 외(2012)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결과를 구체화하는 모든 평가
김기곤(2013)	정책을 계획·집행하기 전에 그 정책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는 절차
이준일 외(2015)	일정한 국가작용이 수행되기 전에 미리 그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는 것

## 2) 영향평가의 기능

보다 나은 정책결정 수단으로서 영향평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IAIA, 2009, p. 1; 강현수 외, 2012, p. 8). 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의 경제적·제도적 결과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정책 수립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강현수 외, 2012, p. 8). 영향평가에서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하나의 원인, 그로 인한 영향을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수행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여성부, 2003, p. 34). 셋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IAIA, 2009, p. 1). 넷째, 정책분석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강현수 외, 2012, p. 8). 정책의 영향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여러 측면의 영향을 상호 관련시켜 인과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영향평가는 행정의 합법성, 효과성, 조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합법성(legitimacy) 측면에서 영향평가는 법령 근거 하에 시행되므로 행정부서의 정책결정에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다양한 정책영향을 사전에 합법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즉, 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추진의 합리적 근거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책영역에 대한 평가에 해당된다. 둘째, 효과성(effectiveness)의 측면에서 영향평가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을 다양하게 활용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질적 향상 및 정책과 행정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심각한 반대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 걸러냄으로써 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준다(김기곤, 2013, p. 55). 셋째, 조정(coordination)의 측면에 있어 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단기적인 정책들과 사업, 프로그램 간에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여성부, 2003, pp. 34-35). 정책들 간의 조정뿐만 아니라 영향평가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하기에 논쟁이나 갈등 소지를 감소시켜 줌으로서 조정에 기여할 수 있다(김기곤, 2013, p. 55).

## 2. 영향평가의 절차

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① 영향식별, ② 영향분석, ③ 영향평가 등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여성부, 2003, pp. 35-39).

첫째, 영향식별 단계이다. 영향식별은 영향평가의 대상을 결정하고 올바른 영향 식별의 전략 및 기법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영향식별 단계에서 영향평가의 대상결정은 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영향평가의 대상이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영향평가의 대상은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범위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된다.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영향을 제대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둘째, 영향분석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 영향이 발생하게 될 시기, 심각성, 확산, 확률 등을 분석한다.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의 시행으로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영향을 받는 대상의 반응은 어떠한지, 그리고 부차적인 영향은 얼마나 심각한지 등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다.

셋째, 영향평가 단계는 영향분석에 의해 설정된 영향에 가치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평가기준과 측정값의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평가기준이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고, 측정값은 기준에 적합한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다.

### 제3절 인권영향평가

#### 1. 인권영향평가의 의의

##### 1)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s Assessment: HRIA)는 인권에 초점을 둔 영향평가로, 정책, 입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World Bank and Nordic Trust Fund, 2013). 강현수 외(2012)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정책, 프로그램, 사업 등이 시행됨에 있어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 라고 규정하였다(강현수 외, 2012, p. 9).

이정은(2016)은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전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함으로써 인권 증진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이준일 외(2015)는 “국가작용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는 영향평가의 하나로 그 대상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수원시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등이 주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체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였다.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하여 정의한 강현수(2013)는 “정부나

조직, 기업이 인권에 책임을 가지고, 인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 조직, 기업들의 계획과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론적인 인권과 현실에서의 인권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는 과정으로 국가가 약속한 인권과, 집단, 개인, 공동체가 실제 현실에서 향유할 수 있는 인권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는 것을 인권영향평가로 규정하였다(강현수, 2013, pp. 4-5). 한편 기업의 인권영향평가에 중점을 둔 한국인권재단(2016)은 인권영향평가를 “기업의 사업이나 활동(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및 측정을 통해 평가하는 과정”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정의에 관한 논의를 종합할 때, 인권영향평가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및 역할

인권영향평가는 새로운 인권을 제정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무를 확인하고, 이를 얼마나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Baxewanos and Werner, 2013; 한국인권재단, 2016, p. 21에서 재인용). 인권영향평가는 긍정적인 요소를 위한 기회를 발견하고 인권적 가치를 확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며, 부정적인 요소는 미리 방지하거나 완화하여 사회적 갈등과 갈등에 따른 비용을 해소하려는 것을 목표로 한다(World Bank and Nordic Trust Fund, 2013; 강현수 외, 2012). 구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의 목표는 국가의 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가가 인권조약 의무를 잘 준수하는지, 프로그램 계획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평등과 비차별이 중요한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인권영향평가의 또 다른 목표로 참여와 권리 인지를 통한 수혜자의 권한 부여를 들 수 있다. 정책, 사업, 프로그램이 인지와 권한 부여의 측면에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방향으로 기획되고 이행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강현수, 2013, p. 5; 강현수 외, 2012, p. 12).

이러한 목적과 관련해 인권영향평가는 참여를 통한 권한부여, 권리인지를 통한 권한부여, 참여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강현수 외, 2012, p. 13). 첫째, 인권영향평가는 참여를 통해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와 의견을 어느 정도까지 개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작동한다. 정책 등 활동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지, 공적인 업무에 참여할 기회·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권리가 보장되는지의 여부를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 접근할 자유가 보장된다면 시민들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불만을 드러내고 일부는 수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개입이나 참여가 높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인지를 촉진하고 권한부여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인권영향평가는 권리인지를 통한 권한부여 역할을 담당한다. 여기에서 권리인지란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에 더불어 자신의 권리가 정책·사업·프로그램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다. 권리인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율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능력 및 자원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 정책 등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계획을 수정시키거나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참여 개발에서 인권영향평가는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등 활동 시행에 사람들이 개입하는가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참여발전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적 기구는 분쟁해결 및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권리를 인지하는 것은 역량을 기른다는 의미로 민주적 교육은 참여개발 모델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 3) 인권영향평가의 특징

인권영향평가는 정책형성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 또는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간과되었던 정보들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기여한다(Maassarani et al., 2007). 그렇다면 인권영향평가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인권영향평가는 어떤 정책, 사업, 프로젝트가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인권보호 및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김기곤, 2013, p. 55; 충청북도, 2016, p. 277).

둘째, 인권영향평가는 각종 정책, 사업, 프로젝트의 수립과 정책구상 단계에서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이다. 인권영향평가는 행정의 인권침해 소지와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나 법령을 입안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의 인권침해소지와 예산낭비를 방지한다. 또한 민원제기와 법적 소송 등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김형완, 2016, p. 48).

인권영향평가의 특징은 다른 평가들과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국제개발연구재단(Austria Research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은 이와 관련해 인권영향평가가 다른 평가들과 구분되는 6가지 차이점을 제시한 바 있다(Austria Research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3).

첫째, 인권영향평가는 법적으로 연결된 프레임워크(legally binding framework)의 사용이다. 인권이 강한 규범적 협약과 국가 간에 보편적으로 합의된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영향평가 역시 이러한 협약이나 규칙들로 연결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

둘째, 인권영향평가는 정교한 분석(more in-depth analysis tailored to specific target groups)을 특징으로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평등이나 비차별 등과 같은 기본적 인권원칙들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심도 있고 정교한 분석을 위해 성별, 인종, 지역에 따라 데이터를 구분하여 분석한다(UN 인권위원회, 2011).

셋째, 인권영향평가는 포괄적인 평가(comprehensive assessment)의 특성을 지닌다. 인권영향평가는 표현의 자유와 같이 다른 영향평가들에 의해서 간과된 권리들을 포함할 수 있다(UN 인권위원회, 2007). 인권영향평가는 지속가능평가와는 달리 인권의 정해진 목록에 제한되지 않고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방법론을 채택한다.

넷째, 인권영향평가는 권한부여 및 주인의식(empowerment and ownership)을 특징으로 한다. 인권영향평가는 권리소유자들의 주인의식과 권한위임(empowerment)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평가에 완전히 참여하는 것이 장려된다. 또한 인권영향평가는 지속가능평가와 달리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집중한다(NomoGaia 2010).

다섯째, 인권영향평가는 민주적 책무성과 참여(strengthen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inclusion)를 강조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다른 영향평가들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더 많은 행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장려한다.

여섯째,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을 정책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함(mainstreaming human rights into policy making)을 강조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일상적인 정치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를 체계적으로 통합시키고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2.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

### 1)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일반적으로 인권영향평가는 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된다. 본 연구의 범위는 공공부문,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여기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인권영향평가 주체에 대해 살펴본다. 평가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인권영향평가의 주체는 해당 기관에

의한 자체평가와 외부 전문기관 등에 의한 외부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해당 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될 경우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며,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이준일 외, 2015, pp. 17-18). 또한 인권 및 인권영향평가와 관련한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무관한 전문가나 제3의 기관 등 외부기관이나 평가자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기관 외에 외부기관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해당기관에서 평가한 결과에 비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중립성은 상대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에 관한 정확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정책에 대한 경험 부족과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결여 등으로 인한 평가결과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주체로 해당기관이 적합한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이 적합한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논쟁중이다. 이는 내부기관에 의한 자체평가와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의 장단점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권영향평가를 누가 실시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권영향평가 내용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평가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영향평가를 누가 수행하더라도 신뢰성과 독립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한국인권재단(2016, p. 31)의 주장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인권영향평가의 실행을 위해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는 내부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협력적 평가체계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 2)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국가작용으로(이준일 외, 2015, p. 14) 국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개정 하거나 정책, 사업, 프로젝트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발래, 2013, p. 182).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르면 ①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② 주민이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③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④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등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3. 인권영향평가의 내용 및 요소

#### 1) 인권영향평가의 내용

인권영향평가 내용은 인권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교육,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제노동기구에서 정한 국제노동 규약, 국내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에 근거하면 인권영향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잠재적 권리는 다음과 같다(강현수 외, 2012, p. 9).

첫째, 노동 분야에 포함되는 권리로는 일할 권리, 양호한 근로환경에 대한 권리,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아동노동으로부터의 자유,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동일한 작업에 대한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비차별, 조합에 속할 권리, 파업에 대한 권리, 결사의 자유,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 등을 들 수 있다.

<표 2-5> 잠재적 권리 종류

노동 분야	환경·복지 분야	시민·정치 분야
① 일할 권리	① 삶에 대한 권리	① 재산에 대한 권리
② 양호한 근로환경에 대한 권리	② 적정생활기준에 대한 권리	② 모욕적인 대우
③ 적정 보수에 대한 권리	③ 물에 대한 권리	③ 처벌로부터의 자유
④ 아동노동으로부터의 자유	④ 보건에 대한 권리	④ 임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⑤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⑤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⑤ 사상의 자유
⑥ 동일작업에 대한 동일 보수를 받을 권리	⑥ 음식에 대한 권리	⑥ 표현의 자유
⑦ 비차별	⑦ 주거에 대한 권리	⑦ 집회의 자유
⑧ 조합에 속할 권리	⑧ 신변안전에 대한 권리	⑧ 종교의 자유
⑨ 파업에 대한 권리	⑨ 사생활에 대한 권리	⑨ 교육의 권리
⑩ 결사의 자유	⑩ 거주자의 자유	⑩ 공론, 정치적 참여의 권리
⑪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	⑪ 원주민의 권리	

자료: 강현수 외, 2012.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둘째, 환경·복지 분야에서는 삶에 대한 권리, 적정 생활기준에 대한 권리, 물에 대한 권리, 보건에 대한 권리, 깨끗한 환경에 대한 권리, 음식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신변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 거주지 자유, 원주민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시민·정치 분야의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 모욕적인 대우, 처벌로부터의 자유, 임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권리, 공론, 정치적 참여의 권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2)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요소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요소에 대해 이준일 외(2015)는 ① 인권, ② 정보, ③ 참여, ④ 통합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권이란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므로 인권에 해당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명확히 결정되지 않으면 인권영향평가는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 인권영향평가와 필요성과 실효성을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의 결정기준으로 삼을만하다고 합의할 수 있는 인권의 목록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란 해당 정책, 사업,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인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참여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의 동의 없이는 인권영향평가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인권영향평가의 정당성을 결정한다. 인권영향평가에서 참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수준의 정보공개, 협의, 그리고 파트너십을 포함한다(Abrahams and Wyss, 2010, p. 53). 넷째, 통합은 인권영향평가는 관련되는 모든 영역, 이해관계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통합적 관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정 인권만을 부각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인권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국인권재단(2016)은 인권영향평가의 주요 요소로 ① 공공의 참여, ② 평등과 비차별, ③ 정보접근성과 투명성, ④ 책무성, ⑤ 영역 간의 접근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공의 참여란 인권영향평가의 전 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인권영향평가의 절차와 결과에 있어서 정당성과 승인의 중심적 요소이다. 둘째, 평등과 비차별은 다른 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정보접근성과 투명성이다. 정보접근성은 모든 정보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미있는 참여와 효과적인 책무메커니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투명성은 정책, 사업,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에 이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공공적으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에 사용된 방법론과 결과가 투명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책무성은 인권 프레임워크의 법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인권영향평가는 책임의 특성에 관한 명확성이 기여하며, 정책, 사업,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개입이 인권을 약화시키는 경우에 구제 가능한 책무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섯째, 영역 간의 접근은 인권의 경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상호의존적인 모든 권리를 포함하여 살펴본다는 것이다. 즉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의 실행으로 인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인권영향평가는 언제 수행되어야 하는가?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시기에 따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사전 및 사후 평가 모두 수행가능하다(강현수, 2013, p. 5; 한국인권재단, 2016, p. 35).

첫째, 사전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이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 등 활동이 실행되기 전에 수행되는 평가이다. 본격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활동에 대한 임시적이고 개별적인 대응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한국인권재단, 2016, p. 36). 이처럼 사전평가는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실제 진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사전적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다(김기곤, 2013, p. 55). 따라서 인권영향평가는 앞으로 수행될 국가작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준일 외, 2015, p. 14). 그러나 사전평가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단시간 안에 수행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는다(김형완, 2016, p. 48).

둘째, 사후평가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이미 수행된 과거의 국가작용 또는 현재 수행중인 국가작용에 대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이준일 외, 2015, p. 14). 사후평가는 정책 등 활동이 인권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강현수, 2013, p. 5). 사후평가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권영향평가가 형식적 평가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후평가의 경우에도 평가결과가 해당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김형완, 2016, p. 48).

#### 5. 인권영향평가의 단계

인권영향평가는 목적, 대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단계로 구성될 수 있다(이준일 외, 2015, p. 13; 강현수, 2013, p. 5).

한국인권재단은 인권영향평가 단계를 ① 준비, ② 점검, ③ 착수, ④ 결과, ⑤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 단계 등 총 5단계로 구분한다(한국인권재단, 2016, p. 41). ① 준비단계는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을 숙지한 후 평가에 착수하기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② 점검단계는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하기 전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문제 규명, 스크리닝, 범위 설정, 기초선 조사 등을 포함한다. ③ 착수단계는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이해관계자 참여로 구성된다. ④ 결과적용 단계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는 단계로 완화 및 구제, 인권체계 구축 및 보완하는 단계이다. ⑤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단계는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최종결과를 보고하는 단계이다.

인권영향평가 자료센터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8단계로 권고한다(강현수, 2013, pp. 6-7에서 <http://www.humanrightsimpact.org/introduction-to-hria/eight-step-approach> 재인용). ① 실제 인권 상황을 평가하는 단계, ② 정치적 맥락을 분석하는 단계, ③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관점을 개발하는 단계, ④ 핵심 질문을 선정하는 단계, ⑤ 정책 대안과 행동을 정하는 단계, ⑥ 정책과 행동을 결정하는 단계, ⑦ 모니터링 단계, ⑧ 최종 평가 단계 등이 그것이다.

Word Bank와 Nordic Trust Fund는 인권영향평가를 9단계로 구분한다(Word Bank and Nordic Trust Fund, 2013, pp. 21-32). 인권영향평가의 9단계는 ① 준비, ② 선별, ③ 범위 설정, ④ 증거수집, ⑤ 자문, ⑥ 분석, ⑦ 결론 및 권고, ⑧ 감시 및 평가, ⑨ 보고서 작성 등이다. 1-3단계를 묶어 준비단계로, 4-7단계를 묶어 진행단계로 8-9단계를 묶어 평가단계로 단순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는 인권영향평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회적, 법적, 경제적 배경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② 선별단계(screening stage)로 인권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가장 높은 활동을 선별하는 단계이다. ③ 범위 설정단계(scoping stage)로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활동범위를 정하고, 평가과정애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설정한다. 또한 평가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④ 증거수집 단계(evidence-gathering stage)로 국가작용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⑤ 자문단계(consultation stage)로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집단의 자문을 받는 단계이다. ⑥ 분석단계(analysis stage)로 활동범위를 보완하고, 인권에 대한 현실적인 영향과 잠재적인 영향을 실제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⑦ 결론 및 권고 단계(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 stage)로 인권에 대한 영향의 전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부정적 영향을 제고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권고를 제시하는 단계이다. ⑧ 감시 및 평가단계(monitors and evaluation stage)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제거되었는지, 권고가 수용되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현실적인 영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⑨ 보고서작성 단계(preparation of the report stage)로 평가결과 및 권고, 평가 과정에 대한 평가, 감시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다.

한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시한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IBLF)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IFC)은 인권영향평가의 단계를 ① 준비, ② 확인, ③ 참여, ④ 사전평가, ⑤ 완화, ⑥ 관리, ⑦ 사후평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Abrahams and Wyss, 2010, pp. 34-59). ① 준비단계(preparation)는 인권 상세주의 의무 접근방법을 결정하고 인권영향평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의 인권 상세주의 접근방법이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사업활동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혹은 실제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인식, 예방, 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Abrahams and Wyss, 2010, p. 23). ② 확인단계(identification)로 주요 인권위험과 영향을 확인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③ 참여단계(engagement)는 인권위험과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인권 이슈를 고려하는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 참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 등 주요 이해관계자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다양한 수준의 정보공개, 협의, 그리고 파트너십을 포함한다(Abrahams and Wyss, 2010, p. 53). 참여단계의 주요 활동은 이해관계자를 확인, 분석, 참여시키고, 고충을 관리하는 것이다. ④ 사전평가 단계(assessment)로 인권위험과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사전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프레임워크의 설정, 평가범위 설정, 인권의 위험과 영향평가, 평가결과 분석 활동이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인권위험과 영향의 원인을 규명하고, 위험과 영향의 정도에 따른 인권 위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핵심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⑤ 완화단계(mitigation)는 적절한 완화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과 권고를 관리부서에 알리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기존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의 개발이 핵심이다. 이러한 행동계획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실행가능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⑥ 관리단계(management)는 완화 행동 계획과 권고를 이행하고 인권을 관리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단계이다. ⑦ 사후평가 단계(evaluation)로 인권을 다루는 조직 능력을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사후평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히 수정하는 단계이다.

〈표 2-6〉 인권영향평가 단계

구분	단계	세부단계
한국인권재단	5단계	① 준비, ② 점검, ③ 착수, ④ 결과적용, ⑤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
Abrahams and Wyss(2010)	7단계	① 준비, ② 확인, ③ 참여, ④ 사전평가, ⑤ 완화, ⑥ 관리, ⑦ 사후평가
인권영향평가 자료센터	8단계	① 실제 인권 상황 평가, ② 정치적 맥락 분석, ③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관점 개발, ④ 핵심 질문 선정, ⑤ 정책 대안과 행동 선정, ⑥ 정책과 행동 결정, ⑦ 모니터링, ⑧ 최종적 평가
World Bank and Nordic Trust Fund	9단계	① 준비, ② 선별, ③ 범위 설정, ④ 증거수집, ⑤ 지문, ⑥ 분석, ⑦ 결론 및 권고, ⑧ 감시 및 평가, ⑨ 보고서 작성

## 제4절 우리나라 인권영향평가 사례

### 1.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 1) 평가 개요

서울시 성북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2012년 7월 19일에 제정하였다.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동조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서울 성북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였으며(김형완, 2016, p. 49),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강현수, 2013, p. 12).

성북구는 인권영향평가의 권고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하였다(류춘호, 2015, p. 335). 동조례 제2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청장이 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제정·입안·추진하는 조례, 정책, 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가 주민의 인권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와 평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평가서 검토 결과 주민의 인권 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추진 중인 조례·정책·사업 및 사업의 인·허가의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권고의 이행과 관련하여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포함하여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조례 제27조).



## 2) 평가 대상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①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② 주민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③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④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⑤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이다.

한편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① 성북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② 정책이 주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규칙으로 인정되는 경우이다(동조례, 제24조).

## 3) 평가 시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5조는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평가대상별로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상이하다.

첫째,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① 주민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하는 사업의 계획,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③ 동조례 제24조 제1항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은 해당 계획의 확정 전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에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한편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례 제25조).

&lt;표 2-7&gt;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기

평가대상	평가시기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해당 계획의 확정 전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주민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

#### 4) 평가 내용

##### (1)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인권영향평가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인권영향평가는 해당부서에서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 평가를 의뢰하고, 인권센터 평가 이후 인권위원회 심의 평가를 진행한다. 인권위원회(매월 개최)에서는 ‘원안동의’, ‘수정동의’, ‘권고’ 중 하나로 심의 의결한다. ‘원안동의’는 인권과 관련 없는 사안이고 ‘수정동의’는 인권센터 의견에 동의하여 권고하지 않은 것, ‘권고’는 인권위원회가 의결하여 권고문을 구청장에게 보내는 것이다. ‘조정’은 해당부서가 인권위원회 출석하여 제안 설명할 때 인권위원회가 제시하는 수정 사항에 대해 수용하기로 조정하면 별도의 권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권고는 다시 수용과 부분수용, 유보, 미수용으로 나누어진다(김정아, 2016, p. 8).

해당부서에서 사용하는 점검표의 평가체계는 평가영역(4개)-평가지표(5개) 등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영역은 ① 권리침해, ② 주민참여, ③ 구제수단, ④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지표별 ‘예’ 또는 ‘아니오’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표 2-8> 참조).

〈표 2-8〉 서울시 성북구 규칙 제·개정용 인권영향평가 내용(해당부서)

평가영역	평가지표	응답	비고
권리침해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인권침해적 용어의 사용,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 등 점검)	① 예 ② 아니오	
주민참여	제·개정의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
구제수단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기대효과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자료: 김정아, 2016.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도」.

인권센터의 평가체계는 평가영역(5개)-평가지표(9개) 등으로 구성된다(〈표 2-9〉 참조). 평가영역은 ① 부서 점검표 작성, ② 권리침해, ③ 주민참여, ④ 구제수단, ⑤ 주민참여 등으로 구성된다.

부서 점검표 작성영역은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등 2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된다. 권리침해 영역은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등 2개의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주민참여 영역은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한다. 구제수단 영역은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의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표 2-9> 서울시 성북구 규칙 제·개정용 인권영향평가 내용(인권센터)

평가 영역	평가지표	검토결과
부서 점검표 작성	1. 해당업무 담당자는 주어진 인권영향점검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업무의 인권영향평가표를 검수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권리 침해	3.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운영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해당업무 담당자는 사용하는 용어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엄밀히 점검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도록 조치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민 참여	5.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관련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해당업무 담당자는 정책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해당정책은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가?	상당한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약간의 효과기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8. 해당정책 수행 시 주민들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가?	인권침해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필요 <input type="checkbox"/> 인권침해요소 없음 <input type="checkbox"/>
구제 수단	9. 해당업무 담당자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주민들의 권리침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자료: 김정아, 2016.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도」.

## (2)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는 먼저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권센터에서 점검한다. 인권센터 점검 이후 인권위원회가 심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세출예산 평가체계는 평가영역(2개)-평가지표(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0>과 같다. 평가 영역은 ① 인권 영향요인과 ② 기대효과로 구성된다.

〈표 2-10〉 서울시 성북구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 내용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결과	비고
인권 영향요인	사업의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권리제약 등)요소가 없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사용하는 행정용어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예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차별적·부정적 용어, 어려운 용어사용으로 주민과 소통저해
	사업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예시) 홈페이지 게시, 정보 공개 청구 등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예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사업안내, 이익제기, 민원신청 등
	사업의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기대효과	사업의 시행이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면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최대화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검토
	사업의 시행이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 없음	예시) 정보권, 참여권, 안전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의 권리 증진 기여

자료: 김정아, 2016.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도」.

인권 영향요인 영역은 ‘사업의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 또는 권리를 침해(차별, 권리제약 등)하는 요소가 없는지?’, ‘사용하는 행정용어에 인권침해 가능성이 없는지?’, ‘사업 관련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지?’,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지?’, ‘사업의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 또는 권리를 침해당한 주민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는지?’ 등 5개의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기대효과 영역은 ‘사업의 시행이 ‘인권친화적 행정체계’ 개선에 기여하는 면이 있는지?’, ‘사업의 시행이 주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5) 평가 방법

성북구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센터의 실무적 지원 아래 인권위원회가 심의한다. 먼저 주관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경우에 따라 실태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진행하는 절차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성북구청(<http://www.seongbuk.go.kr>).

<그림 2-1>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평가체계

첫째, ①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③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 사업, ④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은 일반적으로 부서자체 평가방법을 사용한다(성북구청 홈페이지). 부서자체 평가방법은 인권담당부서에서 제공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업무소관 부서가 자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수행결과를 인권담당부서인 인권센터에 제출하는 평가방식이다. 주로 주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에서 활용한다(강현수, 2013, p. 18).

&lt;표 2-11&gt; 서울시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방법

평가대상	평가방법	비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자체 평가방식</li> <li>· 일부 특정평가 방식 활용 (장애인·아동·여성·다문화 등 인권취약계층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예산 사업계획이거나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도로·건축물 등 공공시설 건축 사업 계획, 기타 구청장·인권위원회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li> </ul>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입찰업체 심사 시 노동관계, 체불임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 인권준수 사항을 별도로 평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주민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평가 방식을 사용</li> <li>· 단 100세대 이상 퇴거사업의 경우에는 외부전문 연구용역 의뢰</li> </ul>	

둘째, 특정평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① 장애인·아동·여성·다문화 등 인권취약계층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예산 사업계획, ②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도로, 건축물 등 공공 시설 건축 사업 계획, ③ 기타 구청장, 인권위원회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④ 주민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의 경우 특정평가 방식을 사용한다(성북구청 홈페이지). 특정평가 방식은 인권담당 부서가 외부 전문가와 업무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보다 상세한 인권영향평가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원회 책임 하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한다. 인권영향평가지 별도로 만든 특정한 체크리스트와 현장실사, 주민 의견수렴, 입찰업체 심사 등을 포함하며 특정 사안에 적합하도록 평가를 실시한다(강현수, 2013, pp. 18-19).

한편 주민이 퇴거하는 사업계획 중 100세대 이상 퇴거사업의 경우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전문 연구용역을 의뢰한다(성북구청 홈페이지). 즉 주민들의 인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이나 계획에 해당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인권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해당 정책이나 계획의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권영향평가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한다(강현수, 2013, p. 19). 공공발주 사업의 경우, 입찰업체 심사 시 노동관계, 체불임금, 외국인 노동자 차별 등 인권준수 사항을 별도로 평가한다(성북구청 홈페이지).

## 6) 평가 시행 현황

2016년도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인 인권영향평가는 2016년 10월까지 총 123건을 심의하였으며, 그 중 26건을 권고하였다. 26건의 권고 가운데 9건은 수용되었으며, 7건은 부분수용, 4건은 유보, 6건은 미수용 되었다(김정아, 2016, p. 8).

성북구는 구예산을 활용하여 신축·증축 및 개보수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정릉 청소년 문화의 집, 공정무역 전시판매장,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 센터, 장위도 도서관 문화복지타운 등에 대해 실시하였다. 정릉 청소년 문화의집과 공정무역 전시판매장은 실시설계에서 시행되었으며,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는 설계공모 단계에서, 장위도 도서관 문화복지타운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김정아, 2016, pp. 14-15).

한편,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제도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평가대상 중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및 ‘공공건축물’ 등 2가지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어, 아직 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한 인권영향평가가 제도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2.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

### 1) 평가 개요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가 지니고 있는 민주수호와 인권존중, 평화 애호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숭고한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민주·인권·평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가도시 육성 조례」를 2007년 5월 15일에 제정하였다. 광주광역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2009년 11월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가도시 육성 조례」를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로 개정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0조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7년 상반기에 인권영향평가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을 미리 예측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행정의 실질적 인권화 도모를 위한 인권영향평가제 시행을 위한 대상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 상태이다(광주광역시 입법예고, 2017.03.20.). 주요 개정내용은 ①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및 인권영향평가 절차 등 신설, ②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내용 신설, ③ 인권증진시민위원회 구성변경 및 기능강화 등이다.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신설되는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① 인권영향평가 검토결과, 위원회는 시민의 인권보장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 중인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 재검토해야 할 조항이 있을 경우, 평가부서는 관련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결과를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련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평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광주광역시, 2017, pp. 4-5). 2017년 하반기에는 ‘현행 조례’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시범운영한 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고자 한다. 2018년부터는 주요 정책·사업 등을 포함하여 인권영향평가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7, p. 5).

## 2) 평가 대상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은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① 조례·규칙, ②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이나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7, p. 4).

## 3) 평가 시기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동조례의 일부개정 내용에 따르면 ① 시장이 입안하려고 하는 조례와 규칙은 입안부서가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입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평가하며,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② 제20조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책·사업 등은 해당정책이나 사업계획 확정 전에 평가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책이나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에도 실시할 수 있음을 검토하고 있다(광주광역시, 2017, p. 4).

#### 4) 평가 내용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의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현재 인권영향평가제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는 아직 준비 단계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는 제작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재철 외(2011)가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표 2-12〉 참조).

평가분야는 크게 정책입안, 일반행정, 도시개발, 건축, 교통, 경제, 환경, 문화복지, 계약 발주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평가분야는 불변의 절대적 항목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주요 쟁점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닌다(김재철 외, 2011, pp. 209-210).

〈표 2-12〉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분야별 평가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대상	세부평가기준
정책 입안	조례 등 제도 도입 및 폐지	인권침해(차별, 권리제약 등) 요소 여부 정보공개 및 홍보 여부
	정책기획(도입) 및 폐지	시민참여 여부
일반 행정	인사(채용, 승진) 계획	차별적 인사의 여부 여성포함 여부 장애인 포함 여부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부
	위원회 등 신규 조직 구성	일반시민 참여 여부 여성 참여 여부
도시 개발	택지 및 단지(산업, 관광 등) 개발, 재개발	사유재산 침해 여부 개발에 대한 주민 찬반 여부 주거권 침해 여부 환경권(소음, 대기, 악취, 수질, 조망 등) 침해 여부 이동권 침해 여부
건축	공공시설물(문화시설 포함) 건축	환경권(소음, 대기, 악취, 수질, 녹지, 조망 등) 침해 여부 노인, 여성,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적정 설치 여부 이용자 접근성 편리 여부 BF 인증 여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arrier Free)
	민간 건축물 허가 및 승인	환경권(소음, 대기, 악취, 수질, 조망 등) 침해 여부 이동권 침해 여부
교통	도로 건설	보행로 확보 및 안전성 여부 교통 안전시설(신호등, 안내판) 설치 여부
	대중 교통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도입 교통수단간 환승 여부
경제	기업체 유치 및 관련시설 확충	정규직 고용 창출 여부(고용평가)
	유통산업 유치	소상공인 피해 여부 정규직 고용 창출 여부
환경	환경시설(비선호시설)	정보공개 및 시민 찬반 여부
	공원 조성 등 선호시설	이용자 편의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시설 설치 여부
문화 복지	복지사업 및 문화지원	차별 발생 여부 수혜 대상자에 대한 홍보 여부 참여 장애물 발생 여부
계약 발주	위탁 사업	업체의 비정규직 비중 여부
	사업 발주	체불임금 발생 가능성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인권침해(폭력, 방임 등) 발생 가능성 및 인권 준수 여부

자료: 김재철 외, 2011. 「광주 인권도시 기본계획」.

### 5) 평가방법

인권영향평가 방법을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부서에서 주관한다. 평가내용에 대한 전문적 검토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나 광주광역시 인권지원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2017, p. 4). 구체적으로 인권부서인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평가를 주관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선정과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을 권고한다. 평가대상부서는 사업계획서나 조례제정안 같은 인권영향평가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을 추진한다. 또한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제·개정 등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 사업은 이행계획서 또는 검토결과를 제출하고 불수용시 사유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광주광역시, 2017, p. 3).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의 추진체계는 평가대상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첫째, 조례·규칙과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 제정과 시행 중인 조례·규칙으로 구분된다. ① 조례·규칙이 신규로 제정되는 경우 평가대상부서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포함한 발의안을 제출하면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통보한다. 이를 확인한 평가대상부서는 재검토 권고 요청시 권고를 이행하고 불수용시, 사유를 작성하여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기관은 분석평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표 2-13〉 참조).

〈표 2-13〉 광주광역시 조례·규칙 신규 제정 평가 추진체계

실·과·소장		인권평화협력관실		외부 전문기관
① 발의안 제출(체크 리스트 작성 등) ③ 재검토권고 요청시 권고이행 (불수용시, 사유작성 통보)	제출 → ← 통보	② 검토의견 작성 및 통보	← 지원	분석평가 컨설팅 등

자료: 광주광역시, 2017. 「인권영향평가제 추진계획(안)」.

둘째, 시행중인 조례·규칙의 경우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대상이 되는 조례·규칙안을 선정하고 관련부서에 계획을 통보한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통보한다. 평가대상부서는 재검토권고 요청 시 권고를 이행하고, 불수용시 사유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이 경우에도 외부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다(〈표 2-14〉 참조).

〈표 2-14〉 광주광역시 시행중 조례·규칙 평가 추진체계

인권평화협력관실		실·과·소장		외부 전문기관
① 대상 조례, 규칙안 선정 및 관련부서 계획 통보 ③ 검토의견 작성·통보	제출 → ← 통보	② 재검토권고 요청시 권고 이행(불수용시, 사유작성 통보)	← 지원	분석평가 컨설팅 등

자료: 광주광역시, 2017. 「인권영향평가제 추진계획(안)」.

셋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방법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먼저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대상 사업을 선정 한 후, 인권증진시민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한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선정대상 부서에게 통지하며 평가대상부서는 대상 사업·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수용시에는 부서결과를 통보하고 권고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권고내용을 검토하고 권고한다. 이에 대해 평가대상부서는 재검토권고 요청시 권고를 이행하며 20일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만일 불수용할 경우 사유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해당 과정 내내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TF 팀이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인권영향 컨설팅을 지원한다(광주광역시, 2017, pp. 3-4).

〈표 2-15〉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사업 평가 추진체계

실·과·소장		인권평화협력관실		인권증진시민 위원회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TF 팀
④ 대상 사업·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제출 ⑦ 재검토권고 요청시 권고 이행 - 20일 내 이행계획 제출 - 불수용시 사유작성 신속하게 통보	→ ←	① 인권증진시민위원회 대상사업 상정 ③ 선정대상 부서 통보 ⑤ 전문기관 협조 인권 영향평가 실시 - 수용 : 부서결과 통보 - 권고사안 발생시 : 위원회 상정	→	② 대상사업 선정·심의 ⑥ 인권영향평가 권고 내용 검토 및 권고	← 지원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인권 영향 컨설팅

자료: 광주광역시, 2017. 「인권영향평가제 추진계획(안)」.



## 제3장 유사 영향평가 분석

### 제1절 국내 유사 영향평가 사례

#### 1. 환경영향평가

##### 1) 개요

###### (1)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2항).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정책구상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정책수단이다(환경부, 2016, p. 16).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은 보전과 개발의 조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달성하기 위함이다(환경부, 2016, p. 18).

###### (2)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는 19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실시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준비과정을 거쳐 1981년부터 시행하였다. 1986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하였다(환경부, 2016, pp. 16-18). 1990년 「환경보전법」이 폐지되었으며 환경정책의 조정기능과 종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포함되었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를 신설하였다.

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는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다. 1999년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법제화하였으며 대상의 확대와 강화를 실시하였다. 1999년에는 절차 중복과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제정되었으며 환경, 교통, 재해, 인구에 관한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확정하는 제도인 스코핑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작성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였다. 2008년에는 통합영향평가는 분리되었으며, 2012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던 환경영향평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었다(환경부,

2016, pp. 19-23).

### (3)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환경영향평가의 기능은 ①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의 사전예방적 기능, ② 개발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참여기능과 정보공개 기능, ③ 사업추진에 따른 갈등 예방과 사회적합의 기능이다(환경부, 2016, p. 17). 첫째,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개발 프로그램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방안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사전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정보공개 기능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정책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현황이나 환경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환경부, 2009, p. 4). 셋째, 사회적합의 형성기능은 평가서 공람, 공청회 및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 하는 등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쌍방향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정책,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설득 내지는 합의형성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한다(환경부, 2009, p. 4).

### (4) 환경영향평가의 유형

환경영향평가는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② 환경영향평가, ③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시행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항).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2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동법 제2조 제3항).



## 2) 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①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큰 사업, ②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 ③ 환경영향이 복합적으로 또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해 환경영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 ④ 복합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개발기본계획과 정책계획으로 구분한다. 개발기본계획은 국토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수립하는 계획을 의미한다(환경부, 2016, p. 34). 개발계획 대상사업은 <표 3-1>과 같다.

<표 3-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개발계획 대상사업

구분	계획의 종류
도시의 개발(15)	①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계획 ②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③ 도시·군 관리계획 ④ 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25만㎡ 이상) 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도시지역 외) ⑥ 재정비 촉진계획(도시지역 외) ⑦ 도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30만㎡ 이상) ⑧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지정 ⑨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⑩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⑪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⑫ 유통산업 발전 지역별시행계획 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⑭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⑮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지정
산업입지·산업단지조성(10)	①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 ②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③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④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⑤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⑥ 농공단지의 지정 ⑦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⑧ 산업유치지역의 지정 ⑨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⑩ 중소기업협동화 실천계획
에너지의 개발(1)	①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항만의 건설(8)	① 신항만건설기본계획 ②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③ 어항의 지정 ④ 어항시설기본계획 ⑤ 항만 기본계획 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⑦ 항만재개발사업 계획 ⑧ 마리나항만조성사업계획
도로의 건설(2)	①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② 도로건설공사계획(고속국도제외)
수자원의 개발(1)	① 댐건설기본계획
철도의 건설(2)	① 도시철도기본계획 ② 철도건설기본계획
공항의 건설(2)	① 신공항건설기본계획 ② 공항개발기본계획
하천의 개발(2)	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② 하천기본계획
개간·공유수면매립(1)	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광단지 개발(5)	① 관광지등의 지정 ②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③ 온천개발계획 ④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⑤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산지의 개발(3)	① 임업진흥계획 ② 산촌개발사업계획 ③ 묘지 등의 수급 증장기계획
특정지역의 개발(21)	① 경제자유구역 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기본계획 ③ 농어촌생활 환경정비계획 ④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의 지정 ⑤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⑥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⑦ 연구특구육성종합계획 ⑧ 연구특구관리계획 ⑨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사업계획 ⑩ 탄광 지역진흥지역 지정 및 사업계획 ⑪ 지역개발계획 ⑫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⑬ 행복도시개발계획 ⑭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⑮ 지역특화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⑯ 제주광역시설계획 ⑰ 친수 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⑱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⑲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⑳ 기업 도시개발지구의 지정 및 기업도시개발계획 ㉑ 연구특구개발 계획 체육시설의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2)	① 청소년 수련지구의 지정 ② 체육시설 사업계획(25만㎡ 미만)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1)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국방·군사시설의 설치(2)	①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②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토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1)	① 골재채취예정지역 지정(공유수면 지정 시 10만㎡ 이상 25만㎡ 미만)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정책계획은 국토의 일부 지역이나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존과 개발에 관한 기본방향 또는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환경부, 2016, p. 34). 정책계획의 대상사업은 <표 3-2>와 같다.

<표 3-2>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정책계획 대상사업

구분	계획의 종류
도시의 개발(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도로의 건설(1)	도로건설관리계획
수자원의 개발(1)	댐건설장기계획
철도의 건설(1)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광단지의 개발(3)	관광개발기본계획, 권역별관광개발계획, 온천발전종합계획
산지의 개발(5)	사방사업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문화 휴양기본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전국임도기본계획
특정지역의 개발(2)	농어촌정비종합계획, 농업생산기반 정비기본계획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2)	폐기물처리기본계획,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개발사업 등 총 17개 분야 78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한다(환경부, 2016, p. 48).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표 3-3>과 같다.

<표 3-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구분	사업의 종류 및 범위
도시의 개발사업(13)	① 25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② 30만㎡ 이상인 도시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제외) ③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운하, 20만㎡ 이상 유통업무설비, 20만㎡ 이상 주차장시설, 15만㎡ 이상 시장) ④ 30만㎡ 이상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⑤ 3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⑥ 20만㎡ 이상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⑦ 20만㎡ 이상 여객터미널 설치공사 ⑧ 20만㎡ 이상의 물류터미널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⑨ 30만㎡ 이상의 학교시설 설치공사 ⑩ 하수처리시설 10만㎡/일 ⑪ 20만㎡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조성 사업 ⑫ 25만㎡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사업 ⑬ 25만㎡ 이상의 역세권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사업(7)	① 산업단지개발사업 ② 중소기업단지조성사업 ③ 자유무역지정 ④ 공장설립 ⑤ 공업용지조성사업 ⑥ 산업기술단지조성사업 ⑦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 모두 15만㎡ 이상
에너지의 개발사업(7)	① 해저에너지개발사업 ② 에너지개발 목적 광업 30만㎡ 이상사업 ③ 전원개발사업(1만kW 발전소, 댐 및 저수지 건설 수반 시 3천kW 댐발전소, 10만kW 태양력 등 발전소, 3만kW 해양소수력발전소, 345kW 이상 지상송전선로 10km, 765kW 옥외변전소, 회차리장 30만㎡ 이상, 저탄장 5만㎡ 이상) ④ 전기설비설치(③과 유사), ⑤ 저유시설 10만kl ⑥ 석유비축시설 10만kl ⑦ 가스사업 설치공사 10만kl
항만의 건설사업(5)	① 여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여항개발사업(외곽시설 길이 300m 또는 3만㎡ 이상 공유수면 매립, 계류시설 3만㎡ 이상 매립, 15만㎡ 이상 또는 3만㎡ 이상 매립) ② 항만법에 의한 시설(외곽시설 길이 300m 또는 3만㎡ 이상 공유수면매립, 계류시설 3만㎡ 이상 매립, 15만㎡ 이상 또는 3만㎡ 이상 매립) ③ 준설사업 면적 10만㎡ 이상 또는 준설량 20만㎡ 이상 ④ 신항만건설사업(①과 동일) ⑤ 항만재개발사업 30만㎡ 이상 또는 외곽시설·계류시설·항만시설(①과 동일)
도로의 건설사업(1)	① 도로건설사업(㉠4km 신설, ㉡2차로 이상 10km 확장, ㉢신설과 확장→도시지역 폭 25m 이상, 고속국도, 지하도로, 자동차전용은 무관, ㉣도시/비도시지역)
수자원의 개발사업(3)	① 댐 만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② 하구언 만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③저수지·보 만수면적 200만㎡ 이상 또는 총저수용량 2천만㎡ 이상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건설(2)	① 철도/고속철도 4km 이상이거나 철도시설면적 10만㎡ 이상 ②도시철도/도시철도 4km 이상이거나 철도시설면적 10만㎡ 이상 ③궤도(삭도 길이 2km 이상, 궤도 4km 이상, 궤도시설 10만㎡ 이상)
공항의 건설(1)	① 비행장 신설, 500m 이상 활주로, 공항개발사업 20만㎡ 이상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2)	①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하천공사 중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10km 이상
개간·공유수면 매립사업(2)	① 무역항·신항만·자연환경보전지역 매립 3만㎡ 이상, 그 외 지역 30만㎡ 이상 ②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100만㎡ 이상
관광단지 개발사업(6)	① 관광사업 30만㎡ 이상 ② 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30만㎡ 이상 ③ 온천개발 30만㎡ 이상 ④ 공원사업 10만㎡ 이상 ⑤ 유원지 시설설치 10만㎡ 이상 ⑥ 공원시설 면적합계가 10만㎡ 이상
산지의 개발사업(2)	①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모지 등 25만㎡ 이상, 초지조성 30만㎡ 이상, 산지전용허가 20만㎡ 이상), ② 임도설치(8km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임도 설치)
특정지역의 개발사업(10)	① 1~12, 14~17 범위 사업 중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② 지역개발사업 20만㎡ 이상 ③ 주한미군시설사업 ④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⑤ 평택시개발사업 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⑦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⑧ 기업 도시개발사업 ⑨ 신공항건설사업 ⑩ 친수구역조성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사업(5)	① 체육시설설치공사 25만㎡ 이상 ② 경륜 또는 경정 시설 25만㎡ 이상 ③ 청소년수련시설 30만㎡ 이상 ④ 청소년수련지구조성 30만㎡ 이상 ⑤ 경마장 설치 25만㎡ 이상
폐기물·분뇨·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2)	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30만㎡ 이상 또는 용적 330만㎡ 이상 ㉡지정폐기물매립 5만㎡ 이상 또는 용적 25만㎡ 이상 ㉢소각시설 100톤/일 이상) ② 처리용량 100㎡/일 이상의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재활용시설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3)	① 국방·군사시설 33만㎡ 이상, 골프장 25만㎡ 이상 ② 군사기지 안의 비행장 신설, 500m 활주로, 면적 20만㎡ 이상 사업 ③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15만㎡ 이상, 공유 수면 3만㎡ 이상 매립사
토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7)	①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채취사업(상수원보호구역 2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 5km 이내 5만㎡ 이상 ② 산지에서 토석·광물채취 10만㎡ 이상 ③ 채석단지 지정 ④ 해안(육지 쪽 1km 이내, 바다 쪽 10km 이내)에서 광물채취사업(단위구역 당 광물채취 면적 강원·경북 2만㎡ 이상, 그 외 지역 3만㎡ 이상) ⑤ 골재채취예정지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 50만㎡ 이상 ⑥ 해안 골재채취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 50만㎡ 이상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5,000㎡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해당된다(환경부, 2016, p. 48). 구체적인 내용은 <표 3-4>와 같다.

〈표 3-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①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② 농림지역 7,500㎡ 이상 ③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이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① 개발제한구역 5,000㎡ 이상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① 생태경관보전지역(핵심보전구역 5,000㎡ 이상, 완충보전구역 7,500㎡ 이상, 전이보전구역 1만㎡ 이상) ② 자연유보지역 5,000㎡ 이상 ③ 5,000㎡ 이상의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산지관리」「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법」 적용지역	① 공익용 산지 1만㎡ 이상 ② 그 밖의 산지 3만㎡ 이상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① 공원자연보존지구 5,000㎡ 이상 ②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 문화유산지구 7,500㎡ 이상,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① 습지보호 지역 5,000㎡ 이상 ② 습지주변관리지역 7,500㎡ 이상 ③ 습지개선 지역 7,500㎡ 이상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① 광역상수도 호소 상류 1km 이내 7,500㎡ 이상(공동주택은 5,000㎡ 이상) ② 하천구역 1만㎡ 이상 ③ 소하천구역 7,500㎡ 이상 ④ 지하수보전구역 5,000㎡ 이상
「초지법」 적용지역	① 초지조성허가 신청 사업계획 면적 3만㎡ 이상
그 밖의 개발사업	① 1~8호 최소 평가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조례로 정한 사업/관계행정기관장이 환경보전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평가가 필요하다 인정한 사업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 3) 평가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영역은 환경영향평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표 3-5〉 참조).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개발기본계획은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 2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계획은 계획의 연계성과 일관성, 계획의 지속성 및 적정성,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3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 2016, p. 35).

둘째, 환경영향평가는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철새 등 보호대책 등 6개의 공통 평가영역과 분야별 세부 평가영역으로 구성된다(〈표 3-6〉 참조).

셋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대기질, 악취, 자연상태환경 등 8개 분야 16개 항목을 평가한다

(환경부, 2016, p. 49). 그러나 정책, 사업,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환경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스코핑 절차를 통해 평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환경부, 2016, p. 49). 스코핑 절차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해야 하는 범위와 항목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항목 중 반드시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포함하고 지역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크기 않은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이다(환경부, 2016, p. 50). 사업자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평가범위와 평가항목을 결정한다.

<표 3-5>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구분	평가영역	
전략 환경 영향평가	정책계획	1.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국가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상위·관련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3. 계획의 적정성·지속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환경 용량의 지속성
	개발기본 계획	1. 계획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2.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 보전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환경 영향평가	1. 자연생태환경 분야: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2. 대기환경 분야: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3. 수환경 분야: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4. 토지환경 분야: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5. 생활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6.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인구, 주거(이주 포함), 산업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1. 사업개요 및 지역 환경현황: 사업개요, 지역개황,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①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② 대기질, 악취, ③ 수질, 해양환경, ④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⑤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⑥ 경관, ⑦ 전파장해, 일조장해, ⑧ 인구, 주거, 산업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표 3-6〉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

평가 항목	주요 평가 내용	
공 통	토지이용계획, 시설배치계획, 법면처리대책,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철새 등 보호대책	
대기	기상	기온, 증발량, 일조시간, 안개일수, 수립대제거, 열 방출 등 기상변화 예측 및 대책
	대기질	배출원별 오염물질의 특성 분석 및 저감방안, 연료사용계획,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예측 및 대책
	악취	악취발생원, 악취영향범위, 농도 및 저감대책
	온실가스	온실가스 발생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수환경	수질	오폐수처리대책, 용수공급계획, 하천 및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수리수문	수자원 이용현황 및 수급계획, 유출계수, 유지용수량 예측
	해양환경	해양수질, 부유물질 확산, 농도예측 및 저감대책, 해저지형
토지	토지이용	주변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한 입지분석, 완충녹지 설치계획
	토양	기름, 독극물, 슬러지, 대기오염물질, 오·폐수의 토양에 대한 영향 및 대책
	지형/지질	표토·비옥토 유실방지, 지형·지질조사, 지형변화, 특이지형 훼손대책, 법면처리계획
자연 생태	동식물상	동식물상의 변화, 종의 분포상황 및 다양도, 이동로·서식지 차단 또는 훼손 여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보전대책
	자연환경 자산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지역, 자연환경자산,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지역 보전대책 생활
생활 환경	친환경자원 순환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처리시설 입지의 대안검토 및 확보계획
	소음진동	소음원 조사, 변화량 예측 및 대책
	위락경관	지역경관을 고려한 계획, 조망경관 변화 영향 및 대책
	위생공중 보건	질병유발요인 및 보건위생대책, 공중위생시설의 배치 및 관리
	전파장해	전파장해요인, 전파장해정도와 대책
	일조장해	일조의 영향을 고려한 건물, 시설물 등의 배치계획
사회 경제	인구	인구밀집의 유발 정도 및 인구밀집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주거	주거지역 도로망 연결계획,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산업	산업구조변화, 어업권, 양식장,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측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 4) 평가방법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주체는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자이거나 계획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지만, 사업자는 전문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환경부, 2016, p. 49). 평가서의 작성을 전문 환경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평가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의해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만이 작성할

수 있다(환경부, 2016, p. 23). 한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사는 평가 대행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환경영향평가 계획과 사업의 이해, 보고서 작성 총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환경부, 2016, p. 55).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기본계획과 정책계획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기본적인 틀은 크게 상이하지 않다(<표 3-7> 참조).

<표 3-7>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평가방법

정책계획의 구상 (관계행정기관)		개발계획의 구상 (관계행정기관)
↓		↓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평가항목 결정공개 이견 수렴 ←	평가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
평가성 작성 및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평가성 작성 및 협의 요청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		↓
검토 및 협의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검토 및 협의 (환경부, 지방환경관서)
↓		↓
협의를견 통보 (환경부 → 관계행정기관)		협의를견 통보 (환경부 → 관계행정기관)
↓		↓
협의를견 반영 또는 필요 조치 (관계행정 기관)		협의를견 반영 또는 필요 조치 (관계행정기관)
↓		↓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 (관계행정기관 → 환경부)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담당부서는 계획을 구상하고 평가준비서를 작성한 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중 개발기본계획관련 평가는 초안을 작성한 후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결과가 타당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평가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평가서는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협의하며 협의의견을 담당부서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협의의견을 반영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통보한다.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은 먼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작성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는 평가항목 범위를 결정한다.

<표 3-8>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방법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실시계획단계	협의내용 이행
↓	↑
평가항목 범위 결정(스코핑)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협의내용 반영 확인 통보 (승인기관 → 협의기관) 미반영시 의견통보
↓	↑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협의내용 통보 (협의기관 → 승인기관)
↓	↑
관계부처 및 주민 의견수렴(지자체)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보완요청, 추가자료 제출 (미흡시)
↓	↑
평가서 작성	평가서 검토 KE(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원), 전문가 등
↓	↑
평가서 제출 (사업자 → 승인기관)	평가서 협의요청 (사업자 → 승인기관)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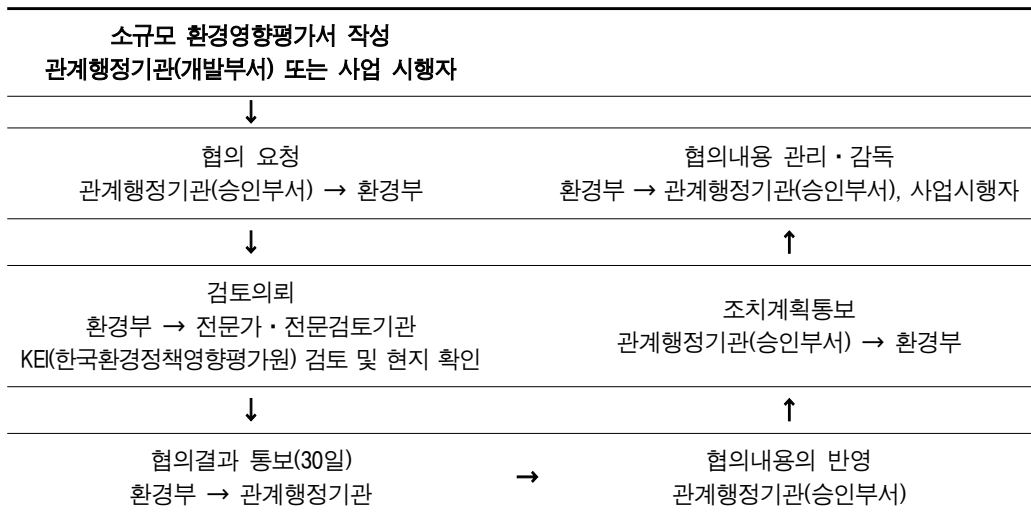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항목 범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초안을 작성한 다음 지자체의 경우 주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제도를 통해 주민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민 의견수렴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게 제출하고,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정책영향평가원 또는 전문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평가서를 검토하고 미흡한 자료가 있는 경우 보완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기관은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에게

통보하고 승인기관은 협의내용을 반영했는지 확인하여 협의기관인 환경부에게 통보해야 한다. 환경부와 사업승인 기관은 협의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행을 명령 할 수 있다(환경부, 2016, pp. 39-41).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방법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관계행정기관이나 사업 시행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은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또는 전문검토기관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승인부서는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반영한 협의내용을 수행해야 하며, 승인기관과 환경부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환경부, 2016, pp. 42-43).

<표 3-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방법



자료: 환경부, 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1) 개요

####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개념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 제2조 제1항). 여성가족부(2016a)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의하였다(여성가족부, 2016a, p. 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은 정부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하여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여성가족부, 2017, p. 3).

####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법적 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4년 9개 기관 10개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5년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되었다. 2011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분석평가의 대상 정책이 사업에서 제·개정 법령, 사업, 계획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제도화되었다. 2012년 「법제업무 운용규정 시행규칙」에 법령안 심사 요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4, p. 39). 2014년 공표제를 도입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하였다. 2015년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설치하고, 성인지 예산과 연계시켰다(여성가족부, 2016b, p. 42). 2016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표명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지정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였다(여성가족부, 2017, p. 4).

## 2) 평가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②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④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①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④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정하여 분석평가 할 수 있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① 시행 중인 법령, ②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③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 3) 평가내용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평가체계는 제·개정 법령과 계획, 그리고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개정 법령

제·개정 법령의 평가체계는 3개 평가영역, 6개 평가지표, 10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6b, p. 43). 제·개정 법령의 평가영역은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② 성별 특성, ③ 성별 균형 참여 등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과 같다.

첫째,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영역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과 성별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조항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이 있는지’ 를 측정한다. 성별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은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거나 특정 성별의 명시(용어, 조치 포함)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인지’,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하는지’ 등 3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표 3-10〉 성별영향분석평가 제·개정 법령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조항	①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이 있는지 점검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① 남녀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거나 특정 성별의 명시(용어, 조치 포함)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인지 점검 ② 성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는지 점검 ③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성별 특성	성별 특성 관련 조항	①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점검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①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 또는 시설 설치, 통계·실태조사 등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성별 균형 참여	위원회 등 관련 조항	①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 조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①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는지 점검 ②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 ③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둘째, 성별 특성 영역은 성별 특성 관련 조항과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등 2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성별 특성관련 조항은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는지’ 등 1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은 ‘법령 상 정책 수혜·수급 요건 또는 시설 설치, 통계·실태조사 등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성별 특성 반영이 필요한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하는지’를 통해 측정된다.

셋째, 성별 균형 참여 영역은 위원회 등 관련 조항과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위원회 등 관련 조항은 ‘위원회, 심의기구, 협의체 등의 구성 조항 및 위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를 측정하며,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은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한 성이 결과적으로 배제되지 않는지’,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어 왔다면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일정 참여비율을 규정하고 있는지’, ‘개선이 필요한 경우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제·개정 법령 조항에 반영하는지’ 등 3개의 세부 평가지표가 활용된다.

## (2) 계획

계획의 평가체계는 평가영역(2개)-평가지표(4개)-세부 평가지표(5개) 등으로 평가체계가 세분화된다. 평가영역은 ① 비전과 목표, ② 전략 및 중점과제 등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6b, p. 44).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첫째, 비전과 목표 영역은 성별영향발생 가능성을 평가지표로 구성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지표는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제4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를 측정한다.

둘째, 전략 및 중점과제 영역은 성별 요구도, 성별 형평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 개선 및 환류)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성별 요구도는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지’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성장 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성별 형평성은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을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가 포함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 개선 및 환류)은 ‘법령 반영 계획’과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법령 반영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는지’를 활용하며,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은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는지’를 활용한다.

〈표 3-11〉 성별영향분석평가 계획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 점검내용
비전과 목표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① 제4차 양성평등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및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전략 및 중점과제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 차이	①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②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성별 형평성	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①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혜 발생(재원배분 포함)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 반영 계획 사업(또는 과제) 반영 계획	①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①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평가 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 또는 과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 등

내용 : 비전과 목표는 계획의 추진목표, 발전목표 등을 의미하며, 전략 및 중점과제는 전략과제별 추진계획, 전략 및 이행과제 등을 의미.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3) 사업

사업의 평가체계는 평가영역(2개)-평가지표(5개)-세부 평가지표(6개)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영역은 ①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②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정책개선 및 환류) 등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된다(여성가족부, 2016b, p. 45).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첫째,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영역은 사업의 성별 요구도와 사업의 성별 형평성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사업의 성별 요구도는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가 있는지’를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성장배경, 거주

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다른 요구가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표 3-12>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평가 점검내용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사업의 성별 요구도	남녀의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사업의 성별 요구 차이	①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②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③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성별로 다른 요구가 있는지 점검
	사업의 성별 형평성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①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점검 ②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 : 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①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법령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①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시) 성불평등한 훈령 내용 개정 등
	예산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①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①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예시) 성별 통계 구축 등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사업의 성별 형평성은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하는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하는지’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한지’,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혜 발생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계획분야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형평성은 남녀 수혜자의 비율이 단순하게 50:50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하는지’는 ‘성별 요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사업대상자의 성비를 고려한 예산배분, 성별로 특수한 요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 등)’를 측정한다.

둘째,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영역은 ‘법령’, ‘예산’ ‘사업’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법령은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을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로 측정한다. 예산은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하며, 구체적으로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였는지’를 측정한다. 사업은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을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구체적으로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분석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는지’가 포함된다.

#### 4) 평가방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7조). 한편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4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은 여성가족부의 평가지침을 토대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한다(〈표 3-13〉 참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연초에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을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한다. 해당 법령·사업·계획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평가서를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분석평가책임관에게, 중앙행정기관은 여성가족부에 제출한다. 분석평가책임관과 여성가족부가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을 이행하고, 한 해 동안의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가족부에 보고한다(여성가족부, 2016b, p. 47).

<표 3-13>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

성별영향분석 평가지침 통보(여성가족부)	국무회의 보고 국회제출, 공표(여성가족부)
↓	↑
대상과제 선정(중앙·지자체)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여성가족부)
↓	↑
체크리스트·분석평가서 제출(중앙·지자체)	기관별 종합결과 보고(다음해 2월) (중앙·지자체)
↓	↑
검토의견 통보 [원안동의/개선 의견] (여성가족부·분석평가책임관)	→ 개선 의견 반영 계획 제출(중앙·지자체)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한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방법은 <표 3-14>와 같다. 행정기관·일반국민 대상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 정책을 발굴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대상정책을 선정한다. 대상정책이 해당기관에 통보되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반영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한다(여성가족부, 2016b, p. 47).

<표 3-14>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

[과제발굴] 수요조사, 대국민공모, 전문가 회의 개최(여성가족부)	[정책반영] 정책반영, 결과통보(관련 부처)
↓	↑
[과제 심의] 대상과제 심의, 조정 (여성가족부(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위원회 상정 및 개선 권고] 개선과제 검토, 위원회 상정 후 개선 권고(여성가족부)
↓	↑
[과제선정 및 연구용역] 대상과제 확정, 수행 기관 공모, 계약(여성가족부)	→ [특정평가연구] 대상과제 분석평가 및 개선안 도출(위탁기관)

자료: 여성가족부, 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 3. 문화영향평가

#### 1) 개요

##### (1) 문화영향평가의 개념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문화영향평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 계획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 영향은 증대시키기 위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이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니라 해당 정책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권고를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정책의 형성을 유도·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1).

문화영향평가는 타 분야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문화적 영향을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양혜원, 2016, p. 13).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국민의 삶의 질과 문화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양혜원, 2016, p. 13).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계획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경관의 파괴, 공동체의 상실 문화적 권리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한다. 둘째, 해당 정책에 문화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여 문화가치의 전 사회적 확산을 지원한다. 셋째,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양혜원, 2016, p. 13).

##### (2) 문화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 「문화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 201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2건, 국토교통부 사업 2건 등 총 4건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영향평가 1차 시범평가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5개 정책을 대상으로 2차 시범평가 수행하였다. 2차례 시범평가 이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문화영향평가의 지원기관(문화영향평가센터)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지정하였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2).

### (3)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주체를 기준으로 전문평가와 자체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p. 7-8). 첫째, 전문평가는 선정된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유형으로 외부평가로 이해할 수 있다. 전문평가는 평가대상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된다. 기본평가와 심층평가 각각은 종합평가절차(전체 개별 평가 결과에 대해 상위 평가)와 개별평가절차(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평가연구기관이 개별 평가대상에 대해 평가)로 구성된다.

둘째,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등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이 제시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 2) 평가대상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 또는 시행중인 정책과 계획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문화영향평가 유형에 따른 평가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평가는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구성된다. 기본평가의 대상은 ① 사업규모 200억원 미만의 계획 및 정책 또는 ② 50페이지 미만의 간략한 계획, 문화사업의 성격이 강하거나 비중이 높아 문화컨설팅이 보다 필요한 계획이나 정책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19). 심층평가는 ① 사업규모 200억원 이상의 정책 및 계획, ② 국민에 미칠 문화적 영향이 큰 정책으로 보다 엄밀한 평가 및 조사가 필요한 계획 및 정책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27).

둘째,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요청에 의한 전문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 또는 시행예정인 계획 및 정책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한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호). 협의 및 선정에 의한 전문평가는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서 평가하기로 협의된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한다(「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2호).

### 3) 평가내용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체계는 평가영역(3개)-평가지표(6개)-세부 평가지표(6개)로 구성된다. 평가영역은 ① 문화 기본권, ② 문화 정체성, ③ 문화 발전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지표는 <표 3-15>와 같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p. 53-54). 특히 문화영향평가는 각 영역별 세부 평가지표는 ‘현(現)상태 평가’와 ‘영향예측’을 포함하여 평가항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표 3-15> 문화영향평가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	문화접근성
		문화향유 수준
	표현 및 참여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활동 참여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창조적 활용
	공동체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	문화적 종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창조성	창조자본
		창조기반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첫째, 문화 기본권 영역은 문화향유와 표현 및 참여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문화향유는 ‘문화접근성’과 ‘문화향유 수준’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측정된다. 표현 및 참여는 ‘표현 및 참여 기회’, ‘생활문화활동 참여’ 등을 활용한다.

둘째, 문화 정체성 영역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과 공동체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은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보호’,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의 창조적 활용’ 등 2개로 측정되며, 공동체는 ‘사회적 자본’, ‘문화공동체’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셋째, 문화 발전 영역은 문화다양성과 창조성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종다양성’,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등 2개의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창조성은 ‘창조자본’, ‘창조기반’ 등을 활용한다.

#### 4) 평가방법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평가방법 역시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체평가의 경우 2017년 현재 시범평가기간이다. 문화체육부는 자체평가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관은 자체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영향평가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문화관광부에 문화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평가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소관 기관은 반영결과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10).

<표 3-16> 문화영향평가의 자체평가 방법

자체평가 수요조사(문화체육관광부)	반영결과 제출(소관기관)
↓	↑
평가대상 선정(소관기관)	검토의견 통보(문화체육관광부 → 소관기관)
↓	↑
문화영향평가 자체평가(소관기관) -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자체평가결과 제출(소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전문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평가대상에 관한 요청 접수를 받으며,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대상 후보를 선정하여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 상정하며 문화영향평가 협의체에서 평가대상을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전문평가는 다시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되며, 각각은 전문평가기관 주관하의 개별평가와 종합평가단 주관하의 종합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수관기관에 대한 문화컨설팅 실시와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소관부서는 정책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책개선 방안,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내용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p. 9). 기본평가는 질적 분석, 즉 정성적 분석에 초점을 두어 문헌분석,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및 FGI, 전문가 평가를 시행한다. 심층평가는 정성적 분석(질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양적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질적 분석은 문헌분석, 현장조사, 관계자 인터뷰 및 FGI, 전문가 평가를 양적분석으로는 관계자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사용한다.

<표 3-17> 문화영향평가의 전문평가 방법

평가요청 접수 및 수요조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평가결과 반영 및 정책개선방안 모니터링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영향평가센터)
↓	↑
평가대상 후보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개선방안 마련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보고)
↓	↑
평가대상 선정 (문화영향평가협의체 확정)	문화컨설팅 및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와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소관기관에 문화컨설팅 실시, 평가결과 통보)
↓	↑
문화영향평가(전문평가기관의 개별평가(기본평가/심층평가) 및 종합평가단의 종합평가(기본평가/심층평가))	평가결과 및 정책제언의 도출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 4. 부패영향평가

##### 1) 개요

##### (1) 부패영향평가의 개념

부패영향평가란 “법령, 자치법규, 공직유관단체 사규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부패 발생 이전에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패영향평가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령 등의 불필요한 불확정 개념, 규정의 흠결, 비현실적 기준 등 법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정비·제거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 둘째, 법·제도상 부패 취약분야의 본질적인 부패발생 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법령 등의 입안·집행 과정에서 재량의 구체화, 행정절차의 투명성 향상 등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국민권익위원회, 2016, p. 6).

##### (2) 부패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2조에서는 부패영향평가의 평가항목, 평가지침, 기초자료의 작성·제출, 개선권고, 평가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 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다. 법령의 경우 제·개정 법령안 및 현행 법령이 평가대상이 된다. 행정규칙의 경우에도 제·개정 행정규칙 및 현행 행정규칙, 자치법규의 경우에도 제·개정 자치법규 및 현행 자치법규가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 3) 평가내용

부패영향평가 체계는 평가영역(4개)-평가지표(11개)로 구성된다(<표 3-18> 참조). 평가영역은 ① 준수, ② 집행, ③ 행정절차, ④ 부패통제 등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준수 영역은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합리성은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로 측정되며, 제재규정의 적정성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한다. 특혜발생 가능성은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활용한다.

둘째, 집행 영역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은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활용한다.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은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재정누수 가능성은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를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표 3-18> 부패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제재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셋째, 행정절차 영역은 접근의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등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접근의 용이성은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세부 평가지표로 구성한다. 공개성은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를 활용한다. 예측가능성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이 포함된다.

넷째, 부패통제 영역은 이해충돌가능성과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등 2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이해충돌가능성은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를 세부 평가지표로 활용한다.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은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 4) 평가방법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에 따라 평가방법은 상이하다(국민권익위원회, 2016, pp. 11-12). 첫째, 제·개정 법령의 경우 각 기관이 소관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를 시행하고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하여 평가한다. 현행 법령 평가는 중장기평가계획과 현안과제 평가로 구분된다. 중장기평가계획의 경우 각 기관은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과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를 수행한다. 현안과제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한다.

둘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나 현행 행정규칙에 대해 부패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직접 평가한다. 행정규칙 평가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평가 매뉴얼 개발, 보급, 교육 등을 주로 담당하며, 기관으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에 대해서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한다. 현행 행정규칙과 관련해서는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규칙까지 함께 평가하기도 한다.

셋째, 자치법규(조례, 규칙) 역시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현행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평가하고 해당기관에 결과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은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을 개발, 보급, 교육하는 것이며,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나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평가를 담당한다.

〈표 3-19〉 부패영향평가의 평가방법

구분		각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개정 법령안 평가	제·개정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단계 시 부패영향평가 요청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통상 40일 이내 평가 필요시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현행 규정도 병행평가
	중장기 평가계획	현행법령 등에 대한 평가대상과제 제출	중장기 평가계획 수립 중장기 평가과제 선정 및 평가
현행법령 평가	현안 과제	위원회 요청시 평가관련자료 제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현안문제 우선적으로 대응
	제·개정 행정규칙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위원회가 개선권고한 행정규칙을 제·개정하거나 자체적 개선조치가 근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평가 매뉴얼 개발·보급·교육 평가요청 받은 행정규칙의 평가는 법령안 평가에 준해 통상 40일 이내에 평가
행정규칙 평가	현행 행정규칙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자료 제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행정규칙 선정· 평가 필요한 경우 법령안 평가시 관련 행정 규칙까지 함께 평가
	제·개정 자치법규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자체적 개선조치가 근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 평가
자치법규 평가	현행 자치법규	위원회 요청시 평가 관련 자료 제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자치법규 선정· 평가
	제·개정 및 현행 내부규정	자율 평가체계 운영(원칙) 자체적 개선조치가 근란한 경우 위원회에 평가요청	자체평가 모형 및 매뉴얼 개발·보급· 교육 평가요청 받는 정관·사규·평가
공직유관 단체 내부규정 평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16. 「부패영향평가 매뉴얼」.

## 5. 아동영향평가

### 1) 개요

#### (1) 아동영향평가의 개념

아동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장기 계획, 세부단위 사업 등 어떠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등이 모든 아동 또는 특정 유형의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 하는 것이다(Corrigan, 2006, p. 7).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종로구, 2016, p. 7; 강동구, 2016, p. 113). 아동영향평가의 목적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실질적인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함이다(강동구, 2016, p. 7).

#### (2) 아동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아동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다. 2016년 3월 22일 「아동복지법」 제11조의2가 신설되었다. 동법 11조2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영향평가는 현재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수준의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서도 아동영향평가를 규정한 바 있다.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아동영향평가를 “군산시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조례, 중장기 계획,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평가대상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이다(서울시 강동구, 2016, p. 114). 구체적으로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 아동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관련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중장기 사업의 계획 역시 아동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셋째, 해당 연도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과 관련된 세부사업 등이 포함된다(강동구, 2016, p. 115).

### 3) 평가내용

서울시 강동구의 아동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사전평가는 1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0>과 같다. ①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UN아동권리협약이나 아동청소년 법규, 또는 기타 법규 및 타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는지, ②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는지, ③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④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 ⑤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⑥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는지, ⑦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⑧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사전 또는 사후 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한지, ⑨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는지, ⑩ 기타 등이 포함된다.

둘째, 사후평가는 5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21>과 같다. ① 해당 업무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 등과 갈등이 없었는가, ② 해당업무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③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지,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지 등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과의 관련성 여부, ④ 해당업무의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해당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구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지 등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성 여부, ⑤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의 필요성, 그리고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지 등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표 3-20〉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오	해당 없음
1.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법규나 조례와 갈등우려가 있습니까?			
1) UN아동권리협약			
2) 아동청소년 법규			
3) 기타 법규 및 타조례			
2. 해당 사업(계획, 조례)이 다음의 아동권리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1) 생존권(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조고가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4) 참여권(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특정 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습니까?			
4.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까?			
5.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까?			
6. 해당 사업(계획, 조례) 기획 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습니까?			
7. 해당 사업(계획, 조례)을 아동과 이해당사자에게 알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8. 해당 사업(계획,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심층아동영향평가가 필요합니까?			
1) 사전심층아동영향평가			
2) 사후심층아동영향평가			
9. 해당 사업(계획, 조례)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10. 해당 사업(계획, 조례)의 아동권리 침해의 방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이나 보완계획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전문가자문, 아동의견수렴 등)			

자료: 서울시 강동구, 2016.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표 3-21〉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사후평가 평가지표

평가지표	응답범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아동권리 협약 및 타법규·조례와의 관계 관련			
1) 해당업무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규, 기타 법규와 조례등과 갈등이 없었는가?			
2. 아동권리 관련			
1) 생존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식품, 깨끗한 공기와 식품,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전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권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각종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3) 발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4) 참여권 보장에 도움이 되었는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3. 무차별과 최선의 이익 관련			
1) 특정유형의 아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고 있는가?			
2) 부정적 영향을 받은 아동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가?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는가?			
4. 아동 및 청소년의 참여 및 홍보 관련			
1) 해당업무의 기획 시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2) 아동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반영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3) 해당업무를 아동과 이해당사자 및 구민에게 적절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하였는가?	아동		
	이해당사자		
	구민		
▶ 대상별 홍보방식 및 실적 제시(ex. 홍보물, 웹사이트, 성과보고자료집, 보고회 등)			
5. 사전/사후영향평가 및 자문, 기대효과 관련			
1) 사후심층영향평가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가?			
2) 아동의 권리 증진 효과를 적절하게 검토하고 있는가?			

자료: 서울시 강동구, 2016.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 4) 평가방법

서울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는 사전아동영향평가와 사후아동영향평가로 구분된다(강동구, 2016, p. 131). 첫째, 사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의 수립계획 단계에서 진행되는 영향평가이다. 담당부서에서는 아동영향평가 대상을 검토하고 사전아동영향평가 기초자료,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한다. 평가부서는 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검토하여 심층영향평가 필요성을 판단한다.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둘째, 사후아동영향평가는 조례 및 규칙, 장기계획, 사업이 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를 의미한다. 담당부서에서는 사후아동영향평가 점검표를 작성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한다. 평가부서는 사후영향평가 점검표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층영향평가 필요성을 판단한다. 해당 업무에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설문 또는 FGI를 진행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가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참여기구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일괄 검토 후 아동영향평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다.

### 제2절 국외 유사 영향평가 사례

#### 1. 사회영향평가(Social Impact Assessment: SIA)

##### 1) 개요

##### (1) 사회영향평가의 개념

사회영향이란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놀고,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직하고, 사회구성원들로서 일반적으로 대처하는 방식들을 바꾸는 어떤 공공 또는 사적인 행위들의 인간대중에 대한 결과”를 의미한다(The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Assessment, 1994; Glasson, 2000에서 재인용). 사회영향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 커뮤니티, 정치적 체계, 환경, 건강, 복지, 그들의 개인권과 재산권, 그들의 두려움과 열망에서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UNPAN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사회영향평가는 “어떤 사업 혹은 정책의 추진 결과로서 주민들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그 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Burdge and Vanclay, 1995). UNPAN Centre for Good Governance(2006)에 따르면 “정책과 정부활동에 따르는 사회적 결과를 미리 평가·측정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국제원칙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에 따르면 사회영향평가는 “의도되거나 의도되지 않은 사회적 결과들과 정책, 프로그램, 계획, 프로젝트와 같은 계획된 조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과 그리고 그들 조치에 의해 촉발된 사회변화과정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관리하는 과정” 으로 정의한 바 있다(IAIA, 2015). 사회영향평가는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사회적인 갈등과 충돌에서 오는 비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IAIA, 2015).

## (2) 사회영향평가의 유형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의 결과로 발생하는 사회적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영향평가를 유형화하면 <표 3-22>와 같다(UNPAN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사회영향평가 유형은 ① 라이프 스타일 영향, ② 문화적 영향, ③ 커뮤니티 영향, ④ 삶의 질 영향, ⑤ 건강 영향 등이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의 결과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공유된 관습, 의무, 가치, 언어, 종교적 믿음 및 사회적 그룹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인프라, 서비스, 자발적 조직, 네트워크 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넷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관, 유산, 소속감에 대한 인식, 안전과 거주 가능성, 미래에 대한 포부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인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복지(웰빙) 등이 포함된다.

<표 3-22> 사회영향평가의 유형

구분	내용
1. 라이프 스타일 영향	동료와 친구들, 가족 등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동하는 방법
2. 문화적 영향	공유된 관습, 의무, 가치, 언어, 종교적 믿음, 그리고 다른 요소들이 사회적, 인종적 집단구별을 만드는 것
3. 커뮤니티 영향	인프라, 서비스, 자발적 조직들, 네트워크 활동과 응집력
4. 삶의 질 영향	장소에 대한 감각, 미관 그리고 문화유산, 소유물에 대한 인식, 안전과 살만한 정도(살기 좋음), 미래에 대한 열망
5. 건강 영향	건강영향평가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복지(Well-being)

자료: United Nations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A Comprehensive Guide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 2) 평가내용

사회영향평가의 평가체계는 평가영역(5개)-평가지표(31개)로 구성된다(〈표 3-23〉 참조). 사회영향평가의 평가영역은 ① 인구 특성, ② 커뮤니티와 제도적 구조, ③ 정치적·사회적 자원, ④ 개인적 및 가족의 변화, ⑤ 커뮤니티 자원 등으로 구성된다(UNPAN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첫째, 인구 특성 영역은 인구변화, 인종구성, 이주민, 임시노동자들의 유입과 유출, 임시거주자들 등의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둘째, 커뮤니티와 제도적 구조 영역은 자발적인 조직들, 이해집단의 활동 지역정부의 규모와 구조, 변화의 역사적 경험, 고용 및 소득 특성, 소수집단들의 고용 형평성, 지역/지방/국가적 연계, 산업/상업의 다양성, 기획과 구역활동의 존재 등의 지표로 구성된다. 셋째, 정치적·사회적 자원 영역은 권력과 권위의 분포,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이해관계를 가진 공중, 리더십 역량과 특성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넷째, 개인적 그리고 가족의 변화 영역에는 위험과 건강과 안전의 인식, 이주와 재이주 우려, 정치적,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 거주 안정성, 사교의 밀도, 정책에 대한 태도, 가족과 친구 네트워크,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 등의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다섯째, 커뮤니티 자원 영역은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변화,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접근, 토착(원주민)집단들, 토지사용 유형,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고고학적 자원에서의 영향 등의 평가지표가 포함된다.

한편 개발된 정책은 전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① 기획·정책개발 단계, ② 집행단계, ③ 운영·유지 단계, ④ 해체·포기 단계의 각 단계마다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시재, 2002, p. 111).

〈표 3-23〉 사회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지표		정책 및 프로젝트 단계			
		기획/정책개발	집행	운영/유지	해체/포기
인구 특성	인구변화				
	인종구성				
	이주민				
	임시노동자들의 유입과 유출				
	임시거주자들				
커뮤니티와 제도적 구조	자발적인 조직들				
	이해집단의 활동				
	지역정부의 규모와 구조				
	변화의 역사적 경험				
	고용/ 소득 특성				

	소수집단들의 고용 형평성				
	지역/지방/국가적 연계				
	산업/상업의 다양성				
	기획과 구역활동의 존재				
정치적 사회적 자원	권력과 권위의 분포				
	이해관계자들의 식별				
	이해관계를 가진 공중				
	리더십역량과 특성				
개인적 그리고 가족의 변화	위험과 건강과 안전의 인식				
	이주와 재이주 우려				
	정치적,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				
	거주 안정성				
	사교의 밀도				
	정책에 대한 태도				
	가족과 친구 네트워크				
	사회복지에 관한 관심				
커뮤니티 자원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변화				
	커뮤니티 기반시설의 접근				
	토착(원주민)집단들				
	토지사용 유형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고고 학적 자원에서의 영향				

자료: United Nations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A Comprehensive Guide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한편 사회영향평가의 평가지표를 개인·가구 수준과 커뮤니티·제도적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SOAS, 2016). 사회영향평가의 개인·가구 수준은 ① 물질적 측면, ② 감정적 측면, ③ 정신적 측면, ④ 제도적 측면, ⑤ 법적인 측면, ⑥ 인권적인 측면, ⑦ 사회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의 측면 등을 포괄한다(〈표 3-24〉 참조).

〈표 3-24〉 사회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인·가구 수준

구분	평가지표
1	죽음, 가족 구성원의 죽음
2	체포, 구속, 감금, 고문, 협박 또는 다른 개인에게 가해진 인권 남용
3	감소된 음식의 가능성과 적절한 영양
4	감소된 임신에 대한 통제(임신중절의 가능성과 권한부여)
5	감소된 건강과 출산수준(임신에 대한 능력)
6	감소된 정신건강, 증가된 스트레스, 불안, 소외, 무관심, 우울증
7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발전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변화
8	사실상 개인적인 안전, 위험 노출
9	오명이 씌워진 경험, 일탈 꼬리표 붙이기(deviance labelling)
10	인식된 삶의 질의 감소
11	삶의 표준의 감소, 부(富)의 수준(level of affluence)의 감소
12	경제적 상황의 악화, 소득 및 재산가치 수준
13	감소된 자율성, 독립성, 생계수단의 안전
14	고용의 유형 또는 지위(등급)의 변화, 또는 실업상태로 된 것
15	고용에 있어서 직업 기회, 잠재력, 다양성, 유연성의 감소
16	도덕적으로 화나게 함, 모독, 종교적인 모욕, 성스러운 지역에서의 폭력
17	분노(프로젝트에 대한 반대/항의), NIMBY(나의 뒤뜰에는 안돼 - 혐오시설 유치반대)
18	높은 기대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실패로 인한 불만족
19	짜증(먼지, 소음, 이방인들(Strangers), 많은 사람들(more people))
20	매일의 삶과 삶의 방식의 붕괴(다르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21	환경적 편의시설 가치의 감소
22	커뮤니티, 커뮤니티 응집력, 커뮤니티 통합에 대한 인식
23	커뮤니티와의 동일시와 장소에의 연결(나는 여기에 속하는가?)
24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변화된 태도, 이웃에 대한 만족 수준
25	사회적 네트워크의 붕괴
26	가족구조와 안정성의 변경(이혼)
27	가족 폭력
28	가정 내에서의 성별(Gender)관계
29	변화된 문화적 가치
30	개인건강과 안전, 위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변화된 인식
31	변화된 레저 기회들
32	주택의 질(Quality of Housing)
33	가정적인 검소함, 아늑함(Homeliness)
34	밀집과 혼잡
35	미적인 품질(Aesthetic Quality), 전망, 시각적 영향
36	업무량, 생존/순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받아들이 필요가 있는 업무의 량

자료: SOAS, University of London, 2016.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커뮤니티와 제도적 수준의 평가지표는 제도와 기관에 대한 감정과 인상, 표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SOAS, 2016).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3-25> 참조).

<표 3-25> 사회영향평가 평가지표: 커뮤니티와 제도적 수준

구분	평가지표
1	커뮤니티 내에서의 사람들의 죽음
2	인권위반, 말할 자유
3	물리적 기반시설의 적절성(물 공급, 하수도, 서비스와 공공시설)
4	커뮤니티 사회적 인프라, 건강, 복지, 교육, 도서관들의 적절성
5	커뮤니티내의 주택의 적절성
6	기관, 지역정부, 규제조직의 업무량
7	문화적 통합(지역문화, 전통, 의식의 지속)
8	자원들에 바로접근
9	문화유산과 다른 고고학적 지역들과 문화적 또는 역사적 중요성의 영향력
10	지역 언어 또는 방언의 손실
11	문화의 타락(저하)
12	평등(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13	변화된 평등/토착 집단들 또는 소수자들과 관계된 사회적 정의 이슈들
14	커뮤니티내의 성별 관계(Gender Relations)
15	경제적 번영
16	커뮤니티의 종속/자율성/다양성/생존능력
17	커뮤니티내의 실업수준
18	기회비용(다른 옵션들의 손실)
19	사실상 범죄
20	사실상 폭력
21	사회적 긴장, 갈등 또는 커뮤니티내의 심각한 분열
22	정부의 부패, 신뢰성, 진실성
23	정책결정에서 커뮤니티 참여의 수준
24	문화유산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사회적 가치

자료: SOAS, University of London, 2016.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 3) 평가방법

사회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① 공중참여, ② 대안의 식별, ③ 기본조건 검토, ④ 영향의 범위설정, ⑤ 영향의 분석과 식별, ⑥ 영향에 대한 반응의 예측과 평가, ⑦ 간접적이고 누적적인 영향, ⑧ 대안의 평가와 영향의 완화, ⑨ 모니터링 등의 단계로 구분된다(UNPAN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첫째, 공중참여 단계는 어떤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을 식별하는 단계이다. 정책 및 사업 등에 의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받는 집단 등을 식별한다.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집단들은 ① 근처에 사는 사람들, ② 정책개입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 ③ 정책으로 인해 이주될 수도 있는 사람들, ④ 근처에 살고 있지만, 새로운 정책 또는 정책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 등이 포함된다.

둘째, 대안의 식별 단계는 계획된 정책이나 합리적 대안 등을 포함한다. 대안의 식별 단계는 계획된 정책이나 사업은 사전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요구 사항을 식별하기 위해 자세히 설명된다. 정책은 식별될 것이고, 그들의 적합성이 정책의 정보, 지역과 사회적 이슈들과 더 넓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평가된다.

셋째, 기본조건 검토 단계이다. 이 단계는 커뮤니티 측면도를 그리는 것과 관련된다. 영향권에 있는 인구환경을 기존 사회의 상황 및 추세를 기술한다.

넷째, 영향의 범위설정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으로 인해 영향받을 수 있는 모든 구성원들과 인터뷰, 토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사회적 영향의 범위를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측정된 영향의 분석과 식별 단계이다. 이 단계는 잠재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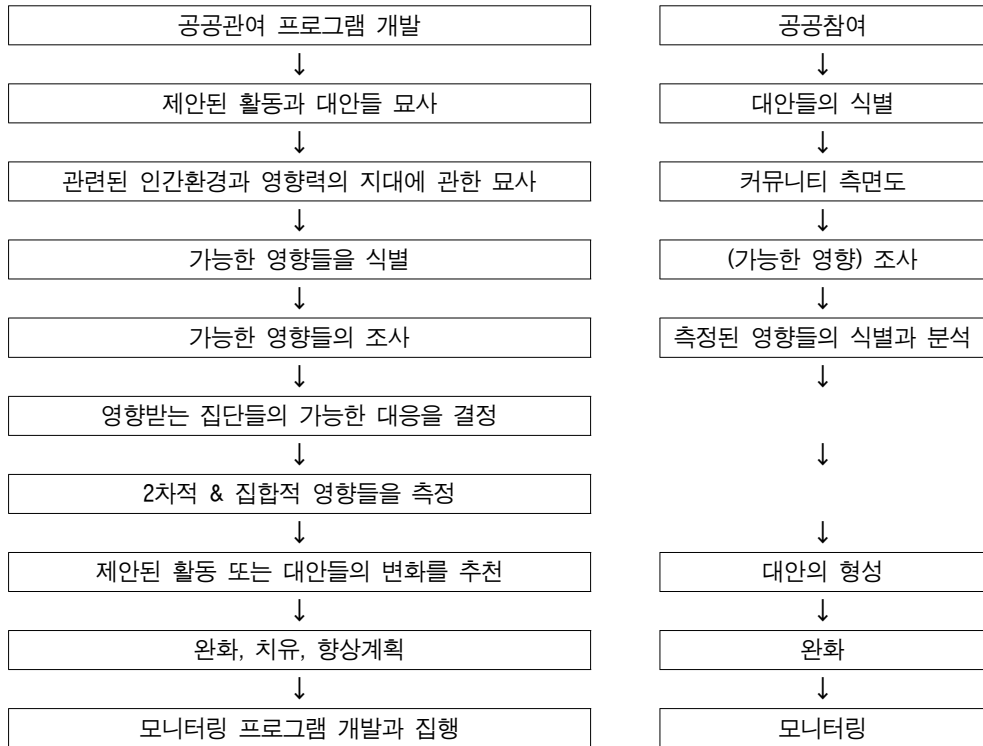
여섯째, 영향에 대한 반응의 예측과 평가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사회적 영향을 식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영향을 받는 공중의 활동은 비교사례와 인터뷰 등을 활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이 단계는 직접적인 영향(잠재적인 영향)에 기초한 사람들의 반응예측이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응의 예측은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사회영향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이시재, 2002, p. 115).

일곱째, 간접적이고 누적적인 영향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정책의 연쇄효과를 식별하기 위한 단계이다. 정책의 간접적이고 집합적 영향이기 때문에 측정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여덟째, 대안의 평가와 영향의 완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정책의 영향을 받거나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안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있다. 계획된 정책의 대안 또는 수정은 분리되어서 평가되어야 한다. 사회영향평가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완화에는 계획의 보류, 수정, 설계나 정책변경에 의한 영향의 최소화, 조정, 그리고 대안적 자원, 기회제공에 의한 영향의 피해보상 등이 포함된다(이시재, 2002, p. 116).

아홉째, 모니터링 단계이다. 이 단계는 정책의 예상하지 못한 영향과 계획된 정책으로부터의

편차를 식별하는 단계이다(UNPAN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정책의 변경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중대한 예기치 못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이시재, 2002, p. 116).



자료: United Nations Public Administration Network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A Comprehensive Guide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그림 3-1> 사회영향평가의 평가방법 단계

## 2. 가난과 사회영향분석(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 PSIA)

### 1)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의의

가난과 사회영향분석(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 PSIA)은 취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well-being)에게 초점을 맞추어 정책변화가 분배와 가난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Robb, 2003, p. 8). Robb(2003)은 가난과 사회영향분석(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에 관한 보고서에서 경제적 분석에 기반한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다차원적 접근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함을 강조한 바 있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목적은 성장과 가난감소를 위해 가장 적절한 정책 조합과 정책 결정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공개토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책임성을 지원하는 것이다(Robb, 2003, p. 8).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은 성별 분석(gender analysis)과 사회자본평가 등과 같은 사회적·환경적, 경제적 도구는 물론 다시장 모델(multimarket models) 등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의 광범위한 도구와 기법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한다.

극단적인 불평등은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불평등은 가난의 심화, 생산적 잠재력 제한, 투자감소 등을 야기하며, 이는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Robb, 2003). 균형적인 성장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반면, 불평등한 성장은 투자와 협력의 환경을 침식시키는 사회적 긴장을 야기시킨다는 Kanbur(2001)의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Robb(2003) 역시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구조적 가난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특정 사회나 국가의 정책이 가난과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의 조정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2)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내용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제도는 공식적인 제도와 비공식적인 제도를 모두 포함한다(OECD, 2007, p. 19).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평가지표는 ‘거시정책과 가난 목표’, ‘구조적 정책들과 가난 목표’, ‘재정정책과 가난목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Robb, 2003). ‘거시정책과 가난목표’는 인플레이션, 환율정책, 재정적자로 분류할 수 있고, ‘구조적 정책과 가난목표’는 민영화, 무역자유화, 은행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 ‘재정정책과 가난목표’는 순이익증대와 공공지출을 포함한다.

## 3)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단계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은 ① 올바른 질문하기, ② 이해관계자의 식별, ③ 전달채널 이해, ④ 제도 평가, ⑤ 데이터와 정보 수집, ⑥ 영향분석, ⑦ 계획 개선 및 보상조치 검토, ⑧ 위험평가, ⑨ 영향 조사 및 평가, ⑩ 정책토론 촉진 및 정책결정에의 환류(feedback) 등 10단계에 걸쳐 수행된다. 여기에서는 World Bank(2003)가 제안한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첫째,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의 주제가 될 개혁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 또는 재산의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의제에 포함될 일련의 개혁들을 식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발전계획에서의 모든 개혁들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혁들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국가차원의 문제이며, 가난과 사회영향의 예상된 규모와 방향, 정책의제에서 이슈의 중요성, 근원적인 정책 또는 개혁의 시점과 긴급성, 개혁을 둘러싼 국가적 토론의 수준 등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World Bank, 2003). 최종적으로 선택된 개혁이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주제로 설정되면 분석을 위한 핵심질문을 형성한다.

둘째,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단계이다. 올바른 질문과 해결이 요구되는 문제를 확인한 후에는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해야 한다(World Bank, 2003). 여기에서 이해관계자의 확인은 특정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정책집행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World Bank, 2003). 첫 번째 단계에서 피해집단과 수혜집단인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분류하는 것은 특정 정책의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핵심 작업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가의 정치경제와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분석가들은 국가의 정치경제를 고려함으로써 영향을 받는 집단들을 식별할 수 있고, 정책결정자들에게 대한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성별, 연령의 다양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긴장을 양극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World Bank, 2003).

셋째, 전달채널에 대한 이해 단계이다. 잠재적 이해관계자들이 식별되고 나면 분석전문가에 의해 특정한 정책변화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들에게 영향을 주는 채널을 기술하는 것이다(World Bank, 2003). 이 단계에서는 개혁과 국가의 맥락에 의존한 다양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서 영향은 두 개의 핵심적인 차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 영향 vs. 간접적 영향, 다른 하나는 장기적 영향 vs. 단기적 영향 등이다(World Bank, 2003).

넷째, 제도에 대한 평가 단계이다. 제도는 가난에 대한 정책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2개 핵심 영역은 시장구조의 분석과 집행기관의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World Bank, 2003). 시장구조의 분석은 시장구조의 이해와 관련된 것으로 시장의 본성(독점, 수요독점, 과점, 완전 경쟁시장 등)과 시장구조를 결정하는 것(자연독점, 진입제한, 담합, 등)을 식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성과와 활동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장개혁 조건들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다(World Bank, 2003). 한편 집행기관의 분석은 정부의 책임성 또는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 다른 집행기관들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조직내부와 조직 간 정책결정의 흐름과 정보와 자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조직지도(organizational mapping)<sup>1)</sup>과 제도평가도구(institutional assessment tool)<sup>2)</sup>이 있다(World Bank, 2003).

다섯째, 데이터와 정보 수집 단계이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이중 수집 가능한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미래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계획되어야 하는지 등은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중요한 부분이다. 필요한 데이터의 확인은 정책이슈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전달체계 등의 사전 확인을 통해 가능하다(World Bank, 2003).

여섯째, 영향분석 단계이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 과정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들이 사용되어진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사회학, 정치적 분석 등이 그것이다. 특정 분야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분석의 통합이 요구되기도 한다. 영향분석을 위한 접근법의 선택은 간접적 영향의 중요성, 데이터 가능성, 시간, 역량 등에 의해 결정된다(World Bank, 2003).

일곱째, 계획 개선 및 보상조치 검토 단계이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World Bank, 2003). 개혁의 설계는 계획 개선 또는 완화조치 등을 포함함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World Bank, 2003).

여덟째, 위험평가 단계이다. 이 과정은 정책선택과 설계, 정책 우선순위 등에 있어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위험분석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한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에서의 위험은 제도적 위험, 정치경제적 위험, 외생적 위험, 다른 국가적 위험 등 4가지 주요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위험은 평가의 대상이 된다(World Bank, 2003).

아홉째, 영향 조사 및 평가 단계이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에 기반한 개혁을 식별하고 설계할 때, 영향의 사회적 책임성과 모니터링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모니터링과 평가는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향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World Bank, 2003).

마지막으로 정책토론 촉진 및 정책선택에의 피드백 단계이다. 정책형성은 단순히 기술적

1) 여기에서 조직지도는 정적인 지도와 과정 지도를 포함한다(World Bank, 2003). 정적인 지도(Static Mapping)는 집행기관들 간의 관계와 개혁을 지지하거나 방해하리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과정지도(Process Mapping)는 공사부문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수행된다. 이는 관련된 조직의 현재 활동과 규범을 식별하는 활동으로 중요 자원들과 정책결정권위, 정보흐름 추적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World Bank, 2003).

2) 제도평가도구는 프로젝트 구성요소들의 제도적 분석을 위해 설계되어진다. 여기에는 역할, 지식과 정보 접근, 인센티브 구조, 정책변화 수용성, 역량, 자원과 재정적인 영향력, 새로운 개혁 의제에 적응하는 범위를 포함한 관련된 조직의 핵심이슈들이 포함된다(World Bank, 2003).

과정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이다.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은 정책결정자에게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정책의 영향인지에 관한 증거기반의 정책결정을 위한 기술적 지표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유에서는 공무원과 연구자, 의회의원, 시민사회와 기부자, 그리고 이외 핵심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정책토론이 필요하다. 계속된 모니터링과 정책집행 분석으로부터 학습한 교훈을 정책 재설계와 조정에 피드백하는 것은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주요한 목적이기도 하다(World Bank, 2003).

### 3. 가난영향평가(Poverty Impact Assessment)

#### 1) 가난영향평가의 의의

가난영향평가(Poverty Impact Assessment: PIA)는 앞에서 살펴본 가난과 사회영향분석과 유사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가난영향평가는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에서처럼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회집단의 삶의 질(well-being)을 평가하는 것이다. 가난영향평가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상처를 받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부행위(정책, 사업, 계획)에 의해 야기된 긍정적이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활동이다(OECD, 2007, p. 16). 가난영향평가는 궁극적으로 밀레니엄 개발 목표들(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가난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ECD, 2007, p. 16).

가난영향평가를 정부의 사업과 계획의 평가과정에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난감소 영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OECD, 2007, p. 16). 사전적 가난영향평가(ex ante PIA)는 특정 정책이 다른 정책보다 선호되고 논리와 자원배분 결정에 필요한 근거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양한 정책 중에서 적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잠재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설계되도록 할 수 있다. 사전적 가난영향평가는 국가발전 또는 가난감소 전략으로써의 정책 이해, 정책에 의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와 제도에 대한 이해, 개별적 전달채널들의 상호관계와 중요성의 이해, 정책대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난의 다차원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책의 결과 평가, MDGs의 잠재적 영향 평가, 잠재적 위험의 핵심가정에 대한 평가 및 식별, 핵심 지식격차의 확인 및 실제 사용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 평가, 집행과정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고안된 모니터링 논리와 기반 데이터의 향상과 사후 평가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투입으로서의 프레임워크, 정책결정자에게 상기 평가들에 기반한 정책의 집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가난극복 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선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ECD, 2007, p. 17).

그렇다면 가난영향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가난과 사회영향분석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 OECD(2007)에 따르면 가난영향평가는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축약본(light version)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PIA를 위한 데이터, 시간, 인적, 재정적 자원은 가난과 사회영향분석보다 적다. 이외에도 가난영향평가와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3-26> 가난영향평가와 가난과 사회영향분석 비교

구 분	가난영향평가(PIA)	가난과 사회영향분석(PSIA)
가난	다차원적 개념으로서의 가난	복지와 분배의 영향
적용수준	사업과 계획, 정책개혁에 초점	거시경제학, 구조적 및 부문적 개혁 등과 같은 정책개혁에 초점
시간 프레임	2-3주	6-18개월
데이터 수집과 분석	주로 존재하는 데이터의 사용 (질적 그리고 양적)	존재하는 데이터 및 데이터 수집 (질적 그리고 양적)
영향	단기적(직접), 중기적(간접) 영향	단기적(직접), 중장기(간접) 영향
이해관계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들	
제도	공식적 제도 및 비공식적 제도의 분석	
전달채널	6개의 전달 채널들 (고용, 가격, 상품과 서비스로의 접근, 자산, 이전과 세금, 권위)	
위험	고려되어짐	
가난 상황과 가난감소전략	가난영향평가 보고서의 부분	가난과 사회영향분석 보고서의 구조적인 부분이 아님. 보통은 저소득 국가의 가난과 사회영향분석에서 고려됨
완화 조치들	특히 그들이 가난하거나 취약한 사람들로 떨어졌을 때 잠재적인 개입의 부정적 영향들의 사례에서 제안됨	
개입의 비용	없음	있음
모니터링과 평가의 필요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핵심 영역들의 식별	
정보자원의 품질	분석을 위한 핵심	분석의 일부분

자료: OECD, 2007, *A Practical Guide to Ex 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 2) 평가내용

OECD는 가난을 극복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개인 또는 집단들에 의해 요구되는 5개의 역량을 확인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 역량은 경제적 역량, 인간 역량, 정치적 역량, 사회-문화적 역량, 보호 역량 등을 포함한다(OECD, 2007, p. 23).

첫째, 경제적 역량(economic capability)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소비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역량은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사용할 능력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재정소비와 저축에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둘째, 인간 역량(human capability)이다. 이는 건강, 교육, 영양, 깨끗한 물과 주거지 등을 포함한다. 인간 역량은 한 사회에 효율적으로 관계될 필요성과 생존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의 부분이 되기 위한 역량을 다룬다.

셋째, 정치적 역량(political capability)이다. 이는 인권과 참여, 그리고 이외의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위와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한 사회 내에 대표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넷째, 사회-문화적 역량(socio-cultural capability)이다. 이는 공동체내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문화적 역량은 사회와 문화적 관계, 그리고 네트워크와 활동과정에서 의미있고 가치있는 구성원으로 포함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다룬다.

다섯째, 보호적 역량(protective capability)이다. 이는 국가에 의한 불공정한 대우를 포함해 개인과 재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이슈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능력과 보험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들을 다룬다.

각 역량들은 상호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OECD, 2007, p. 23). 예를 들어 가정 구성원들은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소비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취약한 소비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산이 부족하고 낮은 수준의 건강상태와 교육, 또는 충격의 결과로 인해 그들의 생산적인 자산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인권과 정치적 자유의 부족은 폭력으로부터의 위협을 의미하기도 한다. 취약성과 사회적 배제는 인간과 정치적인 역량들을 방해하고, 소득과 자산을 감소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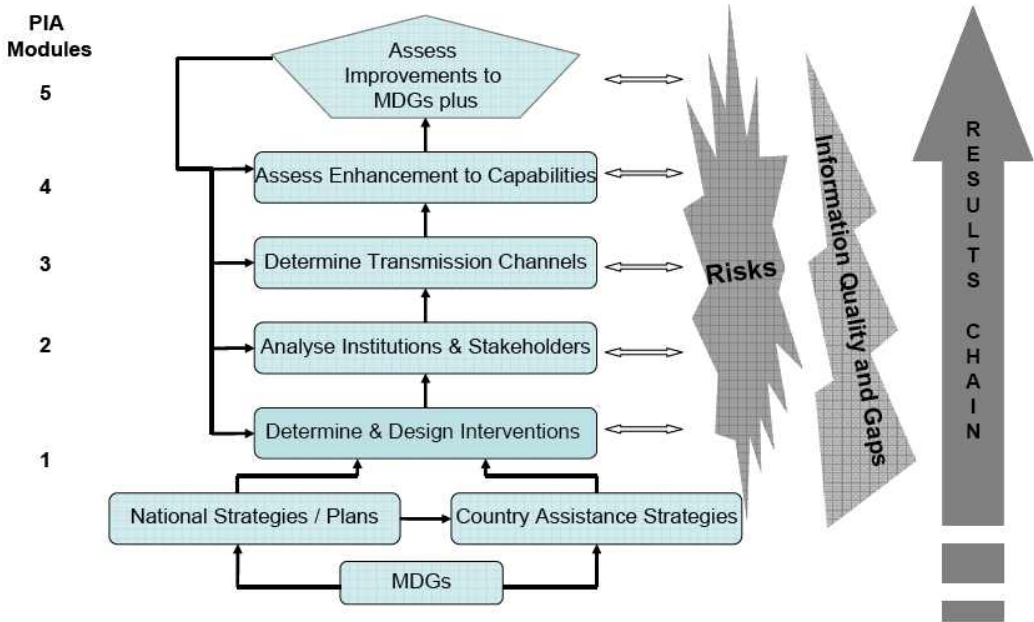
〈표 3-27〉 OECD/DAC 역량 프레임워크

역량	주요 내용
1. 경제적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사용할 능력과 지속가능한 생계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 재정소비와 저축에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룸
2. 인간	건강, 교육, 영양, 깨끗한 물과 주거지, 한 사회에 효율적으로 관계될 필요성,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의 부분이 되기 위한 것을 다룸
3. 정치적	인권과 목소리를 가지는 것과 공공정책과 정치적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간의 권위와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수준에서 한 사회내에 적절히 대표되어질 수 있는 능력을 다룸
4. 사회·문화적	사회와 문화적 관계와 네트워크와 활동들안에서 가치있는 구성원으로서 포함되고 참여하는 권리와 능력을 다룸
5. 보호적	개인과 재산의 위협(국가에 의한 불공정한 대우를 포함해서)으로부터 보호와 같은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 도와주는 모든 이슈들과 경제적인 충격을 견딜 능력과 보험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형태들을 다룸

자료: OECD, 2007. *A Practical Guide to Ex 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 3) 평가방법

사전적 가난영향평가는 기존의 방법론에 의해 구축된 단순한 프레임워크와 평가절차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전적 가난영향평가의 프레임워크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그림 3-2) 참조). 사전적 가난영향평가 프레임워크는 5개의 모듈(mod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OECD, 2007, pp. 26-27).



〈그림 3-2〉 사전적 가난영향평가 프레임워크

첫째, 모듈 1은 빈곤 현황과 국가 전략과 계획에 기반해 정책을 결정하고 설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국내 빈곤 현황 및 관련 지역(또는 부분), 이 지역들을 선택한 이유; 국가의 계획과 평가가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정책대상 집단에 대한 간단한 기술 등이 포함된다.

둘째, 모듈 2는 이해관계자와 기관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해관계자 및 기관 분석은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 주체별 역할을 확인하고 식별해야 한다.

셋째, 모듈 3은 전달채널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정책대상 집단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개입에 의한 결과와 각 채널별 예상되는 전체 결과를 요약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여기에서 주요 전달채널은 가격, 고용, 이전(지출), 접근, 권위, 자산 등이 있다.

넷째, 모듈 4는 정책대상 집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향상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경제적 역량, 인간 역량, 정치적 역량, 사회-문화적 역량, 보호 역량 등이 얼마나 향상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다섯째, 모듈 5는 MDGs에의 영향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이 국가 목표 외에도 7개의 MDGs와 국제적 목표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 제3절 시사점

여기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영향평가와 유사 영향평가 사례분석 내용을 토대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시민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는 도입단계에 불과하다. 수원시도 예외는 아니다. 수원시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8조에 따르면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체계화되지는 않은 실정이다. 이에 수원시의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을 위한 사전 정책수단으로서 인권영향평가제도 활성화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1. 평가 관련 법적 근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분야별 영향평가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평가목적, 평가유형, 평가시기, 평가주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서울 성북구 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각 지자체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시기, 유형, 주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원시도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시기, 유형,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 2. 평가대상

인권영향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및 제외 대상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는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① 조례·규칙, ② 인권취약계층 등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선정하였으나, 성북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성북구의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① 구청장이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 ② 주민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 ③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른 3년 이상 주기의 계획, ④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⑤ 이외에 구청장이 주요한 정책



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등으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인권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준비 및 실행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평가시기

영향평가는 현재 또는 제안된 활동의 미래결과를 식별하는 것으로 사전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북구와 광주광역시의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시기에 대해 사전평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규정으로 중간평가나 시행 중 평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영향평가인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평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며, 문화영향평가 역시 사전평가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권영향평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인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검토하고, 긍정적 요소는 유지하는 반면 부정적 요소는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하지만 인권영향평가가 일회성 평가로 진행될 경우 단기적인 영향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다(강현수, 2013, p. 7; 한국인권재단, 2016, p. 36). 또한 인권영향평가를 사후평가로 진행할 경우 인권영향평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평가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인권영향평가를 단순히 사전평가로 진행할 것인지, 사후평가로 진행할 것인지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주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한국인권재단, 2016, p. 36에서 Baxewano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21 재인용). 정책이나 조례가 시행된 이후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개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은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필요하다(최유, 2015, p. 448).

### 4. 평가내용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 평가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야 한다. 이에 인권영향평가의 특성 및 차별성을 토대로 평가영역-평가지표-세부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정시 평가대상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경우 평가대상별로 상이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평가대상별로 인권이 침해될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이므로 평가지표가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최유, 2015, p. 448). 하지만 지역의 다양성과 지역의 인권수요, 인권현황 등 지역의 맥락에서 인권의 특성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평가체계 구축시 평가대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나아가 인권의 보편적 특성과 수원시만의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5. 평가방법

인권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은 대부분 주관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인권부서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가 심의한다. 성북구 인권영향평가는 평가대상에 따라 상이한 평가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자체평가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① 장애인·아동·여성·다문화 등 인권취약계층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 예산 사업계획, ②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도로, 건축물 등 공공시설 건축 사업 계획, ③ 기타 구청장,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주민의 주거 또는 사업장에서 퇴거되는 사업의 계획의 경우 인권담당 부서가 외부 전문가와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평가하는 특정평가 방법을 사용한다. 주민들의 인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이나 계획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타당하고 유연한 평가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6. 평가에의 시민 참여 확대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이나 계획 등이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에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사업을 판단하는 주체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이발래, 2013, p. 187). 문화영향평가의 경우 정부와 국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이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경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인권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지 시민참여를 통해 참여적 정책 과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7. 평가 실효성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입안·시행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발래, 2013, 185). 또한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은 단체장의 의지와 인권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에 좌우되므로 인권영향평가가 하나의 형식적 절차로 남을 가능성도 존재한다(이정은, 2016, p. 53).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의 시행 의무화를 조례에 규정하는 방안이나 행·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제4장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 제1절 인권영향평가 프레임

UN 인권이사회는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가이드를 통해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첫째, 기업을 포함해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둘째,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 셋째, 사법적·비사법적 영역 모두에서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기준으로 평가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이는 인권레짐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인권지향적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인권지향적 태도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 공감, 체감, 깊이 있는 이해와 통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인권가치가 필요하며, 태도에는 대시민에 대한 인식개선(국가인권위원회, 2010, HRIAM 참고)을 포함한다.

김형완(2016)은 “적지 않은 지자체에서 인권레짐이 이같은 유기적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간과한데서 ...(중략)...규범이든 제도든, 정책이든, 각각을 창설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데에는 반드시 ‘실태조사’ 와 ‘인권교육’, ‘주민참여’ 의 세 가지 축이 함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와 인권교육, 주민참여는 중요하지만 인권의 본질은 아니다. 인권의 본질은 소득과 안전과 기본적인 위생, 환경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단지 행정절차 상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 시민이 실질적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적정 소득보장, 안전,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기반 한 여러 정책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원시민의 인권이 지켜지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정책수립 시, 수원시는 적정한 소득과 안전과 환경을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 현황, 시 예산과 조직, 기획, 인력운영 등을 분석하여, 수원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따라서 인권생활보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력관리, 생산성, 경영관리, 은행과 대출기관, 일반행정, 준정부기관(Quangos), 국세행정, 노동현장, 주거, 재개발, 재계획, 젠트리피케이션, 도시계획, 공장건설, 오피수, 경찰, 검찰, 법원, 교육, 군(軍) 인권보장은 꼭 필요한 필요조건이다. 특히 행정부만이 아니라 사법부와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군(軍)에서 인권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없으므로, 수원시 범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책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1> ARIAM의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명권</li> <li>2.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li> <li>3.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고 강제노동에 동원되지 않을 권리</li> <li>4. 고문이나, 잔인한,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을 권리</li> <li>5. 어디에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li> <li>6.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li> <li>7. 전쟁 선동과 인종적, 종교적 또는 민족적 증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li> <li>8.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li> <li>9.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li> <li>10. 소급 형벌을 적용 받지 않을 권리</li> <li>11. 사생활에 관한 권리</li> <li>12. 아동의 자유에 관한 권리</li> <li>13.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망명을 구할 권리</li> <li>14. 국적을 가질 권리</li> <li>15. 아동 보호에 대한 권리</li> <li>16.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li> <li>17. (단독 및 타인과 공동으로) 재산권</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li> <li>19. 의견, 정보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li> <li>20.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권리</li> <li>21.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li> <li>22.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li> <li>23.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li> <li>24. 노동권</li> <li>25.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향유할 권리</li> <li>26.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파업권</li> <li>27.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li> <li>28. 건강권</li> <li>29. 교육권</li> <li>30. 공도예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과학의 진보와 혜택, 그리고 저작권권을 향유할 권리</li> <li>31. 자기결정권</li> <li>32. 구금자의 인도적 대우를 받을 권리</li> <li>33. 계약상 의무의 불이행만을 이유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li> <li>34. 외국인 체류자 추방 시 적법 절차를 밟을 권리</li> <li>35. 소수집단의 권리</li> </ol>
--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가이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일부라도 실행하고 있는 지역은 광역 지자체에서 서울과 대전 2개, 기초 지자체에서는 서울 성북구, 광주 동구,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수원시, 충남 아산시 등 5개 정도이다.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내용은 투표소, 장애인 접근권, 주민센터 건축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 일회성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서울 성북구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대전시의 시 산하 공사와 공단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활용 인권영향평가는 규범과 정책 전반에 대한 인권주류화 또는 인권기반접근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을 만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 제2절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조례 및 규칙, 계획,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을 자체평가하는 것으로 규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권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해야 한다(성복구, 2012). 인권영향평가는 비행폭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권을 둘러싼 건설적인 대화를 장려하는 것에 있다(World Bank and Nordic Trust Fund, 201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도 실제 절차에 있어서 인권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파악해서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권리와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부분을 극대화하고, 수원시의 응집력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개요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는 시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등이 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체제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의의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측하기 때문에 인권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행정기관이 법령을 입안하거나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해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장치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의 구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제도이다. 이러한 인권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에 대한 선별적·시범적 운영을 통해 단계적으로 적용범위 확장, 평가체계의 단순화, 담당부서의 자율적 판단 유도, 규제의 수단이 아닌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인권감수성 향상에 초점, 기존 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와의 중복을 피하고 상호보완적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수원시 홈페이지 <http://www.suwon.go.kr>).

###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현황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는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수원시는 위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그 동안 제한적으로나마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4년 9월부터 인권팀과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에서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2014년 9월부터 2017년 현재까지 제·개정 대상인 모든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실시되었고, 대상 자치법규는 총 275건이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원안에 동의한 건수는 총 259건이었다. 권고를 받은 건수는 총 16건이었으며, 권고를 수용한 건수는 총 12건, 검토중인 건수는 1건, 불수용 건수는 3건이었다.<표 4-2> 참조).

<표 4-2> 수원시 자치법규 대상 인권영향평가 현황

(단위 : 건)

자치법규 대상 인권영향평가	2015	2016	2017	총	
심의건수	101	112	62	275	
원안동의	93	106	60	259	
권고	8	6	2	16	
	수용	6	4	2	12
	검토중	1	-	-	1
	불수용	1	2	-	3
총	210	230	126	566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2017년 현황은 1.1.일부터 8.31.까지임.

인권팀과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에서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공공건축물은 총 5건이었다<표 4-3> 참조).

<표 4-3> 수원시 공공건축물 대상 인권영향평가 현황

(단위 : 건)

공공건축물 대상 인권영향평가	일시
수원 화성행궁	2016.08.23.
수원시 청사	2016.11.08.
수원벤처밸리Ⅱ 지식산업센터 6층	2017.02.15.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2017.03.08.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소	2017.04.05.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이처럼, 수원시는 2014년부터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왔으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제·개정 대상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반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사후평가에 그치는 등 행정전반을 대상으로 한 진정한 인권영향평가 제도화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에, 수원시는 2016년 12월 17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행정전반에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연구도 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는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정책’에 한정하고 있는데, 인권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

- 
-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3)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조례·규칙’은 일반 사법심사가 배제되고 재량이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역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

‘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국가인권위원회, 2010)자료에 의하면, 계획에 있어서의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영향에 대한 위험을 미리 식별하여 정책과정을 주도하고 과거의 인권위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울 때에 이전의 계획에서 인권위반과 관련한 논점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수원시의 브랜드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인사나 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HRIAM에 의하면, 부패와 정보 및 표현의 자유 통제, 지역정부에서 소수계층이 대표성을 띠지 못하거나, 경제분야의 참여에서 제외되는 경우, 열악한 노동기준에 대한 안이한 태도, 성별·종교·문화에 기반한 차별, 취약한 지역사회, 집단·개인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행위, 토지소유권,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계획에 있어서 계획의 주관부서의 관리자는 전략적 계획에 대한 감독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계획과정 내에서 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인사계획에 있어서는 노동권과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 등의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계획이나 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에 있어서는 토지획득, 시민들의 이주, 접근권, 지역사회 이슈와 거주시민들의 침해받을 재산권,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회계와 재정계획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보상요구에 대한 한도액과 치유 및 인권강화 실천계획, 직간접적 이해당사자들의 개입과 불만처리과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과 인권영향 평가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공보와 관련한 부서에서는 계획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보안팀과 청소, 민간위탁 등의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이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완화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국가인권위원회 HRIAM(2010) 참고).

‘사업’의 인권영향평가는 예산이 수원시민의 인권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여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 예산과정은 이전투구(Muddling Through)라고 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거나, 서로 더 많은 예산을 추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재의 체계와 대응방안이 이를 효율적으로 다루는 데 유연한지, 이들의 의견이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는 지, 입장과 성과지표가 적절한지, 인권이 적절하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위 ‘조례·규칙’, ‘계획’, ‘사업’ 등 인권영향평가 대상정책은 사실상 수원시 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취지와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 정책을 행정 전반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대상 정책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도 기준으로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이 133건,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가 126건,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규칙이 27건,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 1건,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이 1,666건 등 총 1,973건에 이른다. 특히, 대상 정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인데,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의 단위사업은 범위가 넓고 광범위하여 평가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실제 평가대상은 단위사업의 하위 항목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단위사업이 1,666건일 경우 세부사업은 거의 10,000건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부사업을

대상 정책으로 적절히 선택함과 동시에 인권영향평가가 불필요한 세부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4-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 현황

(단위 : 건)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정책		2014	2015	2016	총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조례	79	139	126	344
	규칙	25	31	27	83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0	0	1	1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117	134	133	38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1,521	1,912	1,686	5,119
총		1,742	2,216	1,973	5,931

자료: 수원시 내부자료.

둘째, 인권영향평가 절차의 간소화 및 정형화가 필요하다.

인권영향평가가 행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또 다른 요식행위로 전락할 경우 행정의 불필요한 낭비 및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절차 및 정형화된 양식에 따른 평가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대상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수원시 핵심사업, 시장 공약사업, 사회적 약자 관련 부서 및 과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부서의 사업, 계획,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고, 이를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조례를 개정하여 대상 정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

‘정책’ 만 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인권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범위를 위 <표 4-4>에서 제시한 4가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대상 정책을 특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절차, 시기, 주체, 내용, 경과규정, 인권영향평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에 관해서도 조례에 규정하여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실질적인 구속력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심의·의결 전이나 해당 계획의 확정 전,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이다. 이는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에 관한 토론이 공론화되기 전에, 정책이 집행되기 전에 시행해야 한다(오스트리아국제개발재단(ÖFSE), 2013).

사전 인권영향평가가 원칙이기는 하나 대상 정책의 특성상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근거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4-6> 참조).

<표 4-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시기

- 
- (1)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 해당 계획의 확정 전
  - (3)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 ⇒ 해당 계획의 확정 전
  - (4)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

※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수원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지방의회 제출 전으로 규정하였으나, 수원시 의회 심의 단계에서 정정될 수 있으므로, 인권센터에서 검토의견서 작성 시 수원시 담당부서와 수원시 의회 간 긴밀히 협조하여 조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반영과 점검표와 검토의견서를 주고받는 과정에 있어서 인권을 지향하는 직장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HRIAM, 국가인권위원회(2010)). 단위사업(세출예산)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매일의 행정업무에서 인권적인 지향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한 의식제고도 필요하다(HRIAM, 국가인권위원회(2010) 참고).

<표 4-7>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16.2.5.]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93호, 2016.2.5., 일부개정]

제8조(인권영향평가)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집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수원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 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침해 진정사건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4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시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의 인권 상담·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담당부서

인권영향평가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도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제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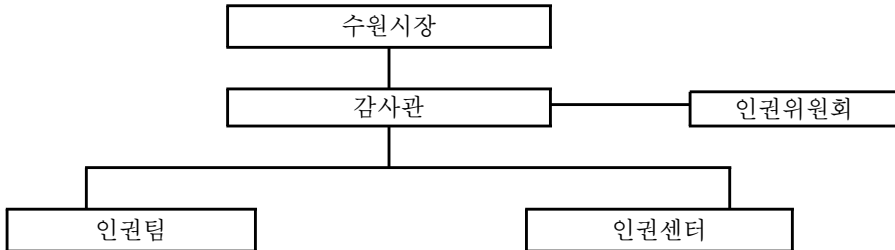
현재 수원시에는 감사관 산하에 인권팀과 인권센터가 있고, 인권팀에는 팀장 포함 3명의 공무원이 있으며, 인권센터에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 및 주무관 1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표 4-8> 참조). 수원시는 인권팀과 인권센터와는 별도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3조에 근거한 인권위원회가 있어서 인권과 관련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연 4회의 정기회의와 수시로 진행되는 임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6년 인권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는 8회이다.

수원시 인권팀은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 증진활동,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 인권증진TF팀 운영, 인권증진프로그램, 인권공모전 등을 수행한다. 인권센터는 현재 인권관련 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상담·조사·권고, 성희롱고충상담, 청년 인권보호, 인권실태조사, 인권보장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수원시청 홈페이지, 2017).

인권영향평가가 인권행정의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인권 전문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때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같은 행정 내부 공무원인 인권팀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권센터에서 인권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전문가의 채용 및 인력 확보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표 4-8> 수원시 인권관련 조직 및 인력

구분	인력 수(명)	구성원
감사관	1명	
인권팀	3명	팀장 1, 주무관 2
인권센터	4명	시민인권보호관 3, 주무관 1



### 제3절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절차(조례·규칙, 계획, 사업)

담당부서가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를 작성하면, 인권센터에서는 이를 검수해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한다. 인권센터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검토의견과 개선안을 작성한다. 주무부서에서는 수용, 부분수용, 컨설팅 필요, 수용거부로 작성해서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컨설팅 필요는 인권센터의 검토의견과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사실의 확인과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수용하거나 컨설팅 과정에서 수용할 경우 절차는 종료된다.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주무부서에 보내고, 주무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부서의견서를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 보낸다(〈표 4-9〉 참조).

앞선 〈표 4-7〉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수원시에는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회의) ④에 따르면 인권센터의 인권 상담·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소위원회를 둘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인권영향평가 관련 소위원회는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제18조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에 따라 조례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인권영향평가는 1차적으로 인권센터에서 담당하고, 2차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인권위원회는 인원이 많아 회의 소집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전문성을 기해야 하므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단,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전체 인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전체 인권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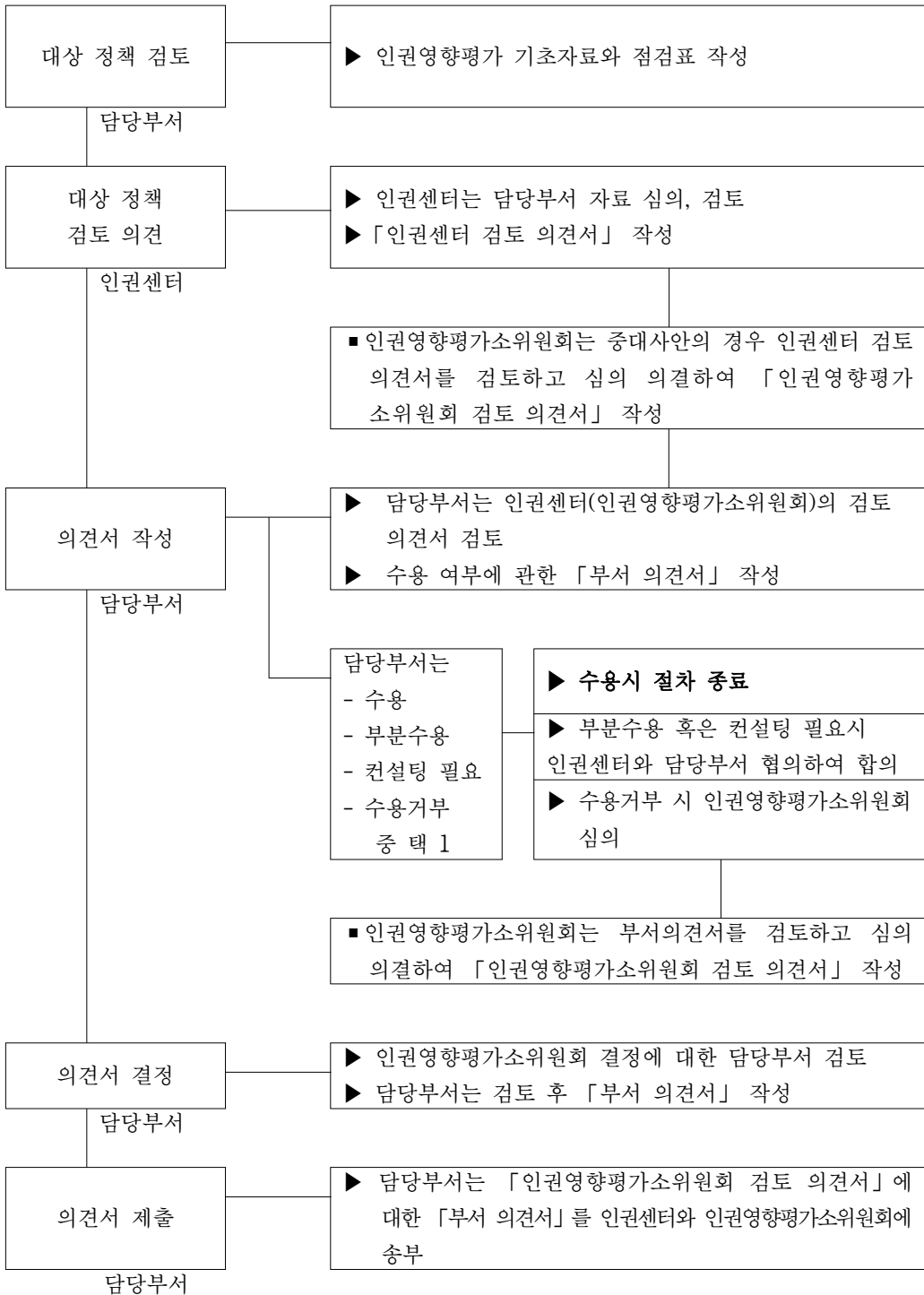
한편, 인권센터는 1차 평가과정에서 대상 정책이 시민들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상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외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중대사안의 경우에는 즉시 대상 정책을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표 4-9>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순서도

발신지	단계	내용	수신지
담당부서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와 「점검표」 작성 제출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와 「점검표」를 작성하고, 필수·기타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인권센터에 평가의뢰
⇓	⇓	⇓	⇓
인권센터 (1차)	대상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 작성	인권센터에서는 담당부서의 기초자료와 점검표를 토대로 「검토 의견서」 작성	「검토 의견서」를 담당부서에 송부
⇓	⇓	⇓	⇓
담당부서	담당부서는 인권센터의 「검토 의견서」를 검토하여, 인권센터 결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	담당부서는 「부서 의견서」 작성	「부서 의견서」를 인권센터에 송부
⇓	<b>담당부서가 인권센터 검토 의견 수용 시 절차 종료</b>	⇓	⇓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2차)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중대사안의 경우 및 담당부서가 인권센터의 검토 의견서 수용거부 시 「인권센터 검토 의견서」와 「부서 의견서」를 검토하고 심의 의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심의 의결로 「검토 의견서」 작성	「검토 의견서」를 인권센터와 담당부서에 송부
⇓	⇓	⇓	⇓
담당부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 의견서」를 검토하고,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결정의 수용 여부를 결정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 수용 여부를 보고하고,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결정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서」 제출	부서의 의견을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 송부

위의 순서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인권영향평가자료를 토대로 감사나 예결산,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절차도

##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설명

###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구성

점검표는 제·개정 조례·규칙, 계획, 사업의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서는 이를 확인해서 검토의견과 개선안을 작성하며, 주무부서에서는 수용, 부분수용, 컨설팅 필요, 불수용으로 작성해서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컨설팅 필요는 인권센터의 검토의견과 개선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사실의 확인과 정확한 이해와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수용하거나 컨설팅 과정에서 수용할 경우 절차는 종료된다.

수용을 거부할 경우,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주무부서에 보내고, 주무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부서의견서를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 보낸다.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부서의견서와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가 보낸 검토의견서, 참고자료 등을 수원시의회에 보고한다.

수원시의회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나 예결산,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정보공개법에 의거 인터넷에 공고하여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부서와 인권센터 및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가 주고받은 점검표, 부서의견서, 검토의견서 등 인권영향평가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대장을 마련하여 각 각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유관기관과 시민단체 및 시민이 원할 경우 공개해야 한다.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가 주무부서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주무부서가 인권 혹은 인권과 관련된 인권사항,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과 개선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수원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스스로 상대방의 입장과 수원시민들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컨설팅 과정에서는 생산적인 과정이 되도록 주무부서가 요청 시, 인권센터가 응하는 상담개념이 아니라, 인권센터가 주무부서와 직접 협업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 이해해야 한다. 컨설팅의 핵심은 컨설팅 요청 기관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외부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에 있다.

##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정당성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정당성은 오스트리아 국제개발재단 연구소(Austrian Research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ÖFSE, 2013)를 참고하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서 인권에 대한 제안을 강화할 수 있다.

주무부서의 점검표는 선택형으로 만들고, 인권센터의 점검표를 주무부서의 점검표와 달리 개방형으로 만든 것은 자발적 프레임워크에 따른 불만사항처리가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일관성 있는 방법론의 부족과 제한적 이해관계자의 선택, 중요한 인권이슈를 다루지 않고 다른 것들도 오직 부분적으로만 다루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ÖFSE, 2013).

실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사용할 때는 다양한 인권영향의 유형에 균형 잡힌 전체적인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ÖFSE, 2013). 검토의견과 개선안은 시간에 따른 변화나 트렌드의 측정, 또는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S.M.A.R.T.(Specific, Measurable, Attainable, Relevant, and, Time-framed) 원칙에 따라서 되도록 특정하고, 측정할 수 있고, 달성가능하고, 관련되어 있고, 시간프레임이 되어 있는 지표와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6).

그런데, S.M.A.R.T.의 S를 중요한 주제나 단순한 언어와 표현으로(Significant or Simple), A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달성가능하거나, 행동지향적인(Acceptable, Achievable or Action-Oriented), R은 현실적이고, 결과지향적인(Realistic or Result-oriented), T를 시간에 한계되어 있는 대신에 추적할 수 있는(찾아낼 수 있는)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정한 맥락에서 SMART가 지표들을 정의하기 위한 원칙이 아니라 SMART 목표들을 정의하기 위한 원칙이다(ITAD,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재인용,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와 점검표의 효율성은 이들이 참여과정의 결과와 또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상호적으로 동의된 정도에 의존한다(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6, (Danida: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Thematic Review of Partnership, Final Report, Danish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penhagen, 2005 재인용)).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와 점검표에서 무엇이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성공적이라고 의미되는지, 정의된 품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6)에 대한 수원시 공무원과 조직,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사이의 공식, 비공식적인 원활한 협업과 상호이해협상이 중요하다.

점검표에서 인권센터의 검토의견과 개선안은 오스트리아 국제개발을 위한 연구재단에 따르면, 지속가능성평가(SIA)는 ‘가난’이나 ‘평등’ 과 같은 지표개발에서 모호한 의미를 사용해서 이들 개념들의 다른 이해에 기반해서 다른 지표를 구성하는 리스크가 있다고 했다

(ÖFSE, 2013, (Walker 2009, The Future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Trade Agreements. School of Human Rights Research Series, Volume 35, Antwerp/Oxford/Portland OR. 재인용)). 따라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언어사용에 있어서 이를 확립하기 위한 “인권을 위한 언어” (가칭)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무부서가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자체점검표의 평가항목에서 “관련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의 예와 아니오로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권센터에서 해당 조례와 규칙에 대한 검토 의견과 개선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해당된다.

세계은행과 노르딕트러스트펀드(The World Bank & Commissioned by the Nordic Trust Fund, 2013)를 참고하면,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평가자는 점검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법적, 규제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평가맥락을 식별해야 한다. 이 단계 동안 평가의 외부조건이 설립되는데 이를 준비과정이라고 하며, 심사는 측정과 활동의 범위를 줄이는 것과 관련된다. 특정한 평가초점을 보장하도록 돕는데, 계획된 정책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활동에서 정확한 인권주체들을 식별하는 데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권규범, 표준과 관련해서 제안된 정책의 잠재적 영향에서 수집된 정보분석 또는 정부의 법적 의무를 존중하는 관련된 개입이 인권을 보호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

인권영향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국가인권위원회 2014)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고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계획할 때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누가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와 도움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계획의 안을 세운 후, 인권영향평가를 하면서 점검표를 사용하여 계획에 대한 불만과 기대사항, 욕구를 담아내어 수정 및 보완하는 기제로 사용해야 한다.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검토의견서에 있어서 평가의 범위와 의도치 않은 결과, 미래예측, 고유동향을 담아내도록 해야 한다. 불리하고 취약한 집단과 이들의 생활여건과 계획에의 반영률, 참여율, 계획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개선될 지에 관해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사업 인권영향평가에 있어서는 인권영향 및 관리에 관한 지침(HRIAM, 국가인권위원회, 2014)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와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서에 있어서 상호 거부감이 없어야 한다. 세출예산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 시간계획에 인권에 관한 핵심성과지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래서 매년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해관계자가 세출예산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에서 과거 제기했던 불만이나 걱정,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의 진전, 새로운 수요, 경향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환경과 정책활동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무엇이 바람직하게 진보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인권영향평가를 보고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인권영향평가의 해당 주무부서의 점검표와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서에 대한 외부의 확인이나 검증, 사후평가를 위한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재참여도 진실된 신뢰성을 축적해내는 데 중요하다. 제시된 문제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어떻게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했는지, 어떤 정책대응방안으로 특정한 이슈를 다루었는지, 어떤 조치들을 취했는지가 재평가에 포함된다. 물론 이들이 비판적이거나 불만이나 불평을 나타냈다고 할지라도, 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는 것은 인권영향평가를 다음단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 조례·규칙

####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의 정책수립 및 시행 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인권을 반영한 정책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자체 점검이 필요하며, 이는 인권침해 방지 의무부터 준수까지 인권 전반이 고려된 항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조례·규칙의 기본사항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질문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침해구제 유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시민참여, 인권증진 의무 등과 관련된 점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4-10>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조례·규칙명	수원시 ○○○○○○ ○○ 조례(규칙)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관련 법적근거 (관련법령)				
조례안 제·개정 일정 (예정)	조례안 예고	0000. 00. 00. ~ 0000. 00. 00.(11일간 예정) 매체 : 공보(시보), 기타(시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0000년 0월 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자료	제·개정 관련 내부 참고자료 등		

평가항목	질문	응답	비고
① 인권침해	관련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침해구제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참여권	제·개정의 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④ 인권증진	제·개정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작성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작성취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에 의거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원시 조례·규칙 제·개정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임.

**작성요령**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4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4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는 기업, 정부 등 다양하게 수행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는 해당 부서에 의한 자체평가와 인권센터 및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 의해 수행된다. 특히 인권영향평가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인권센터에서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원시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 인권전문 부서인 인권센터에서 해당 조항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인권영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조항을 명시하고, 그 조항의 인권 측면을 반영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까지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4-1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감사관 인권센터	직위			
		성명			
해 당 조 항	검 토 의 견		개 선 안		
	별지 참조				

###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인권센터의 자치법규 검토는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검토하므로, 해당 자치법규 관련 부서는 수원시 인권 전문 부서인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용 여부는 수용과 부분수용, 컨설팅 필요, 불수용 등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부서의견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이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필요 항목을 선택한다.

<표 4-1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용 여부	부서 의견	비고
수원시 ○○○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조 제○항의 개정안에 관하여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당초 개정안 제○조 제○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성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	
작성 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인권영향평가의 주체 중 자체평가는 수원시 인권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외부 전문가 평가는 인권 부서 공무원과 인권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원시의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내부 전문가와 인권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인권영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조항을 명시하고, 그 조항의 인권측면을 반영한 검토의견을 작성한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4-1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담 당 부 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평 가 담 당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인권위원장 000			
해 당 조 항	검 토 의 견		개 선 안		
	별지 참조				

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자치법규 검토는 인권영향평가의 개념을 적용하여 검토하므로, 해당 자치법규 관련 부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자치법규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수용 여부는 수용과 부분수용, 불수용 등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 여부에 대한 근거가 부서의견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경우 이미 인권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용여부와는 다른 컨설팅 필요 항목은 제외한다.

<표 4-1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 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	수용 여부	부서 의견	비고
수원시 ○○○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조 제○항의 개정안에 관하여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당초 개정안 제○조 제○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성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	
작성 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 계획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조례 및 규칙뿐만 아니라 계획에서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원시의 계획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계획수립과 관련된 기본 사항인 법적근거, 일정, 목적 및 목표, 예산 외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수원시 계획 수립 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인권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표 4-1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b>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b>				
계획명				
신규수립	0000년 0월 0일	재수립( )차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법적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성명	직급	전화번호
	관련기관			
계획수립 일정	관련기관 협의	~	( 일간)	
	계획안 준비	~	( 일간)	
계획의 목적과 목표	※ 계획의 목적과 목표, 세부목표, 연차목표 등을 기술			
계획의 예산	※ 계획의 예상기간과 전체예산을 기술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첨부자료	계획(안), 요약서 및 관련자료			
<p>※ 컨설팅 필요시 인권센터에서 인권컨설팅</p> <p>※ 작성취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원시 계획 수립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임.</p>				

##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수원시는 계획 수립 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권침해 가능성 예측 및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는 정책과정에 있어 수원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성하므로, 수원시민의 권리에 기반하여 점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민의 인권침해, 시민참여, 문화 다양성의 정책 반영 및 포용성, 인권침해 구제, 인권증진 기여 등의 항목을 통해 계획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점검한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전체 인구 125만 명 중 외국인 주민은 약 5만 명에 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증가비율은 2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원시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원시 계획 수립 시 포용적인 다문화정책을 포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

<표 4-1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평가항목	질문	응답		비고
① 인권침해	계획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② 참여권	계획과정에서 시민은 물론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③ 문화권	계획이 인종, 종교, 언어 등 문화다양성을 존중하여 포용성과 개방성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④ 침해구제	계획에서 예상되는 문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계획에 있어서 인권침해사항을 사전, 사후적으로 구제,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⑤ 인권증진	계획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작성취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에 의거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원시 조례·규칙 제·개정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임.

**작성요령**

가. 정책의 계획 수립 전 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교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교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인권센터는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토의견서는 불리하고 취약한 집단과 이들의 생활여건과 계획에의 반영률, 참여율, 계획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개선될 지에 관해서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평가의 범위와 의도치 않은 결과, 미래예측, 고유동향 등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 반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표 4-17〉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계획명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감사관 인권센터	직위			
		성명			
인권센터 검토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인권센터 검토 의견 반영결과 제출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반영결과 제출기한	년    월    일	
비 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인권센터는 인권전문가인 인권보호관을 통해 수원시 계획에 대해 주무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를 검토함으로써 주무부서의 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인권센터의 검토의견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은 인권전문가의 시각에서 수원시 계획에 인권적인 측면만 검토하므로,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에 대해 주무부서는 인권센터의 의견을 계획에 수립할 경우, 수용 및 부분수용을 선택하며, 현실적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거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필요 등으로 구분하여 부서의견을 결정한다. 특히 부서의견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서의견을 첨부한다.

<표 4-18>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계 획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원시 계획이 수원시민의 인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그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자문기관이므로, 인권센터와는 달리 주무부서의 검토의견 반영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

〈표 4-19〉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계 획 명					
담 당 부 서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관련기관				
평 가 담 당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위원장 000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비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수원시 계획에 대해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계획 수립 시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은 외부 인권전문가의 시각과 수원시 전문행정가의 시각이 함께 반영되므로, 인권전문가로만 구성된 인권센터의 검토의견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에 대해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의견을 계획에 수립할 경우, 수용 및 부분수용을 선택하며, 현실적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수용 등으로 구분하여 부서의견을 결정한다. 특히 부서의견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서의견을 첨부한다.

<표 4-20>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계	획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 사업

##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사업의 인권영향평가 역시 수원시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원시의 사업 수립 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수립과 관련된 기본사항인 법적근거, 일정, 목적 및 목표, 예산 외 인권침해 발생가능성을 검토한다. 특히 사업의 경우 세출예산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 시간계획에 인권에 관한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이를 통해 수원시 단위사업 수립 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측하여 인권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표 4-2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사업명				
신규수립	0000년 0월 0일	재수립( )차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법적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관련기관	성명	전화번호	
사업 일정				
사업의 목적과 목표	※ 사업의 목적과 목표, 세부목표, 연차목표 등을 기술			
소요 예산	※ 사업의 예상기간과 전체예산을 기술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첨부자료	사업계획(안), 요약서 및 관련자료			
※ 작성취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원시 사업 시행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임.				

## 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수원시는 사업 수립 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인권침해가능성을 예측하여, 인권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는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 수원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작성하므로, 수원시민의 권리에 기반하여 점검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시민의 인권침해, 시민 참여, 문화적 건강성, 인권침해 구제, 인권증진 기여 등의 항목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점검한다.

<표 4-22>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평가항목	질문	응답		비고
① 인권침해	사업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② 참여권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③ 문화권	사업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④ 침해구제	사업이 물질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으로 건강합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⑤ 인권증진	사업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을 사전, 사후적으로 구제,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업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작성요령**

가. 사업의 계획 수립 전 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 에 “○”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 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람,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사업의 인권영향평가 목적은 수원시의 정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문제 예방이다. 따라서 인권센터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한 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확인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토의견서는 수원시 조례에 따라 수원시의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원시 사업이 인권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또한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 반영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표 4-23>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감사관 인권센터	직위			
		성명			
인권센터 검토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인권센터 검토 의견 반영결과 제출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반영결과 제출기한	년    월    일	
비 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인권센터의 역할은 인권전문가인 인권보호관을 통해 수원시 정책에 대해 주무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인권영향평가를 검토함으로써 수립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주무부서는 인권센터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인권센터의 검토의견은 인권전문가의 시각에서 수원시가 수립한 사업에 대해 인권과 관련된 영향력 측면을 중심으로 검토를 수행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담당부서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의견으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주무부서는 인권센터의 의견을 계획에 수립할 경우, 수용 및 부분수용을 선택하며, 현실적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거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필요 등으로 구분하여 부서의견을 결정한다. 특히 부서의견의 부연설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서의견을 첨부한다.

<표 4-24>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사 업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수원시가 수립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수원시가 수립한 사업이 수원시민의 인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그에 따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자문 기관이므로, 수원시 조례에 따라 인권센터와는 달리 주무부서의 검토의견 반영 여부를 명시하지 않는다.

〈표 4-25〉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사 업 명					
담 당 부 서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관련기관				
평 가 담 당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위원장 000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비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는 내부 공무원과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되어 수원시가 수립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은 외부 인권전문가와 수원시 내부 전문행정가의 의견이 함께 반영되므로, 인권전문가로만 구성된 인권센터의 검토의견과 다른 시각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수렴할 경우, 수용 및 부분수용을 선택하며, 현실적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수용 등으로 구분하여 부서의견을 결정한다. 특히 부서의견을 결정할 경우, 그에 따른 근거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서의견에 대한 부연설명을 한다.

<표 4-26>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사 업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제5장 수원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 제1절 공공건축물의 적용범위

수원시 관내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건축기본법」에 공공건축의 정의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법령을 근거로 하여 자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 1. 공공건축의 정의와 용도

##### 1) 공공건축의 정의

‘공공건축(公共建築)’은 그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공공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공공건축<sup>3)</sup>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법적인 정의는 차이가 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공공건축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란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sup>4)</sup>,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같은 조항의 제5호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3)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2011),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공공건축은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로 공익성과 공용성을 갖는다. 관공서와 같은 공공기관 외에 민영에 의해 조성 및 운영되기도 한다.

4)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건축’의 정의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하는 것을 말하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외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공간환경(公共環境)’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하고, ‘공공공간(公共空間)’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라고 위의 법 같은 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즉, 관계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sup>5)</sup>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각 조례에 공공건축의 정의를 별도 규정하기도 하며, 주로 소유 및 조성주체를 기준으로 하나 사용주체나 건립목적에 따라 정의를 내리는 일부 사례<sup>6)</sup>도 있다.

그 외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법적인 규정과 일반적인 개념의 차이로 인한 혼란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또는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출입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다수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건축물’을 공공건축의 최소범위로 정의하고 있다.<sup>7)</sup>

## 2) 공공건축의 용도

건축물은 필요성과 목적에 의하여 주택·상업시설·산업시설 등으로 그 용도를 분류할 수 있으며, 다음의 <표 5-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건축법」 제2조에서 28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 
- 5) 이규철 외(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8.
- 6)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2조,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공공도서관·공연장·전시장·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 7) 이규철 외(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3.



〈표 5-1〉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구분	세부용도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소매점, 휴게 음식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종교집회장, 일반음식점 등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 등
종교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
운동시설	탁장, 체육도장, 운동장 등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위락(慰樂)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공장	
창고시설	창고, 하역장, 집배송 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등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등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등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자료: 「건축법」 제2조제2항.

공공건축의 용도에 대한 별도의 법률상 분류는 없으나, ‘효율적인 도시기능 발휘와 공공의 편의를 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에 공공건축이 포함된다.’<sup>8)</sup>고 볼 수

있다.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포함된다.

## 2. 수원시의 공공건축

### 1) 공공건축물의 정의와 분류

수원시는 공공건축물과 관련하여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도시현황을 적용하여 공공공간·공공건축물·공공시설물·공공매체·옥외광고물의 5개 영역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건축물은 ‘공중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공공기관, 의료·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건축물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 분류에 대한 세부적인 시설의 내용은 <표 5-2>와 같다.

---

8) 이규철 외(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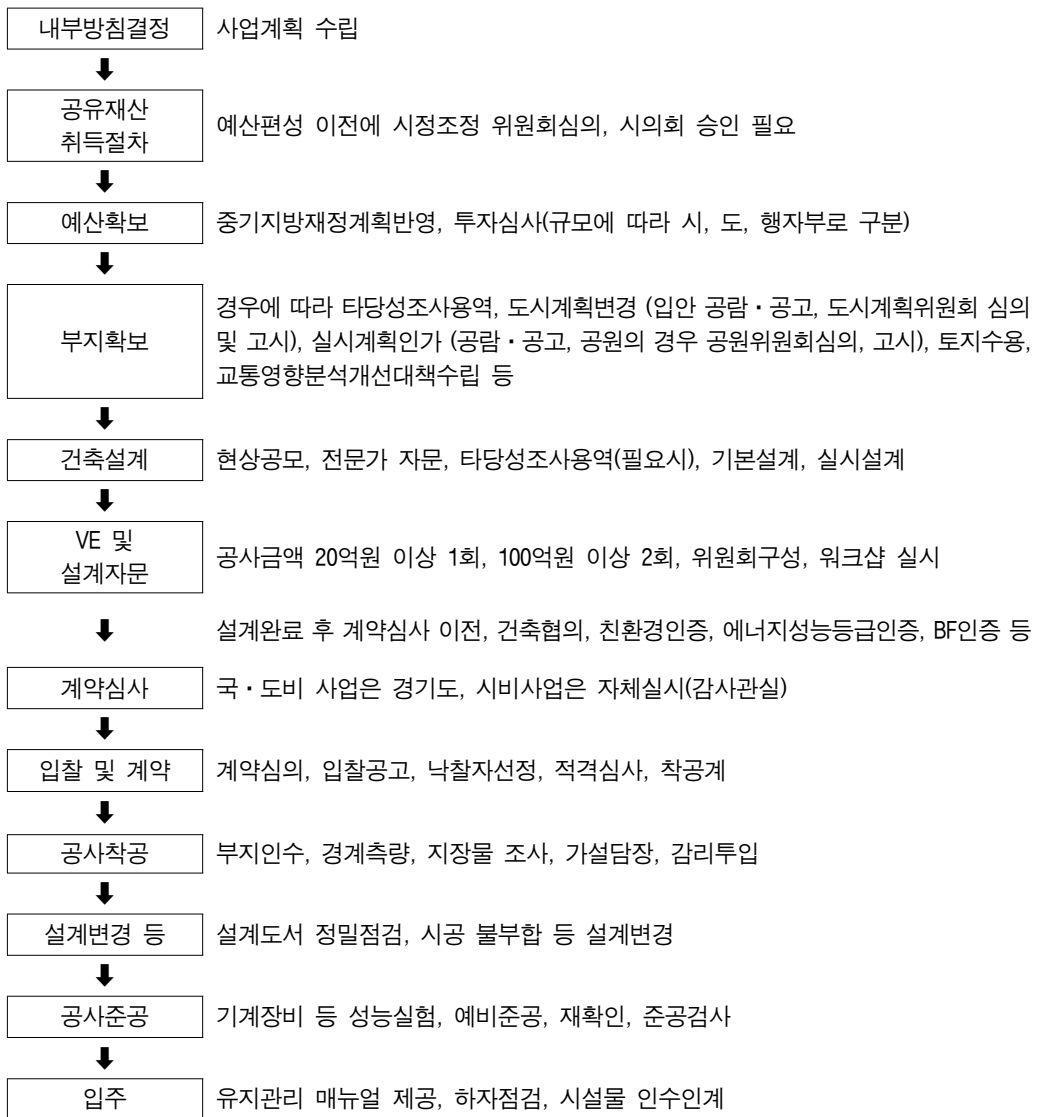
〈표 5-2〉 공공건축물의 분류와 세부시설

분류	세부시설	정의
행정 및 공공기관 건축물	시·구청사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경찰서	지역의 치안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된 행정기관
	소방서	화재 예방과 진압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관
	우체국	우편 등의 업무, 즉 편지나 전보 및 소포 등을 모아 배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행정기관
	주민센터	동 단위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부가적으로 문화 및 복지 기능을 지원)
의료 및 복지건축물	병원 및 보건소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켜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보육 관련)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되는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노인 관련)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되는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장애인 관련)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되는 시설
교육 건축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시설
	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관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
문화 및 체육건축물	공연장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박물관, 미술관, 전시장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체육시설	각종 운동경기가 실시되는 종합적 시설을 갖춘 건축물

자료: 수원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원시청.

## 2) 공공건축물 건립절차

수원시는 설계기간, 공사기간, 용도별 공사비 산정, 건축물 설계표준, 건축과정, 단계별 추진절차 등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한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 (2015)’ 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절차는 <그림 5-1>과 같다. 또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외부경관과 유형별 공간계획에 대한 원칙 및 방향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수원시(2015),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 수원시청.

<그림 5-1> 수원시 공공건축물 건립절차

### 3.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공공건축의 적용범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법적인 정의와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공공건축의 정의에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공공기관이 일반 시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건축·조성하는 건축물이라고 종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공공건축물 범위는 공공기관

이라는 조성주체와 이용주체인 시민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소유주와 운영주체, 건축물 조성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된다. <표 5-3>과 같이 건축물의 소유주와 운영주체, 건축물 조성방식에 따라 적용범위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고,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1단계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소유 및 운영의 신축 공공 건축물에 적용한다.

향후, 증축·재개축·대수선과 민간이 소유 및 운영하는 공공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확대적용해 나가는 것을 제안한다.

<표 5-3> 수원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 적용범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조성 주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											
이용 주체	시민,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한 일반인 대상											
소유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운영 주체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건축	신축	증축	재·개축	대수선	신축	증축	재·개축	대수선	신축	증축	재·개축	대수선

## 제2절 인권과 공공건축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제반 규정

### 1.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2013년에 제정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6조에서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건립·운영하는 공공건축물도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인권과 공공건축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인권과 공공건축에 관한 법령

#### 1) 공간환경 및 인권 관련 법령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인권’에 관한 규정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별도의 법령은 없다.

건강권·교육권·문화권·보행권·소통 및 참여권·안전권·접근권·정보접근권·평등권·프라이버시권·환경권·휴식권 등의 인권과 관련하여 공간환경에 관한 내용이 일부 명시된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은 다음의 <표 5-4>와 같다.

<표 5-4> 공간환경 및 인권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구분	명칭	내용
법령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사회적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관련하여 인증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안전성, 편리성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노인복지법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국민의 복리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관련 기본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고,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민의 생명권, 보호받을 권리 등과 관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음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 보호와 안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정비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물 안전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아동복지법	아동의 복지 보장을 위한 법으로 아동복지시설의 공공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는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건물, 공원 등의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자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주거기본법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 내용을 규정함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에 의해 설치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을 규정함
	환경영향평가법	환경권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자체, 사업자의 정책 및 사업 수립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함
행정 규칙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시의 안전영향평가기관, 제출도서, 평가절차 및 검토항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권 등과 연관됨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건축법」의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설계기준을 정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의 사항을 정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한 기존 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 안전시설 및 교통정보센터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규정됨
	녹색건축 인증 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녹색건축 인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도시철도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철도 정거장의 계획 및 설계 지침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법」에 근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함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어린이놀이시설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인증 관련 제반 사항을 규정함
	토양환경평가지침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제정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토양환경평가의 세부사항을 정함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설계기법 제시
	환경친화적 철도건설 지침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을 위한 철도노선 선정방안과 적용방안 및 공사 중 환경관리 방안 제시
기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메뉴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위의 법령과 행정규칙은 인권을 고려한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공간환경과 관련된 사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인권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 시행되고 있다.

## 2) 공공건축과 관련된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공공건축물의 정의를 규정한 것 외에는 공공건축과 관련한 별도의 법령은 없으며,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그 외 국토교통부 등이 고시한 공공건축 등에 대한 행정규칙과 공공공간에 해당되는 도시공원·녹지 관련 기타지침 등이 있다.



〈표 5-5〉 공공건축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과 기타 지침

구분	명칭	내용
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계획과 사업 추진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함
행정 규칙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건축사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품질 보장을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디자인 기준안 제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통합적인 경관 형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 제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한 설계공모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건축관련 통합기준	「건축법」에 의한 건축업무 과정에서 참고할 건축 관련 기준을 고시
	등산로 주변 공공디자인 개발 매뉴얼	전국 등산로 주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화·체계화된 디자인 기준 개발을 위한 규정집
	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	문화재의 보존·활용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설치의 원칙과 기준 제시
기타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

### 3. 인권과 공공건축에 관한 자치법규

수원시에 적용되는 자치법규는 수원시 외에도 수원시의 상위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치법규를 찾아볼 수 있으며,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 1) 공간환경 및 인권 관련 자치법규

건강권·교육권·문화권·보행권·소통 및 참여권·안전권·접근권·정보접근권·평등권·프라이버시권·환경권·휴식권 등의 인권과 공간환경이 관련된 경기도와 수원시의 자치법규는 다음의 〈표 5-6〉과 같다.

<표 5-6> 공간환경 및 인권 관련 자치법규

구분	명칭	내용
경 기 도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의 가족친화 환경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련 사항을 명시함
	경기도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경기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 계획과 광역이동지원센터 등의 내용을 규정함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안전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내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 관련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경기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인증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과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토록 함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관련하여 보행환경 조성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함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 기여를 위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함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 조례	차별없이 이용 가능한 공공공간 등의 조성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계획,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경기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의 향상을 통하여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경기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공공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건축물의 인증 취득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점검대상,	

		점검시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시설의 기능, 적용범위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센터 설치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운영 조례	친환경교통개선지구의 지정과 활성화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환경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을 포함한 환경보전시책 관련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수원시	수원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수원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 수립과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기본원칙으로 함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에 관한 생활환경 편의 증진 관련 사항을 포함함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수원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확충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권과 이동권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노후주택에 한정됨
	수원시 문화도시 조례	사람중심적인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보행권과 관련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의 권리 존중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성 기준과 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원칙 등을 명시함
	수원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조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기반 시설과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평가항목과 개선책 수립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함
	수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설치 지도, 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
기타 지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공평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공공 디자인 사업 등에 대한 사용자 중심의 현황진단 및 방향설정과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

## 2) 공공건축과 관련된 자치법규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공공시설, 공공공간 등에 대한 다양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 관점에서 공공건축의 기본원칙과 방향성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디자인의 일관성과 도시이미지 질적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5-7> 공공건축 관련 자치법규 및 기타 지침

구분	명칭	내용	
자치 법규	경 기 도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 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 시설공사와 타 건설공사의 분리 발주를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함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경기도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경기도 공공시설물의 우수 디자인 인증 조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우수 디자인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경기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련된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도민의 사용편의 등을 위해 경기도의회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위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수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도로안전시설과 관련하여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공원 적용허가 등의 시행 관련 규정을 명시함	
	수원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녹화계획, 옥상녹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어린이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사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노인전문요양원 등 수원시 사회복지 시설의 시설관리 등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함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수원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용허가, 사용 제한, 시설물 설치 등의 사항을 규정함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수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 실시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기타 지침	경기도	경기도 건축디자인기준	경기도 내 건축·도시환경 조성과정을 위한 업무지침과 체계적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 시설물, 공공정보매체의 디자인,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의 세부설계지침
	수원시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도시경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 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 등을 제시함
		수원시 시설공사 건립 가이드라인	수원시 내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시공 기간, 공사비,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함

### 제3절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수원시 현황과 서울시 성북구 사례

#### 1.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현황

수원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13.07.31.에 제정된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14조(구성)를 근거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인권위는 인권기본조례 제13조2항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을 두고 있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인권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는데<sup>9)</sup>, 2016.09.06.에 수원시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인권영향평가단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인권위 산하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영향평가 기능을 두었다.

위원회의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 시민3명, 수원시의회 의장 추천 2명, 시민단체 추천 3명, 인권 관련 전문가 3명, 그 외 인권증진의 소양이 있는 3명, 인권팀장 1명(간사)으로 되었다. 이중 건축전문가는 부재한 실정으로, 인권영향평가 대상의 주를 이루는 공공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건축적 관점에서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평가대상은 3단계로 나누어 평가대상을 시범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으로 선별·확대할 방침이다. 2014년 이후 인권친화적 자치법규의 정비를 꾀하였다면, 1단계(2017년)는 정책 정립과 공공건축물의 평가, 2단계(2018년)는 도로·공원 등의 평가, 3단계(2019년)는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까지 수원시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했던 건축물은 화성행궁(2016), 수원시청사(2016),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2017), 제19대 대선투표소(2017)가 있다.

수원시는 효율적인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 2017년 2월 수원시 인권위원, 인권센터 담당자, 관련 시 산하기관 전문가 등이 일본 오사카, 고베를 방문하여 인권건축물에 대한 정책연수를 실시하였다.

#### 1) 화성행궁

수원시 인권위는 2016년 수원화성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화성행궁을 찾는 인권약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하기 위해 화성행궁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2016.08.23, 인권위 9명, 시민감사관 1명, 장애인 기술지원센터 1명, 관계공무원 6명, 총17명이 수행했다.

9)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18조(회의)4항,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인권센터의 인권 상담·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보장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평가단은 이동이 불편한 인권약자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 매표소 신설, 보행유도목재 교체, 통행로 경사로 교체 및 설치, 난간이나 안전 울타리 보수, 문지방 낮춤, 장애인 외국인을 위한 문자 음성 안내, 근무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제안했다.<sup>10)</sup> 하지만, 화성행궁은 문화재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인권침해 요인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였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림 5-2> 수원화성 인권영향평가

## 2)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2017.03.08. 인권위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개선사항으로 주출입 진입로 차량 회차 공간이 부족, 주출입구 승하차시 눈비 피할 수 있는 캐노피 구조물 설치, 휠체어 이동이 용이한 아스콘 포장, 미끄러운 경사로 바닥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그림 5-3>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영향평가

10) 경기신문, 2016.08.25일자 10면 기사

### 3) 투표소

수원시는 2017. 4. 5.부터 4. 17.까지 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여 수원시 전체 투표소 287개소 중,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관공서 학교 등을 제외하고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설치된 투표소 20개소(사전투표소 포함)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자로 수원시 인권센터, 인권팀, 인권위원회, 수원장애인유권자연대 소속 장애인 등 12명을 인권영향평가단으로 구성하였다. 평가항목은 ①투표소 접근성(도보 또는 대중교통 이용 등) : 근처 정류장에서의 접근성, 투표소까지의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② 투표소 입구 : 경사로 설치, 장애물 유무, 출입문 휠체어 통과 가능여부, ③ 투표소 건물 내 : 투표소까지의 복도 폭, 승강기 설치 여부, 장애인 전용 화장실 구비(접근, 사용 용이성)로 구성하였다.

평가결과, ① 투표소 접근성 : 통행에 불편을 주는 배수로나 턱이 있는 곳에는 고무매트나 나무판을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② 투표소 입구 : 건물 입구에도 턱이 있어 휠체어 접근이 곤란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곳도 매트나 나무판을 이용해 경사로를 설치하였다. ③ 투표소 건물 내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으며, 있다하더라도 입구의 폭이 좁아 불편한 곳도 있었다.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이 어려운 투표소는 선관위에 투표소 변경을 요청하거나, 모든 투표소에 자원봉사자 2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였다.

〈표 5-8〉 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투표소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등)	근처 정류장에서의 접근성		필요없음 □ (아파트단지)
	투표소 설치장소까지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보도 턱 등 장애물 여부		
	출입문이 휠체어 등이 지나기에 적합한지 여부 ★전동휠체어 적합 규격 (폭1.8m x 깊이2.0m 유효 폭 0.85m)		
투표소 건물 내	투표소까지 복도 등이 이동에 적합한지 여부		폭 cm
	승강기 설치여부		필요없음 □ (1층)
	장애인 전용화장실 (접근 및 사용의 용이성)		폭 cm
전체 평가			





〈그림 5-4〉 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 4) 일본 정책연수

수원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본격적인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앞서 인권 개념 및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완벽하게 설계·건축된 일본의 공공건축물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정책연수를 2017. 2. 19.부터 2. 21.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사카이, 오사카, 고베 등으로 다녀왔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위원, 인권센터 담당자, 시정연구원, 장애인유권자 연대 등 관련 전문가 15명이 연수에 참가하였다.

연수단은 전관 평면설계로 무장벽의 시설을 갖춘 ‘마이시마 장애인스포츠허브’, 장애인 완전참가와 평등을 실현한 ‘빅-아이 국제장애인교류센터’,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구현을 위한 고베 ‘행복촌’ 등을 방문하였다. 위 연수과정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일본의 공공건축물을 통해 수원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인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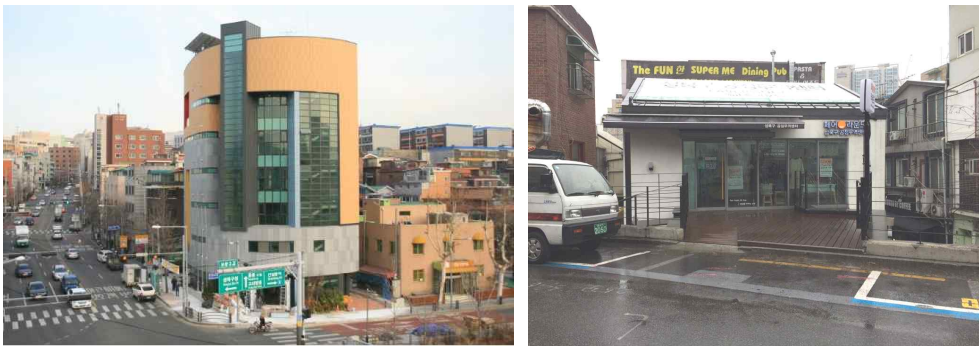


〈그림 5-5〉 일본 벤치마킹

## 2. 서울시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사례

서울시 성북구는 2012년에 안암동 주민센터<sup>11)</sup>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 최초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 개념을 적용한 공공청사를 건립했다.

이후, 안암동 주민센터의 사례를 바탕으로 2015년부터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여 성북구 관내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12월까지 ‘정릉 청소년 문화의 집’, ‘성북구 공정무역 전시판매장<sup>12)</sup>’,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등의 설계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자료(좌): 성북구청(2015),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성북구청.

<그림 5-6> 안암동 주민센터(좌)와 성북구 공정무역 전시판매장(우)

### 1) 안암동 주민센터

안암동 주민센터는 1977년에 건립되었으나, 청사의 노후화와 안전문제, 자치회관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신축 건립을 추진하여 2015년에 완공하였다.

<표 5-9> 안암동 주민센터 건축현황

구분	내용	비고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2가 140, 140-4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철도(저축)	
대지면적	954.60㎡	
규모	지하1층, 지상6층	
건축면적	561.90㎡ (주민센터 291.00㎡ + 어린이집 270.90㎡ )	

11) 안암동 인권청사

12) 2017년 3월 기준,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완공된 유일한 건축물이며 위탁 운영 중

연 면 적	지상	2,007.07㎡ (주민센터 1,437.40㎡ + 어린이집 569.67㎡ )	
	지하	271.57㎡ (주민센터 148.46㎡ + 어린이집 123.11㎡ )	
	합계	2,278.64㎡ (지상연면적 2,007.07㎡ + 지하연면적 271.57㎡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1,885.67㎡ (주민센터 1,344.92㎡ + 어린이집 540.75㎡ )	지상주차장, 옥탑층 면적은 용적률과 주차대수 산정에서 제외	
건폐율	58.86%	법정 60%	
용적률	197.54%	법정 200% (최대 1,909.20㎡ )	
주차대수 산출용 면적	1,493.38㎡	지상층 주차장 제외한 면적	
주차 대수	법정	7.47대	연면적 200㎡ 당 1대
	계획	7대	장애인주차 1대 포함
조경면적		법정면적: 954.6㎡ X 15% = 143.19㎡ 이상 (대지면적의 15%)	연면적 2,000㎡ 이상의 대지 대지면적(487.16㎡)의 15% 이상
		계획면적: 160.98㎡ (16.98%)	
층별 용도	지하1층	창고, 기계실	
	지상1층	주차장, 방풍실, 주민커뮤니티센터, 아이돌봄방, 화 장실	
	지상2층	민원실, 방재실, 통신실, 모빌렉실, 화장실	
	지상3층	동장실, 동대장실, 동대본부, 문고(인권도서관), 화장실	
	지상4층	문화센터, 강의실(다목적실), 상담실(회의실), 화장실	
	지상5층	힐링센터(헬스장), 샤워실(파우더, 사우나), 화장실	
지상6층	강당, 창고, 조리실, 휴게데크, 화장실		
승강기	승용 승강기: 1대(15인승)	장애인 검용	
정화조 용량	220인용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설계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성북구인권감리단		
소요예산	5,489백만원		

자료: 성북구청(2015),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성북구청.

### (1) 건립과정

청사 신축 초기단계부터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을 제시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건립과정의

전반에 공무원,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립추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인권감리단, 명예공사 감독관을 운영했다. 설계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주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주민의견이 설계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경기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고, 5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 인권영향평가를 반영한 수차례의 설계변경을 통해 설계를 완료했다. 인권감리단은 시공과정 중에 필요한 감리를 수행하며 인권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표 5-10> 안암동 주민센터 건립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구분	구성	역할
건립추진위원회	구의원,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등 총 24인	설계·시공·준공·집기 구매의 전 과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설문조사 진행
설계자문위원회	건축계획(서울시 공공건축가 포함 2명), 실내건축(1명), 건축구조(1명), 기계설비(1명), 전기·통신(1명), 인권위원(2명), 해당 동 구의원 및 자치위원 등(4명), 당연직(3명)의 총 15인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자문
인권감리단	이경선(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윤하(건축사사무소 노드들 대표) 전인호(반디불 환경연구소) 정선애(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신두식(중앙대학교 건축설계이론연구실)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하고자 설계안에 대한 자문과 관계부서와의 협의 진행
명예공사 감독관	주민자치위원장, 건설 관계자 2인	시공단계에서의 주민의견 반영 및 공사 감독

자료: 성북구청(2015),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성북구청.

## (2) 인권영향평가

성북구청은 안암동 주민센터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설계의 전 과정에 대한 모든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기본설계지침을 작성하였으며, 인권적 건축설계지침의 개념, 인권원칙 등을 설정했다.

안암동 주민센터의 인권적 지향점은 다음의 5가지로 설정하였다.<sup>13)</sup> 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② 민주적 의사결정, ③ 모든 이용자가 기본적 권리를 존중받고,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④ 인권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 ⑤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한 계획이었다. 설계경기를 위한 건축 설계지침의 작성방향은 다음의 <표 5-11>과 같다.

13) 성북구청(2015), 안암동 인권청사 백서, 성북구청

〈표 5-11〉 안암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경기 지침의 작성 방향

분류	주요내용	세부내용
건축물 조성과정에서의 인권 고려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의 영향 고려	인근 거주민, 주변 시설 이용자의 거주권, 환경권, 안전권, 보행권 등
	건축물 기획과정에서 이용자의 참여 권장	운영시설(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안, 공간구성의 규모 및 방식 등
	건축물 시공 시 인권을 고려한 공사 진행 고려	작업자 근로시간, 인권적 작업환경 등
건축물 이용에서의 고려	인권을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이용	이용자가 원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 결정에의 참여
		공간 구성의 규모와 방식의 적절성
		이용가능성과 안전성
	창조적 사용자로서 권리침해 없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틀의 제공	
인권을 고려한 상세 디자인 계획	인권취약계층의 권리 존중	
모든 이용자의 이용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건축물 완공 후 관리에서의 인권 고려	인권 수요 증진과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건축물 관리 방안 고려	
개방적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제시	기능적 영역이 아닌 인권에 입각한 권리 공간으로 분류	

자료: 이윤하(2016),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자료집, 수원시청.

이 밖에 설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을 〈표 5-1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5-12〉 기본설계안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

분류	세부내용
인권 개념에 대한 고려	1. 사업 진행 시 이용자의 구성과 의견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졌는가?
	2. 사업 진행 시 접근권, 안전권, 환경권, 문화권, 건강권, 교육권, 소통권, 참여권, 휴식권, 프라이버시권 등 잠재적 권리를 포함한 이용자의 다양한 인권의 종류가 고려되었는가?
	3. 사업 진행 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일상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함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고려하였는가?
건축공간환경의 조성에 대한 이용자의 참여권리 존중	4. 공간의 용도, 공간의 구성 및 배치, 도입 시설, 운영 프로그램의 계획과 결정 등 건축물 조성 과정에서 다양한 이용자와 인권 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였는가?
주변환경에의 영향	5. 거주민, 주변 시설 이용자의 거주권, 환경권, 안전권, 보행권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의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가?

완공된 건축물의 이용	6. 이용자가 시설과 프로그램에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7. 이용자가 시설과 프로그램을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한가?
	8. 조성된 건축 공간환경에 대한 이용자의 능동적 사용이 고려되었는가?
상세 건축요소 및 시설기준에 대한 고려	9. 이용자의 경제, 사회, 문화적 다양성이 고려되었는가?
	10.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고려하였는가?
기타 고려사항	1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시설의 계획을 고려하였는가?
	12. 여성 활동 제한 및 차별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성평등 원칙의 구현을 고려하였는가?
기타 고려사항	13.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시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작업자의 인권을 고려한 사업의 진행에 대하여 고려하였는가?
	14. 향후 인권수요의 변화 및 증진에 대비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

자료: 이윤하(2016),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자료집, 수원시청.

안암동 주민센터 이후의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했다. 적용대상은 성북구의 예산을 활용하여 신축·증축·개보수하는 건축물이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00㎡ 미만 건축물에도 선택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해당부서 담당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의 협의로 진행되며, 그 처리과정은 다음의 <표 5-13>과 같다.

<표 5-13>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절차

처리 부서	주관부서		인권센터			주관부서	건축과	
	공공건축물 건립계획 수립	사업시행의뢰		평가계획 수립 통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
처리 내용		건축물 건립	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결과 검토	인권영향평가 결과 회신	
업무 흐름	-	주관부서 → 건축과	주관부서 → 인권센터	인권센터 → 주관부서, 건축과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주관부서, 건축과	인권센터 → 주관부서, 건축과	건축과 협의	건축과 → 인권센터
평가결과 피드백 후 건립 단계별 지속 평가								

자료: 김정아, 2016,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행사례, 인권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시행5주년 워크숍 자료집, 성북구청.

## 2) 정릉 청소년 문화의 집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첫 사례이며,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다. 성북구의 부족한 아동·청소년 시설을 확충하고자 201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한 설계지침서 작성 등 인권영향평가가 수반된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설계 공모전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설계 공모 이후에 신축 계획에 대한 설계내용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sup>14)</sup> 해당분야 부서의 추천을 통해 선정한 인권영향평가단(1인), 청소년시설 전문가(1인), 공공건축가(2인)와 성북구 건축심의위원(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 공모 응모작을 심사했다.

<표 5-14> 정릉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 개요

분류	내용	비고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1031-2, 3	
대지면적	1,527㎡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450㎡	
주요시설	동아리활동실, 청소년카페, 헬스장, 음악연습실 등	
사업기간	2014.08-2016.09	2017.03 기준 공사 진행 중

## 3)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설계공모의 심사과정에서 건축물의 인권 반영 여부를 점수로 체계화하여 적용한 첫 사례로, 배치계획(20점), 공간계획(30점),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25점), 기술계획(15점)의 평가와 함께 인권 및 공공성 증대 계획에 10점을 배점한다.

설계심사위원은 인권영향평가단(1인), 공공건축가(3인), 성북구 건축심의위원(2인)으로 구성된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설계경기지침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모든 시설을 사회적 약자가 사용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건축물로 계획하도록 한다.

14) 성별영향평가는 2015년 2월에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당선작을 선정된 뒤, 같은 해 9월 주민설명회를 진행함.

〈표 5-1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사업 개요

분류	내용	비고
위치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8-8	
대지면적	4,143.5㎡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865㎡	
주요시설	수영장, 도서관,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장 등	
사업기간	-	2017.03 기준 실시설계 진행 중

### 3. 서울시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성북구는 관내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인권감리 및 공공건축 전문가와 인권센터장으로 구성된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을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인권영향평가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연임이 가능하다. 2017년 3월 현재 인권영향평가단은 5인으로 구성되고, 당연직(1인)을 제외한 4인은 건축 관련 전문가이며, 그 중 2인은 안암동 주민센터의 건립과정에 참여한 바 있고 지자체의 인권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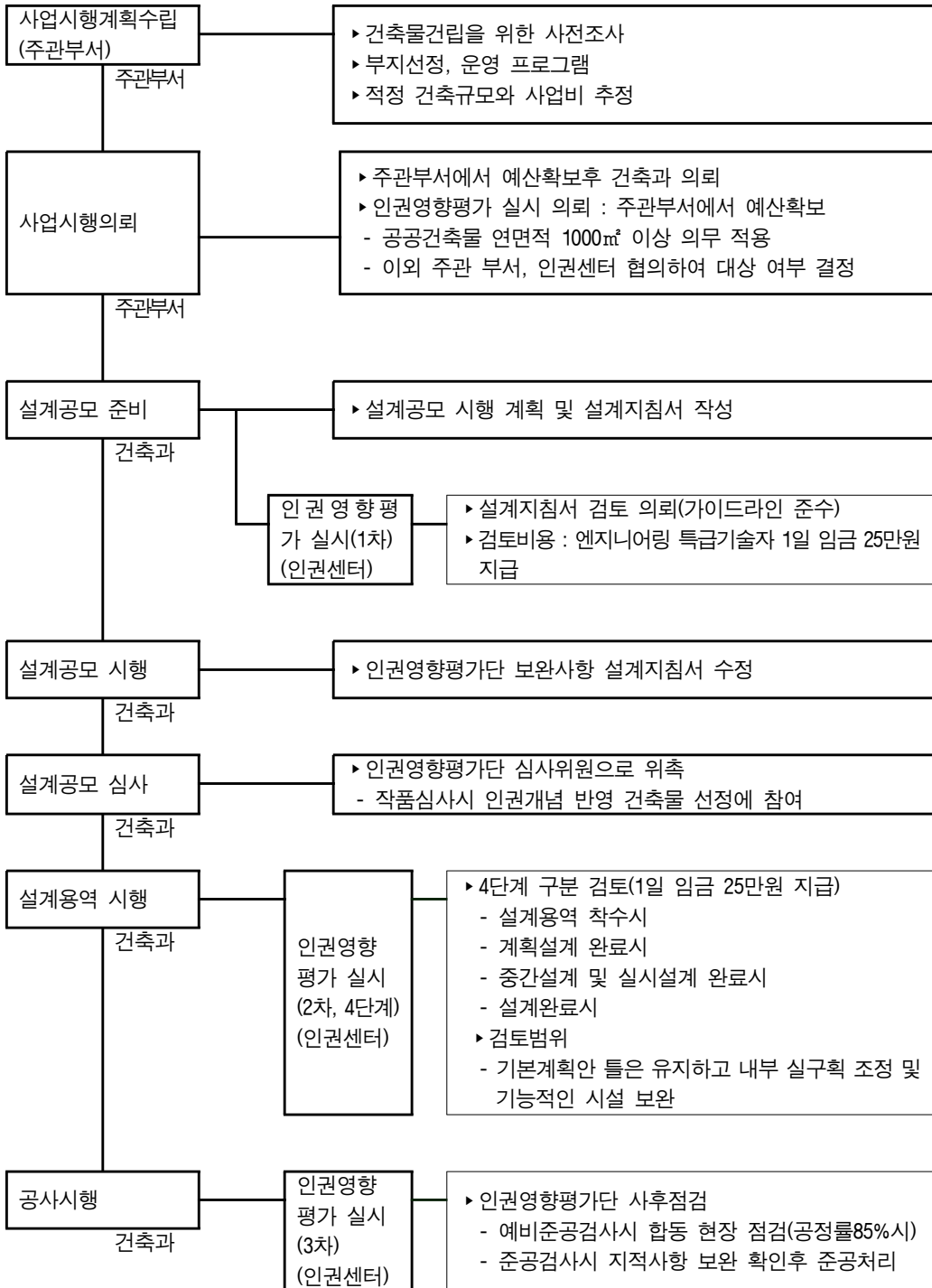
인권영향평가단은 건축물의 건립 단계별로 건축물의 용도와 이용자 특성에 맞는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요소를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각각의 건축물에 주어진 조건 및 상황, 프로그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평가단에서 참고하고 있는 별도의 평가기준과 가이드라인 등은 없는 상황이다.

자문회의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자의 의도 및 표현의 자유, 인권 등을 충분히 이해·반영하기 위해 일반적인 평가가 아닌 대화·토론식의 협의과정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는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관점 측면에 집중하며, 시설 평가보다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BF인증 등의 시설적인 사항은 평가단의 평가 전에 미리 검토·확인하기 때문에 평가단에서 관여하지는 않으나, 각 건축물의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건축물 설계자와의 토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평가이행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 등은 없다. 인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항목을 분류하여 점수를 주는 평가방식은 적합하지 않다.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단의 인권영향평가는 다음의 〈그림 5-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차에 걸쳐서 시행되며, 각 시행과정에서의 단계별 참여와 설계지침서 및 설계공모 심사를 고려하면 총 7회에 걸친 참여가 이루어진다. 설계공모 전에는 설계



지침서를 검토하여 인권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설계공모 심사에는 인권영향평가단의 1인이 심사위원에 위촉되어 심사에 참여한다. 설계용역 과정에서는 용역착수시, 기본설계완료시, 실시설계 단계, 실시설계 완료시 총 4차례의 인권영향평가가 진행되며, 인권과 관련하여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다. 공사시행 시에는 공사단계와 완료 후에 현장점검을 하여 인권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를 확인한 뒤 준공 승인을 한다.



자료: 수원시(2016),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자료집, 수원시청.

<그림 5-7> 성북구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 제4절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

### 1. 가이드라인의 구성과 내용

건축물의 특성, 프로그램, 위치 등에 따라 이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각 건축물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고려 사항은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이라는 명칭으로 다음의 <표 5-16>에서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용대상 및 준수대상, 용어정의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건립 시에 고려해야 할 인권 관련 내용은 공공건축 건립 절차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수원시 관내 모든 공공건축물에 해당되나 신축 공공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특성 등 사업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의 기준을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기본인권원칙은 공공건축물은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포용과 차별, 다양성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고, 공공건축물은 시민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

공공건축물 건립 절차에 따른 인권 고려 사항은 크게 기획·설계·시공·이용·유지관리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으며, 설계는 다시 공간계획·상세 건축요소 및 시설기준·시민참여로 구분된다.

<표 5-16>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안)

1. 본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 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인권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원시 관내 모든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 적용한다. 단,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협의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본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설계자, 시공자, 운영·관리자, 시민 등 해당 공공건축물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4. 개별건축물의 세부적인 인권 지침 내용은 각 건축물의 특성·용도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반영토록 한다.

5.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이용자’ 는 건축물의 운영·관리자와 시민, 공무원, 설계자 및 시공사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하며, ‘인권취약계층’ 이란 사회적 약자(노약자·아동·여성·장애인·청소년 등)와 소수자(난민·북한이탈주민·성소수자·외국인·이주민 등) 등 경제적·문화적·신체적·정신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기본 인권 원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문화·사회·신체·환경 등을 고려한 포괄적 포용과 비차별</li> <li>2. 시민의 참여 및 소통과 역량 강화</li> <li>3. 이용자의 다양성 존중</li> </ol>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건축물의 건립 시에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에 따라서 각 공정별로 인권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li> <li>2.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의 전 과정에 걸쳐 근로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사업과 관련된 이용자의 다양한 인권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한다.</li> <li>3. 시민과 주변 시설 이용자의 거주권·환경권·안전권·보행권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의 조성 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li>4. 공청회나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li> <li>5. 향후 인권수요의 변화 및 증진에 대비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li> <li>6. 설계공모의 시행계획 및 설계지침서 작성, 설계공모의 심사 과정에는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li> <li>7. 설계공모시 건축물의 설계에 인권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사항을 평가항목 배점에 포함한다.</li> <li>8. 모든 사업과정에는 인권을 고려한 ‘공정계약서’ 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li> </ol>						
설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34 1078 308 1435">공간 계획</td> <td data-bbox="308 1078 1204 143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의 계획은 이용자의 건강권·교육권·문화권·보행권·소통 및 참여권·안전권·접근권·정보접근권·평등권·프라이버시권·환경권·휴식권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2. 설계자는 면적 등의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보호·충족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li> <li>3. 모든 이용자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li> <li>4. 모든 이용자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환경적 다양성을 고려한다.</li> <li>5. 획일적 형태, 과장된 디자인, 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과 재료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입면을 계획한다.</li> </ol> </td> </tr> <tr> <td data-bbox="234 1435 308 1715">상세 건축 요소 및 시설 기준</td> <td data-bbox="308 1435 1204 1715">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하여 인권 취약계층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과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한다.</li> <li>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와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의 기준을 따르되,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하여 적용대상과 세부적인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li> <li>3.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용자와 인권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li> </ol> </td> </tr> <tr> <td data-bbox="234 1715 308 1769">시민</td> <td data-bbox="308 1715 1204 1769">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사용계층과 인권취약계층 등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며, 이용자의 구성과 의견을</li> </ol> </td> </tr> </table>	공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의 계획은 이용자의 건강권·교육권·문화권·보행권·소통 및 참여권·안전권·접근권·정보접근권·평등권·프라이버시권·환경권·휴식권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2. 설계자는 면적 등의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보호·충족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li> <li>3. 모든 이용자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li> <li>4. 모든 이용자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환경적 다양성을 고려한다.</li> <li>5. 획일적 형태, 과장된 디자인, 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과 재료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입면을 계획한다.</li> </ol>	상세 건축 요소 및 시설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하여 인권 취약계층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과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한다.</li> <li>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와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의 기준을 따르되,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하여 적용대상과 세부적인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li> <li>3.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용자와 인권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li> </ol>	시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사용계층과 인권취약계층 등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며, 이용자의 구성과 의견을</li> </ol>
공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의 계획은 이용자의 건강권·교육권·문화권·보행권·소통 및 참여권·안전권·접근권·정보접근권·평등권·프라이버시권·환경권·휴식권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2. 설계자는 면적 등의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보호·충족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li> <li>3. 모든 이용자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li> <li>4. 모든 이용자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환경적 다양성을 고려한다.</li> <li>5. 획일적 형태, 과장된 디자인, 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과 재료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입면을 계획한다.</li> </ol>						
상세 건축 요소 및 시설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 하여 인권 취약계층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과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한다.</li> <li>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와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의 기준을 따르되,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하여 적용대상과 세부적인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li> <li>3.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용자와 인권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li> </ol>						
시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사용계층과 인권취약계층 등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며, 이용자의 구성과 의견을</li> </ol>						

	참여	<p>구체적으로 반영한다.</p> <p>2. 설계과정 또는 완료 시 공청회나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건축물의 공간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p> <p>3.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방안, 공간의 용도, 공간의 구성 규모 및 배치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이용자와 인권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한다.</p>
	시공	<p>4. 공사 진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및 근로자의 보행권·안전권·접근권·환경권·휴식권 등 다양한 인권을 고려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5. 공사 과정 중에는 이용자와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가 함께 직접 참여한 인권 감리를 최소 3회 이상 시행한다.</p> <p>6.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후에 준공을 승인한다.</p>
	이용 및 유지관리	<p>7. 이용자가 건축물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p> <p>8. 이용자가 건축물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해야 한다.</p> <p>9. 이용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p> <p>10. 시설 및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이용자가 직접 참여토록 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p> <p>11. 연 1차례 운영·관리자의 주도 하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표 작성 등을 통해 인권센터에서 지원·관리한다.</p>

기획과정의 ‘공정계약서’는 법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하며, 인권을 고려하여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계약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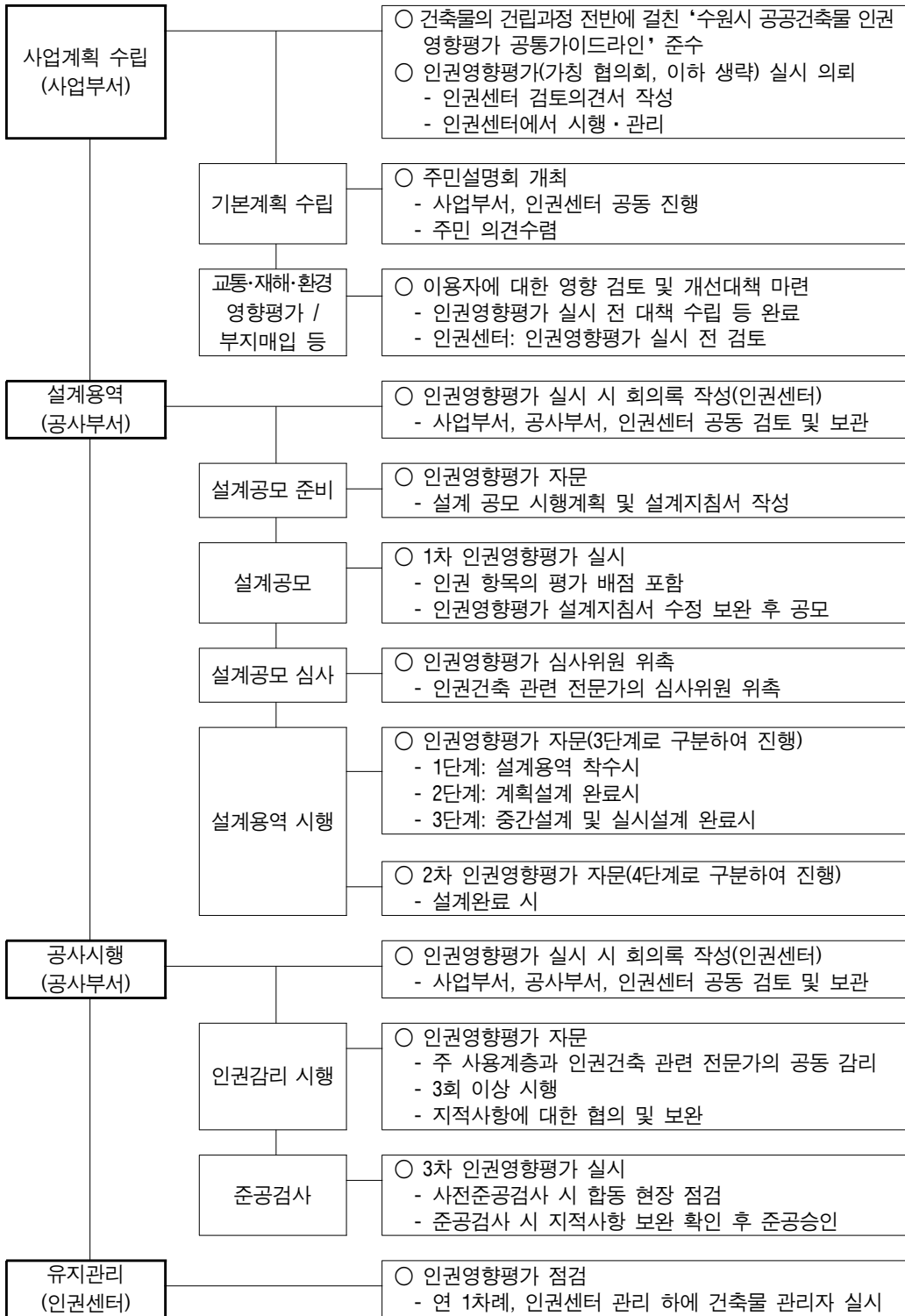
설계과정의 ‘상세 건축요소 및 시설기준’에서 명시한 적용대상은 수원시 관내 모든 공공건축에 해당되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F인증)’와 ‘녹색건축인증’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BF인증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3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

녹색건축인증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적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시행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과 함께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를 마련하여 <그림 5-8>에서 제시하고 있다.

시행절차의 사업계획과 설계 및 공사시행은 담당부서에서 주도하되, 인권영향평가와 유지관리 시의 인권 관련 점검 등의 사항은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8>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안)

## 2.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조직의 필요성

가이드라인의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역할과 시행절차의 설계용역 및 공사시행 단계에서 실시할 인권영향평가를 위하여 인권건축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sup>15)</sup>

인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는 평가보다는 토론과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실시할 조직은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역할은 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각 단계마다 1인 이상의 협의회 소속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인권센터 관계자와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 3. 용도별·단계적 접근

위 <표 5-2> 공공건축물의 분류와 세부시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은 용도별로 주민센터, 보육시설, 복지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각 공공건축물의 용도에 맞춰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감안한 인권지향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초기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용도별로 하나의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계획 수립시부터 완공시까지 전 과정에 참가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이어 다른 용도의 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용도별·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완료된 공공건축물은 같은 용도의 다른 공공건축물 건립시 모범

15) 이와 비슷한 조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단’ 이 있음. 안암동 인권청사 건립시, 평가단 이외에 다른 조직으로 다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 ① 평가단 : 인권개념에 부합한 내용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행을 위해 인권에 미칠 부정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안암동 인권청사 신축시 시행·평가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평가라는 단어는 평가하는 사람과 평가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 이미 인권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원시에서는 인권적 측면에서 평가단이라는 조직보다는 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 ② 감리단 : 건축 전문가 집단으로, 설계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시공자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조직
- ③ 운영지원단 : 공공청사 운영방안, 프로그램, 운영자 선정 등을 자문하는 전담조직
- ④ 주민자치회 : 전문가 집단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운영지원단에 요구

사례로 기능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레 인권영향평가제도의 확산 및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제6장 결론

### 제1절 연구요약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서 “시장은 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는 수원시의 어떤 정책이 수립 및 집행되었을 때 시민들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참고가 될 만한 유사영향평가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평가대상 정책과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절차, 평가시기를 개발하는 것에 있어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인권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문헌분석과 유사영향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였고,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로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추진방향 및 전략개발의 적실성을 제고했다. FGI 대상 전문가는 수원시인권위원회위원과 건축가들로 구성하고 인권영향평가 점검 및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전문가의견을 수집했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에 참고가 될 유사영향평가를 살펴본 결과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하여 평가목적, 평가유형, 평가시기, 평가주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를 살펴본 결과 서울 성북구 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 인권영향평가는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각 지자체 인권영향평가의 목적, 대상, 시기, 유형, 주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헌분석과 유사영향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의견조사(FGI)를 통해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의 대상과 시기, 인권영향평가의 주체와 절차, 인권영향평가 점검 양식,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먼저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는 시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및 규칙,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시 또는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지방재정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으로 하였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시기는 조례 및 규칙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전, 계획의 경우는 해당 계획의 확정 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으로 하였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은 조례·규칙과 계획 및 사업별 진행하였다. 점검양식에는 담당부서의 자체점검표, 기초자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가 있고, 그와 함께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검토의견서가 있다. 이는 담당부서만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센터와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협업의 공간을 넓히고, 선택하기가 모호한 경우 판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공공기관에서 건립·운영하는 공공건축물도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의 건립 과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인권과 공공건축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구성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법적기반에 대한 틀을 제시하였다. 인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공건축물의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와 함께 토론과 협의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실시할 조직은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합하다.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역할은 협의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각 단계마다 1인 이상의 협의회 소속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회는 인권센터 관계자와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

## 제2절 정책제언

수원시가 인권친화적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제도가 문제없이 추진하는 것이 시작이면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이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시행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례 제8조에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을 ‘정책’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 4-4>에 제시한 조례 및 규칙, 계획, 사업 등 대상 정책을 확대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심의할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18조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에 따라 조례에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8조에는 인권영향평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및 담당조직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및 담당조직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둘째, 인권영향평가제도 담당조직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원시 내 인권관련 부서는 감사관 산하에 인권팀과 인권센터가 있으며, 인권팀에는 공무원이, 인권센터에는 시민인권 보호관주무관이 있다. 인권센터 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사이동이 없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 전문성도 인정되므로, 인권영향평가제도 전반을 인권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 신뢰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시범사업 선정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점차 시행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원시 핵심사업과 시장 공약사업, 그리고 사회적 약자 관련 부서 및 과거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부서의 사업, 계획, 세출예산에 대해서 우선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점차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 관련 담당부서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원시 인권친화적 정책 실현이 보다 공고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참고 문헌 |

### <국문자료>

#### 단행본

경기도청,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경기도청,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국가인권위원회(2011a), 인권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11b),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2016), 투명하고 공정한 자치입법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2016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평가 실무 가이드), 국민권익위원회

성북구청(2012), 안암동 인권청사백서, 성북구청

수원시청, 공공건축물 건립 가이드라인

수원시청,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이성훈 외(2명)(2014), 2014 한국인권도시백서, 광주발전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 외(2012),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성북구청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인권재단(2016), 기업인권영향평가 수행가이드, 한국인권재단

환경부(2009), 「환경영향평가법」 해설, 환경부

환경부(2016),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세상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부

#### 학술지논문

김근혜 외(1명)(2014),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과제: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pp.419-440

김기곤(2013), 인권영향평가제도의 이해와 정책적 수용 방안, 광주연구, 2013년(4), pp.49-66

김정아(2016),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사례, 인권도시 수원 구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자료집, pp.25-62

류춘호(2015), 지방정부 인권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인권영향평가제도, 2015 인권논문 수상집, pp.317-353

신두식(2013), 인권을 고려한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건축설계경기 지침을 준비하며, 시민과세

계 22, pp.240-260

이규철 외(3명)(2016), 공공건축의 정의와 유형연구: 현행 공공건축 관련 규정의 검토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발래(201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제도화에 관한 연구 : 인권증진기본계획과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9권 4호, pp.157-195

이시재(2002), 사회영향평가의 이론과 방법, 환경사회학연구 ECO, pp.106-132

이윤하(2016),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권도시 수원 구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자료집, pp.63-73

최유(2015),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입법평가연구 9호, pp.423-456

#### 학위논문

김홍완(2009), 도덕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인천

유해정(2009), 인권과 발전 HRBA 모델의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이육(2009), 국제인권협력체제 구성을 통한 북한인권문제 대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정명진(2012), 학교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경상남도

허은실(2010),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충청남도

#### 보고서

강성권 외(2인)(2013),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연구, 부산발전연구원

강현수 외(5인)(2012), 성북구 안암동 복합청사 신축 등 인권영향평가, 성북구청

김재철 외(8인)(2011), 광주인권도시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서울시 강동구(2016),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강동구

양혜원(2016), 2015년 문화영향평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2014),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여성부(2003),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수행절차 및 기준(지표)수립 방안 연구, 여성부

이성훈 외(5인)(2016), 지자체 인권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한국인권재단

이준일 외(4인)(2015), 경찰인권영향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 경찰청

정영선 외(3인)(2014), 인권과 지방자치 교재개발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종로구(2016),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용역 보고서, 종로구

한국장애인개발원(2012),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물편),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2016), 충청북도 인권증진 기본계획(2016~2020) 최종보고서, 충청북도

## 법령

광주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제4853호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광주광역시 조례 제3756호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14028호  
 군산시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1382호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문화기본법, 법률 제14203호  
 문화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41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1395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0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914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제13178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469호  
 아동복지법, 법률 제14224호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4444호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6770호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4232호

## 웹문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http://www.auri.re.kr>  
 광주광역시청(2017.02.28.),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  
 고, <http://www.gwangju.go.kr/contentsView.do?menuId=gwangju0310000000>  
 (2017. 05. 24일 검색)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http://www.npbc.or.kr>  
 녹색건축인증, <https://www.gbc.re.kr>  
 디자인 경기-경기도청, <http://design.gg.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성북구청(n.d.), 인권영향평가 설명자료, [http://www.seongbuk.go.kr/sb\\_new/sharewelfare\\_evaluation/aboutevaluation/aboutevaluation.jsp](http://www.seongbuk.go.kr/sb_new/sharewelfare_evaluation/aboutevaluation/aboutevaluation.jsp) (2017. 05. 24일 검색)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수원시청, <http://www.suwon.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bf.koddi.or.kr>

#### 기타

강현수(2013), 인권영향평가와 지방행정: 서울 성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도시포럼 발표문, pp.3-37

광주광역시(2017), 사람중심, 평등한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제 추진계획(안), 광주광역시

김정아(2016),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시행 제도, 2016 인권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시행5주년 워크숍, pp.7-41

김형원(2016), 인권의 제도화와 인권영향평가, 2016 인권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시행5주년 워크숍, pp.43-52

이정은(2016), 다른 영향평가와 비교 분석을 통한 인권영향평가의 의미, 2016 인권영향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시행5주년 워크숍, pp.53-56

#### <영문자료>

Baxewanos, F. & Werner, R., (2013)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s a New Tool for Development Policy? OFSE, Working Paper 37

Bonwitt, B., (2001) Improving Policy Instruments through Impact Assessment, Sigma Paper, No. 31, OECD, Paris

Burdge, R. & Vanclay, F., (1995) Social Impact Assessment: State of the Art,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Vanclay and Bronstein eds, Wiley and Sons

Corrigan, C., (2006)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ld Impact Statements in Ireland

Glasson, J., (2000) Socio-economic impacts 1: overview and economic impacts, in: Morris, P. and Therivel, R., (2000) (ed),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pon Press, London and New York

Hunt, P. & MacNaughton, G., (2006) Impact Assessments, Poverty and Human Rights: A Case



- Study Using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WHO and UNESCO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09) What is Impact Assessment?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 (2015) Social Impact Assessment: Guidance for Assessing and Managing the Social Impacts of Projects
- SOAS, University of London, (2016)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 The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and The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2010)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HRIAM)
- The World Bank & Commissioned by the Nordic Trust Fund, (2013)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Differences with other forms of Assessments and Relevance for Development
- UNPAN Centre for Good Governance, (2006) A Comprehensive Guide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 International Poverty Center, (2008) Poverty In Focus, PSIA Gauging Poverty Impacts
- Erik Andre Andersen & Hans-Otto Sano, (2006) Human Rights Indicators at Programme and Project Level, Guidelines for Defining Indicators Monitoring and Evaluation, 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A Guide to Biodiversity for the Private Sector,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
- IOE(Independent Office of Evaluation), (2013) IFAD's Supervision and Implementation Support Policy Corporate-Level Evaluation, IFAD
- UNISD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 World Bank(2003), A User's Guide to 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
- OECD, 2007. A Practical Guide to Ex Ante Poverty Impact Assessment.
- Abrahams, Desiree and Wyss, Yann. (2010) Guide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nd Management (HRIAM).
- Robb, C. M., (2003). Poverty and Social Impact Analysis Linking Macroeconomic Policies to Poverty Outcomes: Summary of Early Experienc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Kanbur, R., (2001). Growth and Trade: The Last Redoubt? Mimeo, Cornell University, December 2001.
- NomaGaia, (2010), Methodology fo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 | 부 록 |

## 1.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자체점검표

조례·규칙명		수원시 ○○○○○○ ○○ 조례(규칙)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관련 법적근거 (관련법령)			
조례안 제·개정 일정 (예정)	조례안 예고	0000. 00. 00. ~ 0000. 00. 00.(11일간 예정) 매체 : 공보(시보), 기타(시 홈페이지)	
	조례·규칙 심 의 회	0000년 0월 예정	
첨부자료	필수자료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기타자료	제·개정 관련 내부 참고자료 등	

평가항목	질문	응답	비고
① 인권침해	관련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침해구제	제·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참여권	제·개정의 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④ 인권증진	제·개정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작성자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 작성취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에 의거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원시 조례·규칙 제·개정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임.

## 작성요령

- 가. 제·개정되는 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4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4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 번호	
평가담당	감사관 인권센터	직위				
		성명				
해 당 조 항	검 토 의 건			개 선 안		
	별지 참조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 치 법 규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용 여부	부서 의견	비고
<p>수원시 ○○○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p>	<p>제○조 제○항의 개정안에 관하여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p>	<p><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수용</p>	<p>당초 개정안 제○조 제○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성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p>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자 치 법 규 명					
담 당 부 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평 가 담 당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인권위원장 000			
해 당 조 항	검 토 의 견			개 선 안	
	별지 참조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조례·규칙)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 의견서

자 치 법 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	수용 여부	부서 의견	비고
수원시 ○○○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조 제○항의 개정안에 관하여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별 할당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당초 개정안 제○조 제○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균형적인 양성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성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여 수정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계획명				
신규수립	0000년 0월 0일	재수립( )차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법적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련기관			
계획수립 일정	관련기관 협의	~	(    일간)	
	계획안 준비	~	(    일간)	
계획의 목적과 목표	※ 계획의 목적과 목표, 세부목표, 연차목표 등을 기술			
계획의 예산	※ 계획의 예상기간과 전체예산을 기술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첨부자료	계획(안), 요약서 및 관련자료			

**※ 컨설팅 필요시 인권센터에서 인권컨설팅**

※ 작성취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원시 사업 시행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기초자료임.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평가항목	질문	응답	비고
① 인권침해	계획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참여권	계획과정에서 시민은 물론 직·간접적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참여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문화권	계획이 인종, 종교, 언어 등 문화다양성을 존중하여 포용성과 개방성을 정책에 반영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④ 침해구제	계획에서 예상되는 문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계획에 있어서 인권침해사항을 사전, 사후적으로 구제,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⑤ 인권증진	계획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작성취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에 의거 수원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원시 조례·규칙 제·개정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임.

## 작성요령

- 가. 정책의 계획 수립 전 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 응답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5개의 인권영향평가 세부 평가항목에 '예'로 체크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그 외,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 비고란에 기재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을 시 자료명 기재 바랍니다.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계획명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감사관 인권센터	직위			
		성명			
인권센터 검토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인권센터 검토 의견 반영결과 제출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반영결과 제출기한	년    월    일	
비 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계 획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계 획 명					
담 당 부 서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관련기관				
평 가 담 당	수원시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인권위원장 000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비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계획)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계 획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기초자료 작성표

사업명					
신규수립	0000년 0월 0일	재수립( )차	0000년 0월 0일 ~ 0000년 0월 0일		
법적근거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관련기관				
사업 일정					
사업의 목적과 목표	※ 사업의 목적과 목표, 세부목표, 연차목표 등을 기술				
소요 예산	※ 사업의 예상기간과 전체예산을 기술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르겠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첨부자료	사업계획(안), 요약서 및 관련자료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담당부서 자체점검표

평가항목	질문	응답		비고
① 인권침해	사업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① 인권침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참여권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② 참여권	사업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문화권	사업이 물질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으로 건강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④ 침해구제	사업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 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④ 침해구제	사업시행과정에서 인권침해사항을 사전, 사후적으로 구제, 치유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⑤ 인권증진	사업이 시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평가담당	감사관 인권센터	직위			
		성명			
인권센터 검토결과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인권센터 검토 의견 반영결과 제출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반영결과 제출기한	년    월    일		
비 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센터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의견서

사 업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센터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필요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서

사 업 명					
담 당 부 서	담당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관련기관				
평 가 담 당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인권위원장 000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특이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개선 필요				
검토의견					
비고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원시 인권영향평가(사업) 인권영향평가소위원회 검토의견에  
대한 부서 의견서

사 업 명					
담 당 부 서	담 당 자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검토의견					
수 용 여 부	<input type="checkbox"/> 수용 <input type="checkbox"/> 부분수용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부 서 의 견	※ 필요시 별지첨부 가능				

## 2.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안)과 시행절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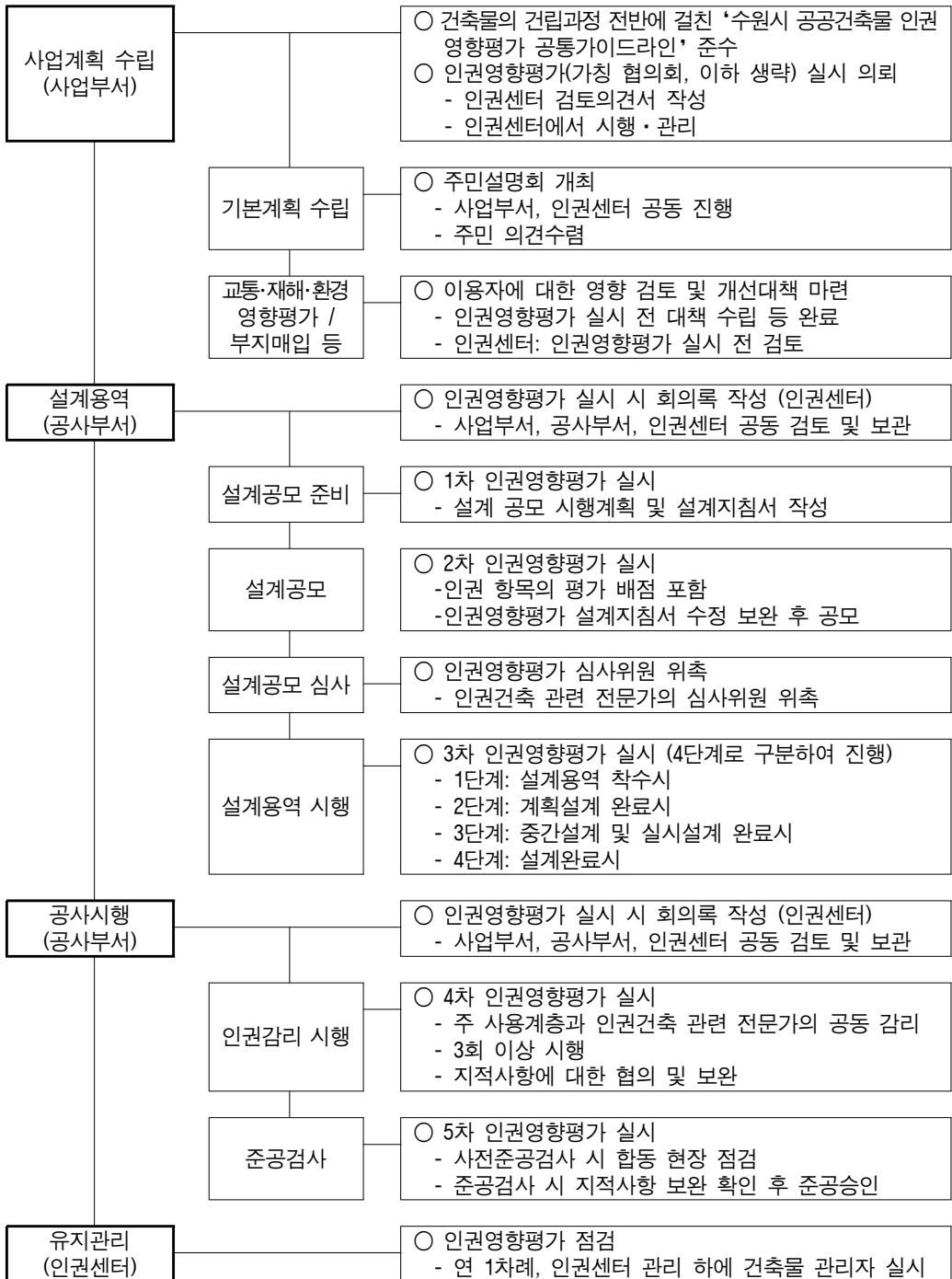
###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안)

1. 본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기본가이드라인’ 은 「수원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인권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2. 본 가이드라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원시 관내 모든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 전 과정에 적용한다. 단,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협의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본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설계자, 시공자, 운영·관리자, 시민 등 해당 공공건축물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가 준수하여야 한다.
4. 개별건축물의 세부적인 인권 지침 내용은 각 건축물의 특성·용도 등을 반영하여 별도의 설계지침을 작성하여 반영토록 한다.
5. 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이용자’ 는 건축물의 운영·관리자와 시민, 공무원,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를 포함하며, ‘인권취약계층’ 이란 사회적 약자(노약자·아동·여성·장애인·청소년 등)와 소수자(난민·북한이탈주민·성소수자·외국인·이주민 등) 등 경제적·문화적·신체적·정신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p>기본 인권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문화·사회·신체·환경 등을 고려한 포괄적 포용과 비차별</li> <li>2. 시민의 참여 및 소통과 역량 강화</li> <li>3. 이용자의 다양성 존중</li> </ol>
<p>기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건축물의 건립 시에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 에 따라서 각 공정별로 인권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li> <li>2.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의 전 과정에 걸쳐 근로시간, 작업환경, 임금 등 사업과 관련된 이용자의 다양한 인권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한다.</li> <li>3. 시민과 주변 시설 이용자의 거주권·환경권·안전권·보행권 등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의 조성 영향을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li> <li>4. 공청회나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li> <li>5. 향후 인권수요의 변화 및 증진에 대비한 건축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li> <li>6. 설계공모의 시행계획 및 설계지침서 작성, 설계공모의 심사 과정에는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li> <li>7. 설계공모시 건축물의 설계에 인권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권 관련 사항을 평가항목 배점에 포함한다.</li> <li>8. 모든 사업과정에는 인권을 고려한 ‘공정계약서’ 를 작성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li> </ol>

	공간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간의 계획은 이용자의 건강권·교육권·문화권·보행권·소통 및 참여권·안전권·접근권·정보접근권·평등권·프라이버시권·환경권·휴식권을 고려하여야 한다.</li> <li>2. 설계자는 면적 등의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되, 모든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보호·충족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제안하여야 한다.</li> <li>3. 모든 이용자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이 용이해야 하며,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li> <li>4. 모든 이용자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환경적 다양성을 고려한다.</li> <li>5. 획일적 형태, 과장된 디자인, 이용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스카이라인과 재료 등의 측면에서 이용자에게 친화적인 입면을 계획한다.</li> </ol>
설계	상세 건축 요소 및 시설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과 ‘수원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하여 인권 취약계층의 물리적·심리적·경제적 접근성과 가용성을 최대한 보장한다.</li> <li>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Barrier-Free)’ 와 ‘녹색건축 인증제도’ 등의 기준을 따르되,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하여 적용대상과 세부적인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li> <li>3. 기존의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이용자와 인권취약계층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li> </ol>
	시민 참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 사용계층과 인권취약계층 등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며, 이용자의 구성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반영한다.</li> <li>2. 설계과정 또는 완료 시 공청회나 시민설명회 등을 통해 건축물의 공간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시민참여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li> <li>3. 운영시설 및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방안, 공간의 용도, 공간의 구성 규모 및 배치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이용자와 인권취약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한다.</li> </ol>
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사 진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및 근로자의 보행권·안전권·접근권·환경권·휴식권 등 다양한 인권을 고려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i> <li>2. 공사 과정 중에는 이용자와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가 함께 직접 참여한 인권 감리를 최소 3회 이상 시행한다.</li> <li>3. 인권건축 관련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후에 준공을 승인한다.</li> </ol>
이용 및 유지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가 건축물의 시설과 프로그램에 물리적·경제적·심리적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li> <li>2. 이용자가 건축물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양적·질적으로 충분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해야 한다.</li> <li>3. 이용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한다.</li> <li>4. 시설 및 프로그램의 도입과 운영, 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이용자가 직접 참여토록 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li> <li>5. 연 1차례 운영·관리자의 주도 하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표 작성 등을 통해 인권센터에서 지원·관리한다.</li> </ol>

## 수원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시행절차(안)



# Abstract

## **The Study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riendly Policy in Suwon.**

Human Rights is a fundamentally having right of human that means unsegregated that in itself carries on dignity and value. Korea having been done vary efforts in central government to establish the human rights but, human rights violation problems in overall society are not yet being uprooted. This could be seeing because although found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is created in contrast conditions for human rights has not been made.

In this view of respect, recently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in respect of local government has emerged. As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is closed with local citizen,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has been gradually acknowledged important.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i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that is the system of when at process of Policy or Program is being planning and enforcing that having responsibility of human rights and arising positive impacts is necessary condition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Suwon City created institutional baseline through enacted [Suwon City Human rights fundamental regulation] in 2016. By the regulation, Suwon City should implemen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when decides matters affecting the citizen' s human rights in process of establishing or enacting policies.

For this institutional realizati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needs to be developed as the means of policy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dministration and Human rights friendly policy.

Therefore, this research is aimed for developing an Institution fo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Suwon City.

To develop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Suwon City, Firstly, researched literature analysis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nd examination of precedent study about other disciplines in related with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Secondly, to improve adaptability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y and direction of implementation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Suwon holds Focus Group Interview to experts. Especially, Opinions to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Guidelines for Public Architecture were gathered from experts on focus group interview who were consisted of the members of Human Rights Committee of Suwon City and architectures.

Consequently, policy targets, contents, method, process, period of time fo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guidelines for public architecture were develop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precedent researches and focus group interview.

Firstly, target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ar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gulations and Rules promoted by the Mayor and Establishment of Plan over 3 years of period in accordance with law or Regulation and Plan for promoted by the City or Mayor as an important policy, unit of project in Budget for Annual Expenditure followed by paragraph 2 of section 41 to [Local Finance Act].

Secondly, when the time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or Suwon City is before the deliberation · decision of Regulation · Rules Committees in relation with the Section 28 to [enforcement regul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and in terms of a plan before the confirmation, when it comes to unit of project in Budget for Annual Expenditure, before submitting unit of project in Budget for Annual Expenditure to the Local Council in conformity with paragraph 1 of section 127 to [Local Government Act].

Thirdly, Examination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in Suwon will be implemented about Regulation and Rule, Plan and Unit of Project. Examination Form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in Suwon are checklist and basis material form, department statement for the examination opinion, examination consultancy statement of Human Rights Center and Committee on Human Rights of Suwon City.

Fourthly, This Research suggests frame of Basis of Law as composing the Guidelines fo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n Public Architecture based on Law and Local



Statutes about Human Rights and Public Architecture.

As Regards consideration of character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n Public Architecture should proceed to assessment with Consultation and Arrangement for which organization can start in the name of [Suwon City Public Architectur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of Suwon City will implement Checklist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from department that may violate human rights and then, will enlarge overall departments for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Suwon City. Also,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should implement Education of Human Rights to intended all over the department for enhancing the Human Rights.

Keyword : Human Rights, Human Rights Administration, Checklist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Guidelines for Public Architecture

| 저자 약력 |

이영안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yal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수원시 인권 실태조사」 (2014,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5, 수원시정연구원)

안국진

건축공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ahn@suwon.re.kr

한연주

사회복지학박사 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현)

E-mail : joanna1118@suwon.re.kr

이현승

행정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 과제연구원(현)

E-mail : grigim7@suwon.re.kr

강연주

도시계획학석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과제연구원(전)

E-mail : yeon@suwon.re.kr



